2023. 4. 13.(목) 10:00
제304회 달성군의회(임시회)
제 2 차 본회의

검 토 보 고 서

달 성 군 의 회

2023년도 수시분(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1. 제 출 일: 2023년 4월 5일

2. 제 출 자: 달성군수

3. 제안사유

○ 달성 비슬도서관 건립

- 2021년 12월 기준 대구시 공공도서관은 44개관으로 전국 대비 3.64%이며, 그 중 달성군에 위치한 공공도서관은 3개관에 불과함
- 구·군별 인프라 현황을 비교해보면, 달성군의 공공도서관 인프라는 가장 열악한 상황으로 공공도서관 건립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남
- 최근 어린이 여가시간 활용의 변화에 따라 체험활동, 문화프로그램 등을 도서와 연계할 필요가 있으나, 현재의 도서관은 그와 부합하는 시설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음
- 단순한 자료 보관소가 아닌 나아가 문화·예술 체험활동까지 즐길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공공도서관 건립이 필요함

○ 달성종합스포츠파크 다목적체육관 증축사업

- 민선 8기 출범에 따른 생활체육시설 증설 공약사업
- 달성종합스포츠파크 다목적체육관 증축사업으로 지역주민의 체육활동을 증진하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고자 함

○ 원오교 주변 체육시설 재정비 사업

- 원오교 주변 체육시설(파크골프장) 재정비를 위하여 인근 토지 매입, 파크골프장을 추가 조성하여 폭증하고 있는 파크골프 이용객들의 불편사항 해소, 지역주민의 체육활동 활성화 및 체력증진, 여가선용에 기여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달성 비슬도서관 건립

- 위　　치 : 달성군 현풍읍 중리 507-1번지
- 기　　간 : 2022. 9. ~ 2026. 1.
- 규　　모 : 부지면적 6,000㎡(전체면적 10,813.3㎡), 건축연면적 8,006㎡, 지하1층~지상3층
- 주요시설 : 도서관, 문화공연공간, 장난감도서관, 주민커뮤니티센터 등
- 총사업비 : 494.7억원(군비 494.7억원)

・용지보상비 121, 공사비 296.5, 설계비 15.9, 감리비 17.6, 기타 43.7

※ 각 연도별 세부 사업비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기투자	2023	2024	2025	2026이후
계	49,470	12,124	1,420	9,008	26,918	
군비	49,470	12,124	1,420	9,008	26,918	

○ 달성종합스포츠파크 다목적체육관 증축사업

- 위　　치 : 달성군 현풍읍 성하리 228-32번지 일원
- 기　　간 : 2023. 1. ~ 2024. 10.
- 규　　모 : 연면적 1,200㎡(게이트볼장 1면, 배드민턴장 2면 증설)
- 총사업비 : 3,000백만 원(군비)

※ 공사비 2,820, 설계비 147, 감리비 33

※ 각 연도별 세부 사업비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기투자	2023	2024	2025	2026이후
계	3,000		200	2,800		
군비	3,000		200	2,800		

○ 원오교 주변 체육시설 재정비 사업

- 위　　치 : 현풍읍 원교리 908-1번지
- 기　　간 : 2023. 1. ~ 2024. 4.
- 부지면적 : 6,536㎡
- 총사업비 : 금19억원정도(군비)
 - 2023년도 : 금19억
 - 부지매입비 15억원, 공사비 4억원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당 초			금 회			계			비고
			건수 (필지/동)	수량	금액	건수 (필지/동)	수량	금액	건수 (필지/동)	수량	금액	
취득	계					3 (3)	15,742	41,327,256	3 (3)	15,742	41,327,256	
	1.매입	토지				1 (1)	6,536	954,256	1 (1)	6,536	954,256	
		건물				1 (1)	8,006	37,373,000	1 (1)	8,006	37,373,000	
	2.교환	토지										
		건물										
	3.기타	토지										
		건물				1 (1)	1,200	3,000,000	1 (1)	1,200	3,000,000	증축

2023년도 공유재산 취득대상 재산목록

연번	지목	재산의 표시					취득대상수량(㎡)	기준가격(원)	취득시기	취득사유	취득대상 재산 소유자		비고
	공부	사실	소재지			일단의수량(㎡)					주소	성명	
1 (건물)	대	대	현풍읍	송리	507-1	8,006	8,006	37,373,000,000 (총사업비) *용지보상비 제외	2026.01.	달성 비슬도서관 건립	대구 달성군 논공읍 달성 군청로 33	달성군	신축
2 (건물)	체	체	현풍읍	성하리	228-32	44,547	1,200	3,000,000,000	2024.10.	다목적체육관 증축	대구 달성군 논공읍 달성군청로 33	단성군	
3 (토지)	전	전	현풍읍	원교리	908-1	6,536	6,536	954,256,000	2023.04.	원오교 주변 체육시설 재정비	대구시 달성군 구지면 구지서로○○길	백○○	

위 치 도

【달성 비슬도서관 건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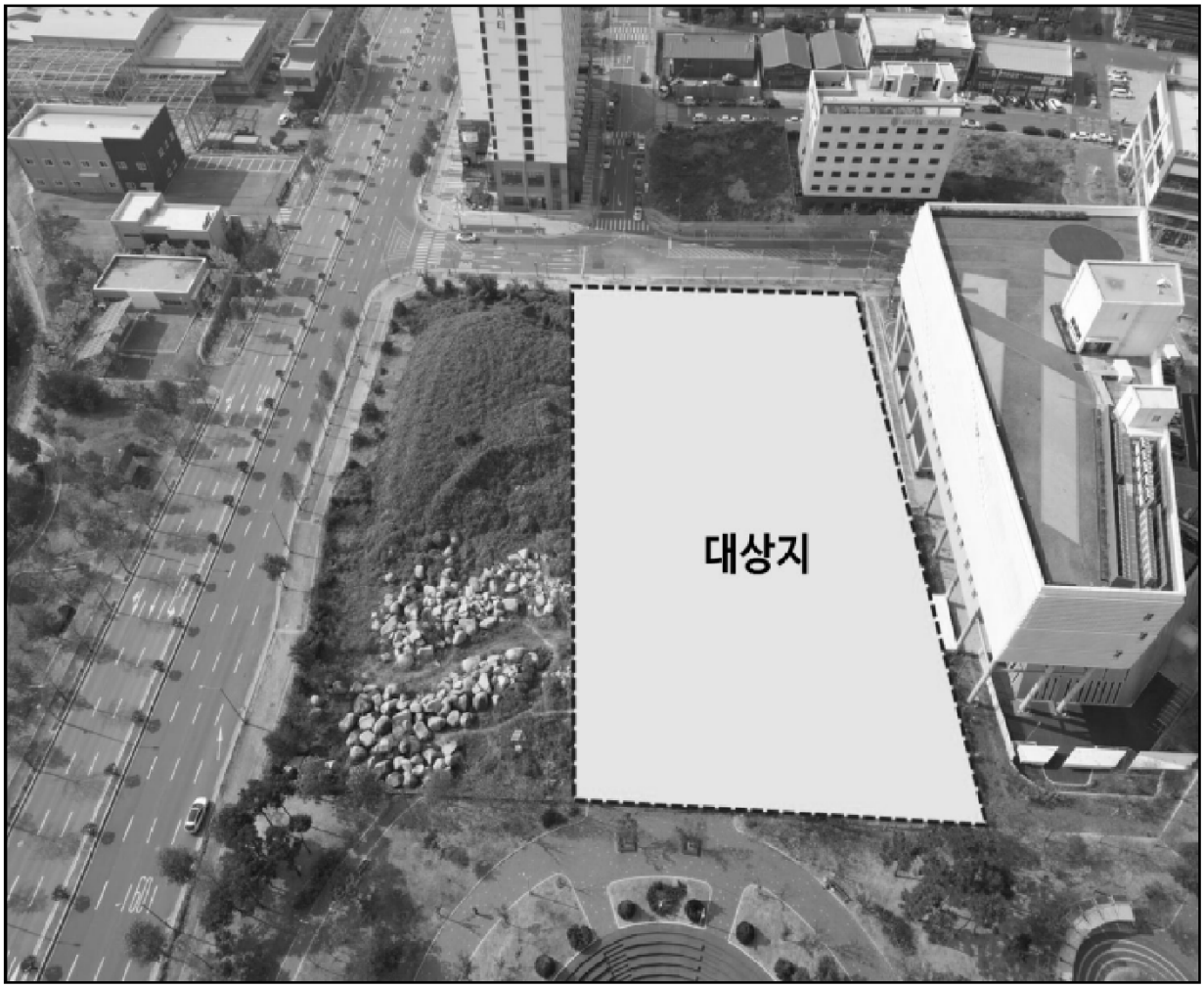
□ 위치 : 대구광역시 달성군 현풍읍 중리 507-1번지 일원



현 장 사 진

【달성 비슬도서관 건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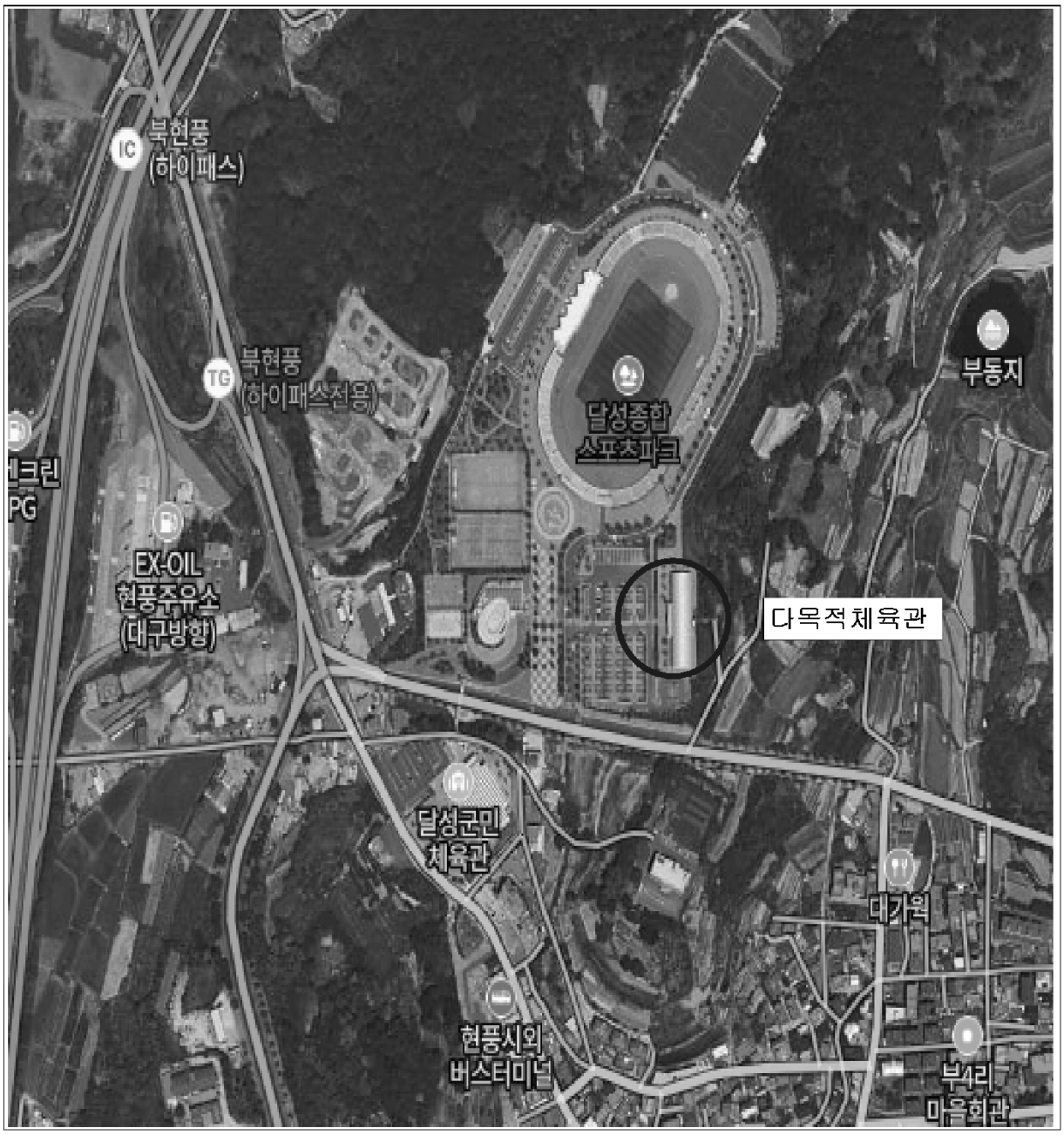
□ 위치 : 대구광역시 달성군 현풍읍 중리 507-1번지 일원



위 치 도

【달성종합스포츠파크 다목적체육관 증축사업】

□ 위치 : 대구광역시 달성군 현풍읍 성하리 228-32번지



현 장 사 진

【달성종합스포츠파크 다목적체육관 증축사업】

□ 위치 : 대구광역시 달성군 현풍읍 성하리 228-32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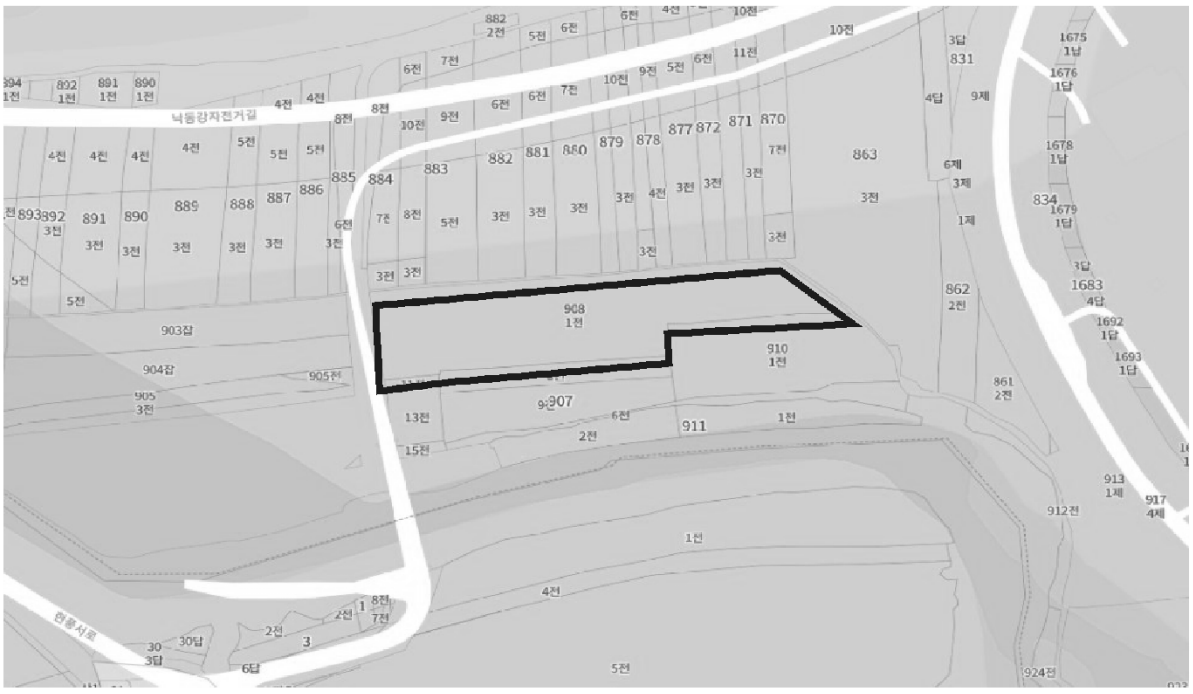
	
다목적체육관 정면	다목적체육관 측면
	
게이트볼장(1층)	배드민턴장(2층)

위 치 도

【원오교 주변 체육시설 재정비 사업】

□ 위치 : 대구광역시 달성군 현풍읍 원교리 908-1번지





현 장 사 진

【원오교 주변 체육시설 재정비 사업】

□ 위치 : 대구광역시 달성군 현풍읍 원교리 908-1번지





5. 관계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공유재산관리계획)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6조(공유재산심의회)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관리계획)

○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5조(공유재산심의회의 업무)

○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의2(공유재산 관리계획)

6. 검토의견

○ 달성 비슬도서관 건립

- 대구시 공공도서관은 44개관으로 전국 대비 3.64%이며, 그 중 달성군에 위치한 공공도서관은 3개관에 불과하고 구·군별 인프라 현황을 비교해 보면, 달성군의 공공도서관 인프라는 가장 열악한 상황으로 공공도서관 건립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최근 어린이 여가 시간 활용의 변화에 따라 체험활동, 문화프로그램 등을 도서와 연계 할 필요가 있으나, 현재의 도서관은 그와 부합하는 시설을 갖추지 못한 상황으로 달성 남부권에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공공도서관을 건립하여 지역주민에게 지식·정보·문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군민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달성종합스포츠파크 다목적체육관 증축사업

민선 8기 출범에 따른 생활체육시설 확충 공약사업으로 최근 체육동호인 수가 증가함에 따라 부족한 공간을 확충하고 노후화된 시설을 리모델링하여 지역주민들의 불편 해소와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원오교 주변 체육시설 재정비 사업**

원오교 주변 체육시설(파크골프장) 재정비를 위하여 원오교 인근 토지 매입으로 파크골프장을 추가 조성하여 폭증하고 있는 파크골프 이용객들의 불편 사항 해소와 지역주민의 체육활동 활성화 및 체력증진, 여가선용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붙임 관계법령 1부. 끝.

참고 상위 및 관계 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공유재산관리계획)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매년 다음 회계연도의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확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16조(공유재산심의회)①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문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유재산심의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라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2. **제11조에 따라 행정재산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하려는 경우**
3. 제11조에 따라 일반재산을 행정재산으로 용도를 변경하려는 경우
4. 제12조 단서에 따라 무상으로 회계 간의 재산 이관을 하는 경우
5. **제24조 또는 제34조 및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하는 경우**
6. 그 밖에 공유재산의 관리·처분 등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1.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따른 1건당 기준가격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재산**
2.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따른 1건당 기준면적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면적 이상인 토지**

□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5조(공유재산심의회의 업무) ①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2.(삭제 2009.5.29)

3.법 제11조에 따른 용도의 변경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4.(삭제)

5.제22조의2에 따른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의 갱신에 관한 사항

6.법 제12조 단서에 따라 무상으로 회계 간의 재산 이관을 하는 경우

7.법 제24조 또는 제34조 및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하는 경우

제12조의2(공유재산관리계획) ① ~ ③ (생략)

④ 영 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1건당 기준가격" 및 "1건당 기준면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건당 기준가격

가. 취득의 경우: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

2. 1건당 기준면적

가. 취득의 경우: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2천제곱미터

2023년도 (재)달성교육재단 출연금
출연 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1. 제 출 일: 2023년 4월 5일

2. 제 출 자: 달성군수

3. 제안사유

○ 대구광역시 달성군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미리 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4. 주요내용

○ **2023년도 (재)달성교육재단 출연금 : 금2,062백만 원**

- (재)달성교육재단 운영비 : 390백만 원
 - 인력운영비 : 141백만원
 - 기본운영비 : 249백만원
- (재)달성교육재단 사업비 : 1,672백만 원
 - 기존 군의 사업(진로진학, 평생교육지원)을 이관함에 따라 2023년 본예산에 기 편성된 사업비를 출연금으로 변경·교부하여 사업의 연속성 확보
 - (재)달성장학재단의 목적사업 추가로 다양한 교육지원 사업 확대를 통해 지역 인재 양성

5. 검토의견

○ 본 출연금 출연 계획안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반영 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군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함으로

○ 출연금의 주요내용은 상근 임·직원 인건비 1억4천1백만원, 재단 운영·관리비 2억4천9백만원, 진로·진학 지원, 영어 학습 지원, 평생학습도시 조성 관련 등 사업비 16억7천2백만원으로 총 20억6천2백만원이며

○ 기존 (재)달성장학재단의 목적사업을 확대하여 달성군 교육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재)달성교육재단으로의 전환 출범을 앞두고 출연금 지원을 통해 군민의 다양한 교육 수요에 부응하고 교육서비스의 질적 향상 및 지역 특성에 맞는 교육사업 추진과 내실있는 교육재단 운영을 위해 2023년도 (재)달성교육재단 출연금 출연 계획안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붙임 1. 출연 심의요구서 1부.
2. 사업부서 검토의견서 1부.
3. 출연기관 현황 1부.
4. 관계법령 1부. 끝.

출연 심의요구서

출연 대상

○ 기 관 명 : (재)달성교육재단
○ 대　　표 : 최 재 훈
○ 일반현황 : 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원읍 성천로 5
○ 출연 예정금액 : 2,062백만 원(군비)
○ 예산편성 요구 예정사항

(단위:백만원)

출연 사업비

구 분	사업기간	예산액	2023 요구액	2022 요구액
합　계		4,558	2,062	3,512
인력운영비	7~12월	141	141	-
기본운영비	7~12월	299	249	-
기본재산 적립	1~12월	-	-	3,512
목적사업준비금	1~12월	986	-	-
장학사업	7~12월	513	-	-
진로진학사업	7~12월	68	68	-
글로벌 교육지원	7~12월	1,564	1,564	-
평생학습도시 조성	7~12월	40	40	
군립도서관 운영	7~12월	947	-	-

※ 2022년 출연금(3,512백만원)은 장학기금 적립
※ 군립도서관 운영비(947백만원)는 위탁사업비로 별도 교부

출연 필요성

○ 지역의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사업 뿐만 아니라 평생교육을 위한 지원사업 확대를 위해 달성교육재단의 효율적인 운영 지원
○ 군민 맞춤형 교육 정책 수립으로 교육 분야 주민 만족도 향상

근거 법령

○ 「지방재정법」 제18조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 「대구광역시 달성군 달성교육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11조, 제12조

사업부서의견 (총평)

○ 민정8기 목표인 아이 키우기 좋은 교육도시 조성에 중요한 역할
○ 군민 수요 맞춤형 교육 정책 발굴 및 계획 수립 필요
○ 기존 장학사업의 변화와 교육 지원사업 확대 가능

사업부서 검토의견서

1. 출연금 예산요구액 부서 의견

○ 2023년 출연금 2,062백만 원 교부로 재단 운영 및 목적사업 수행

-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등 390백만 원
- 진로진학 지원사업 등 자체사업비 1,672백만 원

2. 출연금 검토 상세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2년 출연액 (A)	2023년 예산(안)			
		재단 예산액	재단 요구액	부서 검토액 (B)	전년대비 증감액 (B-A)
총 계	3,512	4,558	2,062	2,062	△1,450
재단운영비	3,512	440	390	390	△3,122
인력운영비	-	141	141	141	141
기본운영비	-	299	249	249	249
기본재산 적립	3,512	-	-	-	△3,512
자체사업비	-	3,171	1,672	1,672	1,672
장학사업	-	513	-	-	-
진로진학 사업	-	68	68	68	68
글로벌 교육지원	-	1,564	1,564	1,564	1,564
평생학습도시 지원	-	40	40	40	40
목적사업준비금	-	986	-	-	-
위탁사업비	-	947	-	-	-
군립도서관 운영	-	947	-	-	-

출연기관 현황

기 관 명	(재)달성교육재단	전화번호	053.668.8322
		홈페이지	www.dsjanghak.or.kr
설립근거	민법 제32조,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주요연혁	2000. 4. 4. 등기		

임원(13) (23.3.24 현재)	직책	성명	주요경력	임기
	이사장	최재훈	달성군수	재임기간
	비상임이사	송정근	농협달성군지부 지부장	재임기간
	비상임이사	홍진웅	화원새마을금고 이사장	2021.1.1.~2024.12.31
	비상임이사	서정우	전 달성군의원	2021.1.1.~2024.12.31
	비상임이사	이대현	하빈면 체육회장	2021.1.1.~2024.12.31
	비상임이사	신창섭	전 다사읍 바르게살기위원회 위원장	2021.1.1.~2024.12.31
	비상임이사	김동조	전 가창새마을금고 이사장	2021.1.1.~2024.12.31
	비상임이사	박지팔	전 구지사회안전망 회장	2021.1.1.~2024.12.31
	비상임이사	곽두섭	전 유가농협장	2021.1.1.~2024.12.31
	비상임이사	석재추	전 옥포읍 번영회장	2019.6.21.~2023.6.20
	비상임이사	조성래	논공읍 체육회 이사	2021.1.1.~2024.12.31
	감사	채수열	전 현풍고 행정실장	2019.6.21.~2023.6.20
	감사	윤종민	군 회계과장	재임기간

주요기능	○ 달성군 교육정책 발굴 및 계획 수립 ○ 각종 교육지원 사업 수행 ○ 도서관 운영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최근3년간 예산현황	연 도	2020년	2021년	2022년	재무현황 2022.12.31 기준	기본재산	31,404
	예산액	5,065	4,070	4,499		보통재산	562
	지자체 지원액	4,310	3,260	3,512			

1. 예산액은 해당 기관의 매 회계연도별 확정된 예산액
2. 지자체 지원액은 해당 기관 예산액중 지자체의 출연금

참고 **상위 및 관계법령**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재정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출연 기관에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4조에 해당하거나 해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출자·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재정 지원을 할 수 없다.

③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의 교부·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달성교육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11조(재정출연) ① 군수는 재단의 설립·운영 및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군 재정에 미치는 영향, 지역의 교육여건, 재단의 자체적인 재원확보 능력 등을 중장기적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출연하여야 한다.

제12조(운영경비 등) 재단의 운영경비는 기본재산의 운용 수익금으로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는 안정적인 재단운영을 위하여 군 예산으로 운영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 출 일: 2023년 3월 27일

2. 제 출 자: 김보경 의원 등 3인

3. 제안사유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 내에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2조)

○ 군수와 골목형상점가 내의 상인의 책무 규정(안 제3조)

○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추진계획 수립·시행 및 이를 위한 실태조사에 관하여 규정(안 제4조~제5조)

○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 및 지정 규정(안 제6조~제7조)

○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지원사업, 지정 취소 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8조~제10조)

○ 골목형상점가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1조~제19조)

5. 관계법령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6.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추진계획의 수립·시행, 실태조사,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사안으로 골목형상점가를 지원하여 골목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조례안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붙임 1. 조례안 1부.
2. 관계법령 1부. 끝.

대구광역시 달성군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달성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골목형상점가”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2 및 이 조례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2. “상인”이란 일정 구역 내 소유 또는 임차한 점포에서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등 직접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점포”란 상가건축물 또는 지붕이 있는 상가건물 등으로서 소상공인이 직접 사업을 운영하는 장소나 공간을 말한다.

4. “상인조직”이란 법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조직을 말한다.

5. “상인회”란 법 제6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골목형상점가에서 직접 사업을 영위하는 상인들이 자율적으로 설립하여 군수에게 등록한 조직을 말한다.

6.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7. “상업기반시설”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다.

제3조(책무) ① 군수는 소상공인의 지원 및 골목형상점가 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골목형상점가 내의 상인은 소상공인과 지역 상권의 활성화를 위한 군수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고,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제4조(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추진계획의 수립·시행)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추진계획의 연차별 시행에 관한 사항
2. 도시계획과 연계한 골목형상점가의 활성화 방향에 관한 사항
3. 골목형상점가의 육성계획에 관한 사항
4. 골목형상점가에 대한 주요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5. 골목형상점가의 활성화에 필요한 재원 확보에 관한 사항
6. 골목형상점가의 안전시설물 관리 및 개선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추진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지역주민과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추진계획 수립을 위하여 매년 골목형상점 가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골목형상점가의 현황에 관한 사항
2. 골목형상점가의 상업기반시설 등의 실태에 관한 사항
3. 골목형상점가의 상인의 경영실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상권의 실태를 파악하는 데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골목형상점가를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법인·단체의 장 및 상인조직을 대표하는 사람에게 자료제출이나 조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사람은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 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천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30개 이상 밀집해 있는 구역이여야 한다.

제7조(골목형상점가 지정) ① 군수는 제8조에 따른 상인의 신청을 받은 경우 제11조에 따른 대구광역시 달성군 골목형상점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내 일정 지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구역의 특성, 상권의 규모,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14일 이내에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확인서를 발급하고 지정 내용을 군보 및 군 홈페이지를 통해 알려야 한다.

제8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제7조에 따라 자신이 영업하는 점포가 속한 구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고자 하는 상인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상인회 등록신청서 및 해당구역을 표시한 도면 또는 구역도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골목형상점가 지원)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골목형상점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공동시설 등 고객 접근성 향상을 위한 환경개선
2. 공동마케팅, 공동상품, 디자인 개발
3. 고객 및 지역 주민대상 문화프로그램 운영 등 고객 유치방안 시행

4. 상권컨설팅 및 홍보

5. 그 밖에 군수가 골목형상점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 각 호 사항에 대한 사업비를 지원할 때에는 골목형상점가 상인회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야 하며, 사업내용 및 예산의 규모를 고려하여 지원사업별로 지원 한도 및 지원조건을 다르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골목형상점가 내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법 제26조의4에 따라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등록을 신청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 절차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르거나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취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1조에 따른 대구광역시 달성군 골목형상점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된 경우

2. 제6조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3. 사업보조금을 사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군보 및 군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제11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 골목형상점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

2.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골목형상점가의 조성 및 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에 있어서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8조를 준용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골목형상점가 업무담당 국장과 부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제1호의 위촉직 위원은 2명으로 한다.

1.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2. 소비자 · 경제 관련 활동가

3. 유통산업 · 마케팅 · 공공디자인 관련 전문가

4. 도시계획 · 도시개발 · 건축 · 교통 및 이와 유사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군수가 위원회 기능 수행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3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은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14조(위원의 해촉) 위원의 해촉에 대하여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7조를 준용한다.

제15조(위원의 제척 · 기피 · 회피) 위원의 제척 · 기피 · 회피에 대하여는 「대

구광역시 달성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8조를 준용한다.

제1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가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출석하여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서면으로 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 사회재난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회의(화상회의 포함)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

④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장소, 심의 안건 등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

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에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도록 요청하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골목형상점가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9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대구광역시 달성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4조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 달성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를 삭제하고, 제5장(제27조부터 제29조까지)을 삭제한다.

제3조(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에 관한 특례) 이 조례 시행 당시 골목형상점가로서 지정되어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제6조에도 불구하고 골목형상점가로서 지원 받을 수 있다.

참고 상위 및 관계법령(발췌)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법률)」(2021.11.30. 타법개정, 2022.12.1. 시행)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상점가”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상점가를 말한다.

2의2. “골목형상점가”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으로 밀집하여 있는 구역 중 특별자치도·특별자치시·시·군·구(구는 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시·군·구”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곳을 말한다.

3. “상인조직”이란 전통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상점가 또는 골목형상점가의 점포에서 상시적으로 직접 사업을 하는 상인들로 구성된 법인·단체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2. “온누리상품권”이란 그 소지자가 제13호가목에 따른 개별가맹점에게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권면금액(券面金額)에 상당하는 물품 또는 용역을 해당 개별가맹점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발행한 것을 말한다.

13. “가맹점”이란 제26조의4에 따라 등록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한 거래에 의하여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하는 시장등의 상인(이하 “개별가맹점”이라 한다)

나. 온누리상품권을 수취한 개별가맹점을 위하여 제26조의3제2항 단서에 따라 온누리상품권의 환전을 대행(代行)하는 상인조직(이하 “환전대행가맹점”이라 한다)

제11조의2(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 등) 골목형상점가와 관련된 활성화 기본계획의 수립, 실태조사, 활성화 지원, 문화관광형시장의 지정·육성, 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에 관한 특례, 국·공유지 사용료등 감면, 인접지역을 포함한 시정비사업에 관한 특례, 시장분쟁조정위원회, 상인연합회, 보고 및 자료의 제출 등에 관한 사항은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제11조, 제13조, 제13조의2, 제14조, 제17조의2, 제18조, 제45조, 제58조부터 제64조까지, 제66조 및 제69조부터 제7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상점가”는 “골목형상점가”로 본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 출 일: 2023년 3월 27일

2. 제 출 자: 김보경 의원 등 3인

3. 제안사유

○「수도법」 제15조 및 제87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 내 절수설비 등의 설치를 의무화하여 수자원 절약에 기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2조)

○ 물 수요 관리 시행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3조)

○ 절수설비 등의 설치 대상을 규정(안 제4조)

○ 물 절약을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5조)

○ 절수설비 등의 설치 이행책임 및 확인, 설치 이행 명령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6조~제7조)

○ 미설치 또는 이행명령에 따르지 않을 시, 과태료 부과에 관하여 규정(안 제8조)

5. 관계법령

○ 「수도법」

6.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수도법」 제15조에 따라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의 설치 의무에 대한 이행 사항을 명확히 하고 물 수요 관리 시행계획 수립·시행, 절수설비 설치 대상, 물 절약을 위한 지원, 이행 명령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안으로 선제적인 물 관리를 통해 기후변화로 인한 홍수와 가뭄 등 물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물 절약 및 효율적인 물 이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조례안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붙임 1. 조례안 1부.

2. 관계법령 1부. 끝.

대구광역시 달성군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달성군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15조 및 제87조에 따라 절수설비 등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절수설비”란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1호에 따른 설비를 말한다.
2. “절수기기”란 법 제3조제32호에 따른 기기를 말한다.
3. “절수설비 등”이란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를 말한다.

제3조(물 수요 관리 시행계획 수립·시행)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절수설비 등 물 절약 시설의 연차별 보급목표 및 추진계획 등이 포함된 물 수요 관리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물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절수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는 사람 : 절수설비
2.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숙박업(객실이 10실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및 목욕장업을 영위하는 사람 :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3.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체육시

설업을 영위하는 사람 :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4.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는 사람 :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을 건축하는 사람 : 절수설비

② 군수는 이미 건축된 건축물 및 시설의 물 절약을 위하여 절수설비 등의 설치를 위한 홍보 및 권고를 할 수 있다.

제5조(물 절약을 위한 지원 등) 군수는 물 절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물 절약을 위한 정기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체계 개발 및 교육

2. 물 절약을 위한 우수사례 발굴, 홍보 및 포상

3.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의 의무 설치 대상 건축물 및 시설에 관한 그 설치에 대한 행정적 지원

4. 그 밖에 물 절약을 위한 각종 시책

제6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이행책임 및 확인) ① 건축주는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의무 설치 대상 건축물 및 시설의 절수설비 등 설치에 대해서 이행책임을 진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서류로 절수설비 등 설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절수설비 설치 확인서

2. 납품확인서

3. 환경표지인증서 또는 시험성적서

4. 절수설비 등급표시 확인서

5. 현장설치사진

제7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이행명령) 군수는 제4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시설을 설치하려는 자가 절수설비 등을 설치하지 않으면 법 제15

조제3항에 따라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다.

제8조(과태료) 군수는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절수설비 등을 설치하지않거나 제7조의 이행명령을 따르지 않은 자에게는 법 제87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참고 상위 및 관계법령(발췌)

□ 「수도법(법률)」(2021.7.20. 타법개정, 2022.7.21. 시행)

제15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①건축주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건축하려는 경우에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절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숙박업(객실이 10실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및 목욕장업 또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업을 영위하는 자 또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는 자는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숙박업 및 목욕장업 또는 체육시설업을 영위하는 자나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는 자가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를 설치하지 아니하면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절수설비를 국내에 판매하기 위하여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절수설비에 절수등급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절수설비 등급표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8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절수설비 또는 절수기기를 설치하지 아니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4. 제15조제4항을 위반하여 절수설비에 절수등급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제15조제3항에 따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이행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후계농업경영인 및 청년농업인 육성·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 출 일: 2023년 3월 27일

2. 제 출 자: 김은영 의원 등 3인

3. 제안사유

○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 후계농업경영인 및 청년농업인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2조)

○ 군수와 후계농업경영인 등의 책무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3조)

○ 후계농업경영인 등의 육성·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정(안 제4조)

○ 기본계획 수립 등과 이를 위한 실태조사에 관하여 규정(안 제5조~제6조)

○ 지원사업 및 후계농업경영인 단체에 대한 지원에 관하여 규정(안 제7조~제8조)

○ 청년농업인 우대에 관하여 규정(안 제9조)

○ 중복지원 제한, 지원금 환수, 지도·감독 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0조~제12조)

5. 관계법령

○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6.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 분야에 지속되는 고령화와 미래농업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후계인력 규모 감소와 이농현상이 가속화 되고 있는 문제에 대한 대책으로 후계농업경영인 및 청년농업인의 지속 가능한 농업경영과 안정적인 농촌정착을 유도하고 전문가로 성장시키기 위한 실태조사, 지원사업, 청년농업인 우대, 지도·감독 등의 내용을 규정하는 사안으로 지역농업과 농촌 발전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되며 조례안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붙임 1. 조례안 1부.

2. 관계법령 1부. 끝.

대구광역시 달성군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달성군 후계농업경영인 및 청년농업인 육성·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 후계농업경영인 및 청년농업인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 농업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후계농업경영인”이란 농업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농업을 경영하고 있거나 경영할 의사가 있는 사람으로서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및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선정된 사람을 말한다.
2. “청년농업인”이란 농업 분야에 종사하고 있거나 창업 또는 취업할 의사가 있는 사람으로서 나이가 40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3.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제7호에 따른다.
4. “후계농업경영인단체”란 후계농업경영인이 설립한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제3조(책무) ① 군수는 경쟁력 있는 후계농업경영인 및 청년농업인(이하 “후계농업경영인 등”이라 한다)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후계농업경영인 등은 농업·농촌의 발전 주체로서 농업 생산활동을 통하여 품질 좋고 안전한 농축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함으로써 농업·농촌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국민 식량자립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후계농업경영인 등의 육성·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군수는 후계농업경영인 등의 육성·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후계농업경영인 등의 육성 및 지원 기본방향과 목표
2. 후계농업경영인 등의 전문능력 함양을 위한 교육 계획
3. 후계농업경영인 등의 지원 시책 및 범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후계농업경영인 등에 관한 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후계농업경영인 등과 후계농업경영인단체 및 관계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 군수는 후계농업경영인 등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육성 및 지원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 ① 군수는 후계농업경영인 등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후계농업경영인 등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하는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농업 창업 및 농촌 정착

2. 영농기반시설 구축 및 영농자재 구입

3. 우수농축산물 생산기반 조성

4. 농특산물 부가가치 증대를 위한 유통·가공·판로확대

5. 그 밖에 농업 생산활동으로써 품질 좋고 안전한 농축산물을 생산·공급하는데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후계농업경영인 등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기관, 농업경영체 등의 단체 및 개인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영농기술·경영 관련 교육이나 농업관련 창업·경영 컨설팅

2. 청년 농업인 고용

3. 그 밖에 군수가 후계농업경영인 등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방법,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르거나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8조(단체에 대한 지원) 군수는 후계농업경영인 등의 권익 보호 및 경제활동 촉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후계농업경영인단체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지역 특성에 맞는 농업 관련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2. 그 밖에 군수가 후계농업경영인 등의 권익 보호 및 경제활동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청년농업인 우대) 군수는 후계농업경영인 등의 육성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거나 후계농업경영인 등을 지원하는 경우 청년농업인을 우대할 수 있다.

제10조(중복지원 제한) 군수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지원을 중단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

제11조(지원금 환수) ①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금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2. 지원금을 지원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 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4. 지원금 지급에 따른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
5. 그 밖에 군수가 지원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 환수에 필요한 사항은 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에 따른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반납의무자가 해당 금액을 반납하지 않을 때는 「지방행정제재 · 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12조(지도·감독) 군수는 필요한 경우 법 제8조제6항 및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후계농업경영인 등에게 보조금의 운영상황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 방문 조사 등을 통해 그 업무를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참고 상위 및 관계법령(발췌)

□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2020.5.19. 제정, 2021.5.20. 시행)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후계농어업인"이란 농업 또는 어업(양식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농업 또는 어업을 경영하거나 경영할 의사가 있는 사람으로서 나이, 영농·영어 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청년농어업인"이란 농업 또는 어업 분야에 종사하고 있거나 창업 또는 취업할 의사가 있는 사람으로서 나이, 거주요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농어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농어업경영체를 말한다.
4. "후계농어업인단체"란 후계농어업인이 미래 농업 및 어업 생산력의 제고와 후계농어업인의 권익 보호, 지위 향상 및 복지 증진 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쟁력 있는 후계농어업인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후계농어업인의 역할) 후계농어업인은 농어업·농어촌의 발전주체로서 농어업 생산활동을 통하여 품질 좋고 안전한 농수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함으로써 농어업·농어촌 발전에 이바지하고, 국민 식량자립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후계농어업경영인등의 선정 및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업(專業)적 농어업인력 확보를 위하여 후계농어업인의 영농 또는 영어 계획 등을 평가하여 후계농업경영인 또는 후계어업경영인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후계농업경영인 또는 후계어업경영인을 선정하는 경우 청년농어업인에 대해서는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또는 청년창업형 후계어업경영인으로 따로 선정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 또는 후계어업경영인 및 제2항에 따른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또는 청년창업형 후계어업경영인(이하 "후계농어업경영인등"이라 한다)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발전단계별로 자금, 컨설팅 또는 농어업기술·경영교육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또는 청년창업형 후계어업경영인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의 영농 또는 영어 등의 의무사항을 이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생활 및 영농·영어 활동에 필요한 자금(이하 이 조에서 "영농영어정착지원금"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후계농어업경영인등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농어촌에 거주하는 여성과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을 농림축산식품

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할 수 있다.

⑥ 후계농어업경영인등의 선정 요건 및 절차, 지원 조건 및 내용, 영농영어정착지원금의 용도 및 영농영어정착지원금 수령을 위한 의무사항, 선발인원의 사후관리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학교 등의 농어업 교육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미래 농어업인력의 확보를 위하여 농업 및 수산업 계열학교 또는 전문교육기관이 실시하는 농어업 관련 실습교육 또는 농어업창업교육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우수한 농어업경영체와 협력하여 농어업에 종사하려는 자의 농어업현장연수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청년농어업인 고용에 대한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후계농어업인 육성을 위하여 농어업경영체가 청년농어업인을 고용하는 경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후계농어업인 교육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후계농어업인에 대한 교육을 하는 농어업 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농어업 관련 교육과정의 개발 및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후계농어업인에 대한 교육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후계농어업인에 대한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후계농어업교육전문가의 양성, 교육과정의 개발, 교육장소의 제공 또는 후계농어업교육전문가에 대한 정보 제공 등을 할 수 있다.

제12조(후계농어업인단체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에서 후계농어업인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3조(청년농어업인 우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후계농어업인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거나 후계농어업인을 지원하는 경우 청년농어업인을 우대할 수 있다.

제15조(자료요청 및 지원정보의 확인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따른 지원 및 사후관리를 원활히 하고 지원정보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6조(지원금의 환수)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지원금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2. 지원금을 지원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 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4. 지원금 지급에 따른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환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반납의무자가 해당 금액을 반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17조(청년농어업인에 대한 영농·영어 활동 체험 기회 제공)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농어업인에게 영농·영어 활동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경영체, 단체 또는 학교가 제1항에 따른 영농·영어 활동 체험 기회 제공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그 소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관한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 출 일: 2023년 3월 27일

2. 제 출 자: 곽동환 의원 등 3인

3. 제안사유

○ 공동주택 입주자 등 간의 참여를 통한 공동주택 내·외의 소통·상생하는 주거공동체 문화 조성을 위한 사업에 예산지원과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조)

○ 공동체 활성화와 관련하여 군수, 입주자 등, 그리고 공동주택 관련 단체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 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지원범위, 지원사업, 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안 제5조~제6조)

○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5. 관계법령

○ 「공동주택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대구광역시 달성군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6.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 입주자 등 간의 참여를 통한 공동주택 내·외의 소통·상생하는 주거공동체 문화 조성 사업에 대한 지원범위, 지원사업, 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법적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주거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조례안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붙임 1. 조례안 1부.

2. 관계법령 1부. 끝.

대구광역시 달성군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관한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내 공동주택 입주자 등 간의 참여를 통한 공동주택 내·외의 소통·상생하는 주거공동체 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다.
2. “공동주택단지”란 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다.
3. “입주자 등”이란 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입주자와 같은 항 제6호에 따른 사용자를 말한다.
4. “관리주체”란 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다.
5. “공동주택의 공동체 활성화 사업”이란 공동주택단지 안 또는 안팎 주민 간 주거공동체 문화형성을 위한 자체 운영프로그램 및 참여 프로그램 등을 말한다.
6. “공동주택 관련 단체”란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와 그 밖에 입주자 등의 합법적 권익을 위하여 노력하거나 공동주택의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조직과 인력을 갖춘 신고·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제3조(지원범위) ①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

85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대구광역시 달성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비용을 지원 받는 사업은 제외한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공동주택으로 한다.

1. 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2. 법 제14조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어 있는 공동주택
3. 법 제2조제1항제10호가목 또는 같은 호 다목에 따른 관리주체가 구성되어 있는 공동주택

제4조(책무) ① 군수는 공동주택의 건전한 주거공동체 문화 조성 및 정착을 위하여 시책 마련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 등은 공동체 활성화의 주체로서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소통하는 주거공동체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공동주택 관련 단체는 공동주택 내·외의 주거공동체 문화 조성에 이바지하여야 하며, 특정의 이익을 위하여 사업을 운영하여서는 안 된다.

제5조(지원사업) ① 군수는 제3조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하는 지원대상의 관리주체 또는 공동주택 관련 단체에게 그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체험·교육 프로그램 운영
2.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모에 선정된 사업
3. 공동주택 간 갈등해소를 위한 사업

4. 주민 참여형 지역봉사활동 또는 보육프로그램 운영

5. 그 밖에 공동주택 활성화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1. 친목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가요제, 축제 등 단순 1회성 행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3. 동일사업에 대하여 계속하여 3년 이상 지원 받은 경우

4. 특정 정당 또는 특정 단체를 지지하는 등 이 조례의 목적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6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① 제5조에 따른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 지원 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여러 개 공동주택 관리주체 중 대표자를 선정하는 경우는 그 선정된 대표자를 말한다) 또는 제2조제6호에 따른 단체를 대표하는 사람은 해당 지원 대상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여러 개 공동주택이 연관된 경우는 그 모든 입주자대표회의를 말한다)의 의결을 거쳐 지원신청서에 군수가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지원신청자가 제2조제6호에 따른 단체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호는 제외할 수 있다.

1. 신청자의 성명 · 단체명과 주소

2. 사업 목적과 그 내용

3. 사업의 수행에 따른 기대효과

4. 사업에 드는 총 경비와 지원받고자 하는 금액과 산출 근거

5. 자체 부담이 있을 경우 공동주택별 관리주체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과 재원조달 방법

6. 사업 기간(예정일과 예상 종료일을 포함한 기간)

7. 그 밖에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③ 보조금의 지원 절차, 관리, 결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르거나 준용한다.

제7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참고 상위 및 관계법령(발췌)

□ 「공동주택관리법(법률)」 (2022.6.10. 일부 개정, 2022.12.11. 시행)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이란 다음 각 목의 주택 및 시설을 말한다. 이 경우 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은 제외한다.
 가.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
 나.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물
 다. 「주택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부대시설 및 같은 조 제14호에 따른 복리시설
2.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란 해당 공동주택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자를 두고 자치 의결기구를 의무적으로 구성하여야 하는 등 일정한 의무가 부과되는 공동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말한다.
 가.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나.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다. 15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을 포함한다)의 공동주택
 라.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동주택 중 입주자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동의하여 정하는 공동주택
3. "공동주택단지"란 「주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주택단지를 말한다.
4. "혼합주택단지"란 분양을 목적으로 한 공동주택과 임대주택이 함께 있는 공동주택단지를 말한다.
5. "입주자"란 공동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直系尊卑屬)을 말한다.
6. "사용자"란 공동주택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사람(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제외한다) 등을 말한다.
7. "입주자등"이란 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한다.
8. "입주자대표회의"란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을 대표하여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제14조에 따라 구성하는 자치 의결기구를 말한다.
9. "관리규약"이란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을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제18조제2항에 따라 입주자등이 정하는 자치규약을 말한다.
10. "관리주체"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제6조제1항에 따른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나. 제13조제1항에 따라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의 사업주체
다. 주택관리업자
라. 임대사업자
마.「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주택임대관리업자(시설물 유지·보수·개량 및 그 밖의 주택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2022.12.9. 일부 개정, 2024.1.1. 시행)

제2조(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범위)「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 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전체 입주자등의 3분의 2 이상이 서면으로 동의하는 방법을 말한다.

□ 「대구광역시 달성군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2022.10.28. 제정시행)

제8조(지원대상)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주거·교육·양육 환경 및 공공시설 개선
2. 자연환경 보호 및 보전
3. 마을자원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및 복지 증진
4. 마을공동체와 관련된 단체·기관 지원 사업
5. 마을공동체 사업과 관련된 교육·컨설팅 등 주민역량 강화
6. 그밖에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마을공동체 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의한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1.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경우
2.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선거에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자를 지지하는 경우
3. 특정 종교의 교리를 전파하는 경우
4. 친목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대구광역시 달성군 농공지구오폐수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금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 출 일: 2023년 3월 27일

2. 제 출 자: 박영동 의원 등 3인

3. 제안사유

○ 상위법령에 따라 용어를 비롯하여 조문, 별지, 서식 등 전반적으로 정비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총칙 :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처리구역(안 제1장)

○ 배수설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2장)

○ 시설설치비의 부담에 관한 사항(안 제3장)

○ 유지관리비의 부담에 관한 사항(안 제4장)

○ 부담금의 독촉 및 체납처분에 관한 사항(안 제5장)

5. 관계법령

○「물환경보전법」,「환경정책기본법」

6.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금 징수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안으로 현행법령에서 정의하는 용어를 적용하여 조문, 별지, 서식 등을 정비하고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4조에 변경된 배출허용기준을 반영한 조례 개정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붙임 1. 조례안 1부.
2. 관계법령 1부. 끝.

대구광역시 달성군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달성군 농공지구오폐수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금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농공지구오폐수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금 징수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금 징수조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물환경보전법」 제48조 내지 제51조 및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 내지 제7조의2의 규정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 내의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이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 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지정된 농공단지에 설치된 공공폐수처리시설(이하 “처리시설” 이라 한다)을 말한다.

2. “관리사무소장” 이란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달성군” 이라 한다) 처리시설의 운영관리 책임자를 말한다.

3. “사업자(장)”이란 농공단지 안에 입주하여 폐수 또는 생활오수를 배출하는 사업자 또는 사업장을 말한다.

4. “폐수관거”란 각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폐수 및 생활오수를 집결시켜 처리시설로 유입시키는 관거 및 부대시설을 말한다.

5. “배수설비”란 각 사업장 내에서 발생되는 우수를 제외한 폐수 및 생활오수를 폐수관거까지 연장시키기 위한 관거 및 부대시설을 말한다.

6. “부담금”이란 처리시설에서 폐수 또는 생활오수의 처리에 소요되는 경비 및 그 밖에 부대경비 또는 처리시설의 시설설치에 소요된 설치비를 해당 사업자(장)에 부담시키기 위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7. “계량기”란 폐수배출유량 및 농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폐수관 최종 방류구에 부착하는 각종 계기를 말한다.

제3조(처리구역) 본 처리시설의 처리구역은 「산업입지법」 제8조에 따라 농공단지로 지정된 구역으로 한다.

제2장 배수설비의 설치 및 관리

제4조(설치 및 운영업무의 대행)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업무에 대하여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6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처리시설의 설치비 및 운영비의 징수업무를 포함한다.

제5조(폐수 등의 배출) 사업자는 사업장에서 발생한 폐수나 생활오수를 처리시설에 유입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배수설비의 설치) ① 사업자는 사업장에서 폐수 및 생활오수를 배출

하기 이전에 제7조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에 따른 배수설비의 설치 또는 변경이 부적당하다고 관리사무소장이 인정할 때에는 배수설비의 구조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관리사무소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배수설비를 폐수관거에 접속시킬 때에는 관리사무소장이 지정하는 맨홀에 접속시켜야 한다.

제7조(배수설비의 구조) 배수설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1. 배수관의 관경은 배출 오·폐수의 유량을 고려한 충분한 크기로 설치하여야 한다.

2. 배수관은 우수관과 분리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3. 배수관은 기점, 종점, 합류점, 굴곡점, 관경이나 관종이 달라지는 곳에는 맨홀을 설치하여야 하며, 직선인 부분에는 안지름의 120배 이하의 간격으로 맨홀을 설치하여야 한다.

4. 배수관 입구에는 유효간격 10㎜ 이하의 스크린을 설치하여야 하고, 유지류를 배출하는 유출구에는 유지차단장치를, 다량의 토사를 배출하는 유출구에는 적당한 크기의 모래받이를 각각 설치하여야 하며, 배수관 또는 맨홀 등의 필요한 부분에는 방취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5. 유량계 및 각종 계량기 설치는 배수설비의 부대설비로 본다.

6. 시간 최대폐수량이 일평균 폐수량의 2배 이상과 순간 수질이 일평균 수질과 격차가 100㎎/L 이상인 사업자(장)는 업체 자체적으로 유량조정조를 설치하여 처리시설 가동에 지장이 없도록 폐수량 및 수질을 조정한 후 배수하여야 한다.

제8조(배수설비의 설치공사) ① 배수설비의 설치공사는 해당 사업자(장)의 부담

으로 하며, 공사 시 파손되는 도로 등 시설물은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공사의 시공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상·하수도 설비공사 면허를 가진 자이어야 한다.

제9조(유량계 및 pH계 등) ① 폐수를 배출하는 사업자는 폐수배출 유량을 측정할 수 있는 유량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단, 폐수배출량이 극히 적은 소규모 배출업소로서 유량계 설치가 부적당하다고 관리사무소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유량계 설치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유량계의 종류는 관리사무소장이 인정하는 적정제품으로 하여 사업장 최종 방류구에 설치한다.

③ 사업자(장)는 제2항에 따라 설치한 유량계의 정확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그 기기의 조정(Calibration)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④ 관리사무소장은 처리시설 설치비 및 운영비의 부과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pH계, 수질측정계 등을 부착하도록 관할 사업자(장)에 요구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장치의 부착은 제7조제4호에 따른 스크린, 모래받이, 유지차단장치의 뒤에 설치하여야 한다.

⑥ 사업자는 제1항 내지 제5항에 따라 설치한 유량계 등 필요장치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로써 관리를 하여야 하며, 고의나 과실로 그 기능을 저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사용개시의 신고) 사업자는 제6조에 따라 배수설비의 설치를 완료하고 폐수 및 생활오수를 배출하고자 할 때에는 배수 7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관리사무소장에게 배수설비 사용개시 신고를 하여야 하며, 배수설비의 사용을 중지하고자 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1조(배출기준) 폐수배출 사업자는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4조에

서 규정하는 배출허용기준을 따른다.

제12조(배수설비의 관리) 배수설비는 사업자가 관리의 책임을 지며, 관리사무소장은 필요 시 이의 개·보수를 지시할 수 있다.

제3장 시설설치비의 부담

제13조(시설설치비의 부담)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처리시설 내 시설 설치에 소요된 비용의 일부(이하 "시설설치비"라 한다)를 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1. 농공단지 내에 입주한 사업자 또는 입주하기로 부지분양을 받은 사업자(이하 "최초사업자"라 한다)
2. 폐수배출시설의 신설 또는 변경에 따라 폐수배출량이 증가되는 사업자(이하 "증설사업자"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설치비의 산출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14조(시설설치비 부담대상 신고) 제13조에 따라 시설설치비 부담대상이 되는 사업자는 최초 폐수배출일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관리사무소장에게 시설설치비 부담대상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15조(시설설치비의 부과) ① 군수는 시설설치비의 부담대상 신고 후 30일 이내에 제13조제2항에 따라 시설설치비를 산정하여 해당 사업자에게 [별지 제4호 서식]에 의거 납부 고지하되, 납부기간은 최초사업자에 대하여는 융자금 상환기간에 따라 분할고지하고 증설사업자에 대하여는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분할고지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고지할 때 최종납부일은 고지일부터 10일 이상의 기간을 두고 정한다.

제16조(시설설치비의 납부 및 납부의무의 중단) ① 시설설치비의 납부대

상자는 제15조에 따른 부담금을 군수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증설사업자의 경우 시설설치비의 납부기간 중 대상사업장의 폐업으로 폐수배출이 중단되었을 경우 사업자는 폐수배출이 중단된 시점이전까지 고지된 부담금에 대하여만 납부의무를 진다.

제17조(시설설치비의 재산정) 증설사업자의 경우 폐수배출시설의 신·증설 이후 실제 배출된 폐수의 오염부하량(관리사무소장이 정상 배출로 인정한 6개월 이상의 실측 평균치)이 시설설치비 부과 시 산정된 오염부하량 120%를 초과할 경우 군수는 평균 오염부하량으로 시설설치비를 재산정하여 차액분을 추가 부과할 수 있다.

제4장 유지관리비의 부담

제18조(유지관리비의 부담) ① 사업자는 오·폐수처리에 소요되는 경비(이하 "유지관리비"라 한다)를 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유지관리비의 산출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③ 관리사무소장은 처리시설 유지관리 실적자료에 따라 매 2년마다 유지관리비 산출기준을 군수의 승인을 받아 수정할 수 있다.

제19조(유지관리비의 부과 및 납부) ① 관리사무소장은 제18조에 따른 유지관리비를 군수를 대신하여 월별로 산정·부과하되 당월의 유지관리비를 익월 15일까지 사업자에게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납부고지 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을 매월 25일까지 군수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20조(휴업 등 비정상 가동 시 비용부담) 휴업 또는 일시 가동 정지로 비정상 가동된 사업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유지관리비

비용부담은 비정상 가동 직전 3개월 간의 실적평균치의 기본요금과 인건비만 계상된 처리요금으로 산정한다.

1. 월간 폐수배출량으로 산정한 비용부담금이 비정상가동 시 비용부담 방법에 의한 산출금액보다 적은 사업자

2. 휴업신고에 의하여 1개월 이상 휴업한 사업자

제21조(오·폐수량의 산정) ① 관리사무소장은 제19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산정을 위하여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배출되는 오·폐수의 양과 오염농도를 직접 조사토록 하되 폐수배출량은 유량계로 실측하고 오염농도는 월 3회 이상 정상배출로 인정되는 임의시점에서 실측한 결과를 3개월 범위에서 계속 인정 사용할 수 있다.

② 제9조제1항 단서 규정에 따른 유량계 미설치업소 및 오수배출업소에 대해서는 관리사무소장이 용수사용량, 종업원 수 등을 기준으로 추정, 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유량산정 방식은 입주업체와의 협의를 거쳐 관리사무소장이 정한다.

③ 비용부담금 감액 등의 목적으로 유량계를 파손, 조작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오·폐수량 산정에 있어 제품생산량, 용수사용량 등을 기준으로 관리사무소장이 추정 산정하되 발생가능한 최대량으로 산정할 수 있다.

제22조(부담금의 추정) 관리사무소장은 사업자가 제11조에 따른 배출기준을 초과하여 폐수를 배출함으로써 폐수관거나 처리시설 시설물 또는 폐수처리에 장애를 주었다고 인정할 경우 이를 원상으로 회복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추가 징수할 수 있다.

제23조(이의신청) ① 이 조례에 따라 부과하는 제19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에 대하여 이의제기로 그 부담금액이 잘못되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당월분 부담금을 정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부담금액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도 부담금의 납기일은 변경되지 아니한다.

③ 부담금의 계산이 잘못된 사업자(장)가 납기일까지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정당한 부담금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연체료를 적용하지 않는다.

제5장 부담금의 독촉 및 체납처분

제24조(가산금) 제15조 및 제19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관리사무소장은 그 납부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부담금에 대하여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제25조(독촉) 제15조 및 제19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을 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리사무소장은 납기 경과 후 15일 이내에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독촉장을 발부하고 그 납부기한은 독촉장 발부일부터 10일 이상으로 정한다.

제26조(체납처분) 사업자가 제25조에 따른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부담금과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관리사무소장의 요청에 의거 군수는 「물환경보전법」 제49조의6에 따라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27조(자료제출명령 등) ① 관리사무소장은 처리시설 운영에 필요한 경우 사업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의 관계시설 또는 관계서류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사업자는 매월 12월 말까지 다음 년도의 월별 용수사용량, 폐수량, 제품생산량과 그 오염물질 배출계획서를 작성하여 관리사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8조(권리, 의무의 승계) 본 처리시설의 처리구역 안에서 폐수나 오수를 배출하는 시설 및 대지의 소유권 또는 관리권을 취득한 자는 이 조례에 따라 그 취득 전의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발생한 권리, 의무를 승계한다.

제29조(사용의 제한) ① 관리사무소장은 재해나 그 밖에 부득이한 경우와 공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폐수관거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을 제한할 때에는 30일 이상의 기한을 두고 미리 예고하여야 한다.

제30조(배수설비 등 시설설치의무 불이행) ① 제6조제1항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 제9조에 따른 유량계 · pH계 등의 시설 설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리사무소장은 임의로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 그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② 배수설비 미설치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배출되는 오 · 폐수가 처리시설에 유입될 경우에는 비용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오 · 폐수량의 산정 방법은 제21조제2항을 준용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시 설 설 치 비 의 산 출 기 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시설설치비의 산출기준은 다음과 같다.

◦ 최초 시설설치비

(1) 부담기준 : 전체부지면적에 분양부지면적으로 한다.(3년거치 10년균등상환)

(2) 산출근거 : $As = Fc \times \frac{KI}{KT}$

As : 업소부담금액

Fa : 융자금액(이자포함)의 110%해당액

- KI : 처리시설 준공시 업소별 총 분양 부지면적
- KT : 처리시설 준공시 총 분양 부지면적

◦ 증설사업자의 증설사업비(폐수 배출업체만 분양)

$$As = Fc \times \frac{Li}{LT}$$

- As : 비용부담자가 분기별 또는 매년 부담하여야 할 개별부담금
- Fc : 융자금액(이자포함)의 110%해당액
- LT : 설계오염부하량
- Li : 증설오염부하량
- $L = \frac{BOD부하+TOC부하}{2} + 1.3 \times SS부하$

·오염부하량 산출방법

공공폐수처리시설 준공 당시 배출시설 허가증에 신고된 예상 최대 오염부하량을 기준해서 산정

설 계 오 염 부 하 량 (LT)

구분 / 업체명	폐 수 량	농 도 (㎎/L)			오염부하량 (kg/day)		
		BOD	TOC	S S	BOD, TOC 평 균	1.3 × SS	계
계	35.2						34.72
○○○업체	31.1	520	520	380	16.2	15.4	31.6
○ ○ ○	1.4	1,370	1,370	60	1.9	0.1	2.0
○ ○ ○	0.25	1,370	1,370	60	0.3	0.02	0.32
○ ○ ○	3	70	70	165	0.2	0.6	0.8

【별표 2】

유 지 관 리 비 의 산 출 기 준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유지관리비의 산출기준은 다음과 같다.

◦ $AS : 0.2M \frac{KI}{KT} + 0.8M \frac{QOI}{QOT}$

기본요금 처리요금

- AS : 업소 부담금액
- M : 월간 유지관리비
 (직접경비 + 간접경비(직접경비의 10%) + 감가상각비(1,882,000원)
 KT : 전체입주업소 부지면적(업체별 부지분양면적 별표 3참조)
- KI : 개별업소부지면적분양 부지 면적
- QOT : 총 오·폐수배출 오염부하량

 · 폐수 : $\frac{BOD + TOC}{2} + SS$

 · 오수 : BOD+SS

- QOI : 개별업소 오·폐수 오염부하량

 · 폐수 : $\frac{BOD + TOC}{2} + SS$

 · 오수 : BOD+SS

【별지 제1호 서식】

배 수 설 비 설 치 (변경) 승 인 신 청 서

신고인	(1) 상호 또는 명칭			
	(2) 성 명(대표자) (4) 주 소		(3) 생년월일	
	(5) 전 화 번 호			
사업장	(6) 사 업 장 명 칭 (7) 사 업 장 소 재 지			
	(8) 전 화 번 호			
	(9) 업 종		(10) 주 생 산 품	
	(11) 착 공 예 정 일		(12) 준공예정일	

「대구광역시 달성군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금 징수조례」 제6조에 따라 배수설비의 설치(변경)승인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장 귀 하

구비서류

1. 배수설비 설치내역서
 가. 공사실시 설명서
 나. 배수설비와 폐수관거의 접속관계
 다. 폐수 맨홀 복구 계획서
2. 배출시설의 설치내역서 1통
3. 공정도 1통
4. 원료(연료와 용수를 포함한다.) 사용량 및 제품의 생산량과 오염물질등의 배출량을 예측한 내역서 1통

【별지 제2호 서식】

배 수 설 비 사 용 개 시(중지) 신 고 서

신고인	상호 또는 명칭			
	성명(대표자)		생 년 월 일	
	주 소			
	전 화 번 호			
사 업 장 명 칭				
사 업 장 소 재 지				
전 화 번 호 업 종				
설 치 완 료 연 월 일				

「대구광역시 달성군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금 징수조례」 제10조에 따라 사용개시(중지)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징 귀 하

【별지 제3호 서식】

시 설 설 치 비 부 담 대 상 신 고 서

신고인	상호 또는 명칭	
	성명(대표자) 생 년 월 일	
	주 소	
	전 화 번 호	
배수설비 사용개시일		

「내구광역시 달성군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유영 및 비용부담금 징수조례」 제14조에 따라 시설설치비 부담대상임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장 귀 하

구비서류

1. 토지 및 건물 등기부등본 각 1통

2. 오염물질 배출량 예측 내역서 1통

【별지 제4호 서식】

시 설 설 치 비

(분기) 부담금 납부 고지서

금액	원금 : 원 이자 :
납부기한	
업체명 대표자	
납부기관	○○금융기관
세입과목	특별회계 융자금이자수입, 과년도수입
부 담 금 거	

일자 : 년 월 일

위와 같이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시설 설치비 상환 부담금을 고지합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수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관리사업소장

영 수 증

(분기) 시설 설치비 상환금

금액	원금 : 원 이자 :
납부기한	
업체명 대표자	
납부기관	
세입과목	특별회계 융자금이자수입, 과년도수입
영수일자	

상기와 같이 정히 영수함.

○○금융기관장

영 수 필 통 지 서

(분기) 시설 설치비 상환금

금액	원금 : 원 이자 :
납부기한	
업체명 대표자	
납부기관	
세입과목	특별회계 융자금이자수입, 과년도수입
영수일자	

상기와 같이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금융기관장

대구광역시달성군수 귀하

【별지 제5호 서식】

(월분)유지관리비 부담금 납부고지서

금액	원금 : 원 이자 :
납부기한	
입체명	
대표자	
납부기관	○○금융기관
세입과목	특별회계 잡 수 입

부 담 근 기

수량	BOD TOC	S S
kg/d	kg/d kg/d	kg/d

부과일자 : 년 월 일

상기와 같이 공공폐수처리시설 유지관리비 부담금을 고지합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수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관리사무소장

(월분) 유지관리비 부담금 영수증

금액	원금 : 원 이자 :
납부기한	
입체명	
대표자	
납부기관	○○금융기관
세입과목	특별회계 잡 수 입
영수일자	

상기와 같이 정히 영수함.

○○금융기관장

영 수 필 통 지 서

(월분) 유지관리비 부담금

금액	원금 : 원 이자 :
납부기한	
입체명	
대표자	
납부기관	○○금융기관
세입과목	특별회계 잡 수 입
영수일자	

상기와 같이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금융기관장

대구광역시달성군수 귀하

【별지 제6호 서식】

독 촉 장

상 호		성 명 (대표자)	
수 소 (사업장)			

구 분	체납기간	체 납 금 액		
		계	부 담 금	가 산 금
시설설치비				
유지관리비				

위의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 까지 수납기관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장 ㊞

귀 하

1. 기한 내 완납하지 않을 때는 「물환경보전법」 제49조의6 및 「대구광역시 달성군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금 징수조례」 제26조에 따라 귀하의 재산을 압류하게 됩니다

2. 이 독촉장을 받기전에 이미 납부하신 경우에는 폐기하시기 바랍니다.

3. 그 밖에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당 지소 ()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상위 및 관계법령(발췌)

□ 「물환경보전법(법률)」(2021.9.24. 일부개정, 2022.3.25.시행)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7. “공공폐수처리시설”이란 공공폐수처리구역의 폐수를 처리하여 공공수역에 배출하기 위한 처리시설과 이를 보완하는 시설을 말한다.
18. “공공폐수처리구역”이란 폐수를 공공폐수처리시설에 유입하여 처리할 수 있는 지역으로서 제49조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제48조(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 ①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한국환경공단은 수질오염이 악화되어 환경기준을 유지하기 곤란하거나 물환경 보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의 각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공동으로 처리하여 배출하기 위하여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자 또는 그 밖에 수질오염의 원인을 직접 일으킨 자(이하 “원인자”라 한다)는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1. 한국환경공단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5호와 제6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에 준하는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운영 능력을 가진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8조의2(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의 부과·징수) ① 제48조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이하 “시행자”라 한다)는 그 시설의 설치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충당하기 위하여 원인자로부터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 부담금(이하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②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의 총액은 시행자가 해당 시설의 설치와 관련하여 지출하는 금액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원인자에게 부과되는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은 각 원인자의 사업의 종류·규모 및 오염물질의 배출 정도 등을 기준으로 하여 정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중소기업자의 비용부담으로 인하여 중소기업자의 생산활동과 투자의욕이 위축되지 아니하도록 세제상 또는 금융상 필요한 지원 조치를 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의 산정방법, 부과·징수의 방법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8조의3(공공폐수처리시설의 사용료의 부과·징수) ① 시행자는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충당하기 위하여 원인자로부터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사용료(이하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라 한다)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② 원인자에게 부과되는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는 각 원인자의 사업의 종류·규모 및 오염물질의 배출 정도 등을 기준으로 하여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징수한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는 공공폐수처리시설에 관한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의 산정 방법, 부과·징수의 방법과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9조(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① 환경부장관은 제48조제1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변경을 포함한다)할 때에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행자(환경부장관은 제외한다)가 제48조제1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변경을 포함한다)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였을 때에는 공공폐수처리구역을 지정하고 그 지정 내용을 포함한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승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하며, 그 사업예정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서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서 사본을 송부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 없이 이를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라 기본계획의 승인을 받은 후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에 승인 내용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49조의2(비용부담계획) ① 환경부장관이 제49조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에 드는 비용부담에 관한 계획(이하 "비용부담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원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시행자(환경부장관은 제외한다)가 제49조제2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의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용부담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비용부담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할 때에는 해당 사업의 시행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④ 시행자(환경부장관은 제외한다)는 제2항에 따라 비용부담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이를 원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9조의3(권리·의무의 승계)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의 징수대상이 되는 공장 또는 사업장 등을 양수한 자는 당사자 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양수 전에 이 법에 따라 양도자에게 발생한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에 관한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제49조의4(수용 및 사용) ① 시행자는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에 필요한 토지·건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이나 토지·건물 또는 물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는 경우 이 법 제49조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으로 보며, 재결신청(裁決申請)은 같은 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제49조의2에 따른 비용부담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시에 정한 사업의 시행기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49조의5(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및 사용료의 납입)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시행자가 국가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시행자가 국가인 경우만 해당한다)는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한다. 다만, 국가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사업을 제48조제1항에 따라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징수한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를 수탁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49조의6(강제징수) ① 시행자는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또는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를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독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체납된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또는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에 대해서는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한까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또는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를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8조제1항 각 호의 자(이하 "한국환경공단등"이라 한다)가 시행자인 경우에는 미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한국환경공단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또는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의 징수업무를 위탁할 수 있으며, 이를 위탁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한국환경공단등은 징수된 금액 중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비용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제49조의7(보고 등) 시행자는 제49조 및 제49조의2에 따른 기본계획 및 비용부담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공폐수처리구역의 원인자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원인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50조(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관리 등) ①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강우·사고 또는 처리공법상 필요한 경우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51조제2항에 따른 폐수관로로 유입된 수질오염물질을 공공폐수처리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공공폐수처리시설에 유입시키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2. 공공폐수처리시설에 유입된 수질오염물질을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3. 공공폐수처리시설에 유입된 수질오염물질에 오염되지 아니한 물을 섞어 처리하거나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수질오염물질이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최종 방류구를 통과하기 전에 오염도를 낮추기 위하여 물을 섞어 배출하는 행위

②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유지·관리기준에 따라 그 시설을 적정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관리에 관한 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 평가 지표·방법 등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공공폐수처리시설이 제2항에 따른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운영·관리되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해당 시설을 운영하는 자에게 그 시설의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⑤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관리에 관한 평가 결과 우수한 시행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포상금의 지급 기준·절차 등 포상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50조의2(기술진단 등) ① 시행자는 공공폐수처리시설의 관리상태를 점검하기 위하여 5년마다 해당 공공폐수처리시설에 대하여 기술진단을 하고,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행자는 한국환경공단 또는 「하수도법」 제20조의2에 따른 기술진단전문기관(이하 "기술진단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기술진단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기술진단을 대행하게 할 수 없다.

③ 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기술진단의 결과 관리상태가 적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개선계획 수립 및 시행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기술진단전문기관이 공공폐수처리시설에 대하여 기술진단을 실시하는 경우 「하수도법」 제20조의2 및 제20조의4를 준용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기술진단의 대상 및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51조(배수설비 등의 설치 및 관리 등) ① 시행자는 사업장의 폐수를 공공폐수처리시설로 유입시키기 위하여 폐수관로를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② 공공폐수처리구역에서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 및 폐수를 배출하려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해당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폐수관로로 유입시켜야 하며, 이에 필요한 배수관 등 배수설비를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폐수관로 및 배수설비의 설치방법, 구조기준 등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이에 관하여 규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④ 한국환경공단등은 유입되는 폐수의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공공폐수처리시설에 폐수를 유입하는 자에 대하여 제68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실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환경정책기본법(법률)」 (2021.9.24. 타법개정, 2022.3.25.시행)

제7조(오염원인자 책임원칙) 자기의 행위 또는 사업활동으로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의 원인을 발생시킨 자는 그 오염·훼손을 방지하고 오염·훼손된 환경을 회복·복원할 책임을 지며,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에 드는 비용을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의2(수익자 부담원칙)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가 환경보전을 위한 사업으로 현저한 이익을 얻는 경우 이익을 얻는 자에게 그 이익의 범위에서 해당 환경보전을 위한 사업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 출 일: 2023년 3월 27일

2. 제 출 자: 최재규 의원 등 3인

3. 제안사유

○ 제정(2019.5.30.)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추진사업이 없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규정한 내용과 유사하여 실효성이 부족하므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대구광역시 달성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를 폐지함

5. 관계법령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6. 검토의견

○ 대구광역시 달성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는 제정(2019.5.30.)후 유의미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추진사업이 없어 실효성이 부족하고, 남북교류협력은 정치 군사적 문제, 한반도 정세 변화 등 외부 요인에 취약성을 드러내고 있으며, 다양한 내·외부 변수가 영향을 미치는 남북교류협력을 성사시키기에는 기초 지자체 차원의 힘은 역부족일 수밖에 없고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조례가 아닌 상위 법령을 근거로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현실에 맞는 방향으로 폐지조례안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붙임 1. 조례안 1부.
2. 관계법령 1부. 끝.

대구광역시 달성군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달성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참고 상위 및 관계법령(발췌)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법률)」(2020.12.8. 일부개정, 2021.3.9. 시행)

제24조의2(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의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남북교류·협력을 위하여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을 증진하고, 관련 정책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통일부에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정책협의회를 둔다.

③ 제2항에 따른 정책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마을공동체 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 출 일: 2023년 3월 27일

2. 제 출 자: 양은숙 의원 등 3인

3. 제안사유

○ 대구광역시 달성군 마을공동체미디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추진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하고, 마을공동체미디어 활동에 필요한 경우 달성군 공유재산 사용에 대한 허가에 관하여 규정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제2조에 따른 용어 통일을 위해 조례 제명 변경

○ 마을공동체미디어운영단체에 대한 정의 확대(안 제2조)

○ 제2조에 따른 용어 통일을 위해 용어 정비(안 제3조)

○ 마을공동체미디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추진계획 수립 의무화(안 제4조)

○ 마을공동체미디어 활동을 위한 공공시설 사용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8조)

○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규칙으로 위임(안 제10조)

5. 관계법령

○「대구광역시 달성군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6.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최근 대중의 영상플랫폼 사용이 크게 증가하는 등 시민생활의 양상이 변화함에 따라 마을미디어 사업을 활성화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할 필요성이 증대되어 마을공동체미디어 운영단체의 정의 확대, 마을공동체미디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추진계획 수립 의무화, 마을공동체미디어 활동을 위한 공공시설 사용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군민의 미디어 활용능력을 높이고 마을공동체미디어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여 공동체 문화의 복원 및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조례안 개정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붙임 1. 조례안 1부.
2. 관계법령 1부. 끝.

대구광역시 달성군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달성군 마을공동체 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마을공동체 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대구광역시 달성군 마을공동체 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를 “대구광역시 달성군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를 “마을공동체의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로 하고, “군민”을 “대구광역시 달성군민”으로 한다.

제2조제2호 중 “이란”을 “이란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달성군”이라 한다)에서”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마을공동체미디어를 운용하고 경영하는 사회적협동조합, 비영리법인 등의 조직체”를 “달성군에서 마을공동체미디어를 운영하는 단체”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수립할 수 있다”를 “수립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군민”을 “대구광역시 달성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3호 중 “지원 사업”을 “지원사업”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위해”를 “위해 대구광역시 달성군”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따른 마을공동체”를 “따른 대구광역시 달성군 마을공동체”로 한다.

제8조를 제9조로 하고, 제8조 및 제10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9조(종전 제8조) 중 “외에는”을 “외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르거나”로 한다.

제8조(공공시설 사용) 군수는 마을공동체미디어 활동에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라 군 공유재산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마을공동체 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	대구광역시 달성군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미디어 활용능력을 높이고 마을공동체미디어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여 공동체 문화의 복원 및 확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마을공동체의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 대구광역시 달성군민――――――――――――――――

및 지원을 위해 매년 추진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② ----------.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3. 그 밖에 군수가 군민의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용능력 제고 및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 대구광역시 달성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
제5조(사업 및 지원) ① 군수는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제5조(사업 및 지원)** ① ----------.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3.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와 관련된 단체 · 기관의 지원 사업	3. ---------- 지원사업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해 마을공동체미디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 위해 대구광역시 달성군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	③ ----------

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른 마을공동체 지역위원회가 대신한다.	---------- 따른 대구광역시 달성군 마을공동체 ---.
〈신 설〉	**제8조(공공시설 사용)** 군수는 마을공동체미디어 활동에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라 군 공유재산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제8조(보조금 준용) 제5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 중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보조금 준용)** ---------- 외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르거나 ----------.
〈신 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마을공동체의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구광역시 달성군민의 미디어 활용능력을 높이고 마을공동체미디어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여 공동체 문화의 복원 및 확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공동체미디어”란 주민소통 및 공동체 문화 활성화를 위해 마을을 기반으로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운영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 영상, 음성, 인쇄, 신문, 방송 등의 매체를 말한다.
2. “마을공동체미디어 활동”이란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달성군”이라 한다)에서 마을공동체미디어 제작 및 운영, 발표, 비영리 목적의 유통 및 보급, 이들을 위한 교육 및 모임 등에 힘쓰는 것을 말한다.
3. “마을공동체미디어 운영단체”란 달성군에서 마을공동체미디어를 운영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마을공동체미디어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추진하고, 필요한 행정적 · 재정적 지원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② 군수는 마을공동체미디어 활동 활성화 및 공익성이 인정되는 마을공동체미디어 확산 · 보급에 노력해야 한다.

③ 군수는 마을공동체미디어의 독립적인 운영을 보장하고 자율성을 존중해야 한다.

④ 군수는 마을공동체미디어 관련 지방자치단체, 사회단체, 언론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효율적인 마을공동체미디어 육성 및 지원을 위해 매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계획의 추진방향 및 주요사업계획
2. 예산지원 규모, 협력방안
3. 그 밖에 군수가 대구광역시 달성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용능력 제고 및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업 및 지원) ① 군수는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연도별 추진계획에 반영된 사업
2.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교육, 홍보, 연구, 조사 사업 및 시범적으로 운영이 필요한 사업
3.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와 관련된 단체 · 기관의 지원사업

② 군수는 마을공동체미디어 활동을 수행하는 마을공동체미디어 운영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군민의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용능력 제고를 위한 각종 교육, 실습, 매체 제작, 발표 등의 활동
2. 마을공동체미디어 운영 및 관련 콘텐츠 제작
3.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모임 및 네트워크 구축
4. 그 밖에 군수가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해 대구광역시 달성군 마을공동체미디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4조에 따른 추진계획 수립 · 시행에 관한 사항
2. 마을공동체미디어 활동 지원 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른 대구광역시 달성군 마을공동체 지역위원회가 대신한다.

제7조(우수콘텐츠의 활용) 군수는 마을공동체가 생산하는 마을공동체미디어 관련 콘텐츠를 공공기관 또는 공공시설 등에서 활용할 수 있다.

제8조(공공시설 사용) 군수는 마을공동체미디어 활동에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라 군 공유재산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제9조(보조금 준용) 제5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 중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르거나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참고 상위 및 관계법령(발췌)

□ 「대구광역시 달성군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2022.10.28. 제정시행)

제8조(지원대상)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주거·교육·양육 환경 및 공공시설 개선
2. 자연환경 보호 및 보전
3. 마을자원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및 복지 증진
4. 마을공동체와 관련된 단체·기관 지원 사업
5. 마을공동체 사업과 관련된 교육·컨설팅 등 주민역량 강화
6. 그밖에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마을공동체 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의한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1.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경우
2.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선거에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자를 지지하는 경우
3. 특정 종교의 교리를 전파하는 경우
4. 친목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 출 일: 2023년 4월 5일

2. 제 출 자: 달성군수

3. 제안사유

○ 주민투표권자 기준 연령 하향, 전자서명청구제도 도입, 주민투표청구심의회 관련 규정 정비 등의 내용으로 상위 법령인「주민투표법」이 개정됨에 따라 중복 및 개정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외국인 주민투표권자의 자격 중 연령에 대해 법에서 이미 18세로 규정하고 있어 조례에 규정할 실익이 없으므로 삭제(안 제3조)

○ 주민투표 대상을 법에서 규정함에 따라 조례의 주민투표 대상 관련 규정 삭제(안 제4조)

○「전자서명법」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통한 전자서명 요청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조례에 전자청구인서명부 관련 내용 추가(안 제8조, 제10조)

○ 리·반 단위로 주민투표를 실시할 경우 청구인서명부 또한 리·반 단위로 작성 하도록 함(안 제8조)

○ 주민투표청구심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정비(안 제12조 ~ 제16조)

○ 조례안 개정 사항을 반영한 서식 수정

5. 관계법령

○「주민투표법」

6.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주민투표법」 개정에 따른 법령 개정 사항과 조례 위임 사항을 반영하기 위함으로 전자청구인서명부 관련 내용 추가, 주민투표청구심의회 설치·운영 등에 관한 규정 및 서식을 정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붙임 1. 조례안 1부.

2. 관계법령 1부. 끝.

대구광역시 달성군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주민투표법」(이하 ” 법 “이라 한다)에서” 를 “「주민투표법」에서” 로 한다.

제2조의 제목 “(군의 책무)” 를 “(군수의 책무)” 로 하고, 제2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군수는 「주민투표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투표권을 부여받은 외국인이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국어와 한국어를 함께 표기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조 중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9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투표인명부작성기준일” 을 “투표인명부작성기준일” 로 하고,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자는” 을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은” 으로 한다.

제4조를 삭제한다.

제8조제1항 중 “성명 · 생년월일 · 주소 및 서명일자를” 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주민이 전자적 방식으로 생성된 청구인서명부(이하 "전자청구인서명부"라 한다)에 전자서명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것으로 본다.

제8조제1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성명
2. 생년월일
3. 주소 또는 체류지
4. 서명 연월일

제8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리·반 단위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제9조의 제목 "(청구인서명부의 제출)"을 "(주민투표청구서의 제출)"로 하고, 같은 조 중 "성명·주소·생년월일"을 "성명·생년월일·주소 또는 체류지"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청구인서명부"를 "청구인서명부(전자청구인서명부의 경우에는 그 출력물을 말한다)"로 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주민투표청구심의회) 법 제12조의2제3항의 규정에 따른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군 소속 5급 이상 관계 공무원
2.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3. 변호사, 교수 등 주민투표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군수가 위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를 각각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로 하고,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심의회 위촉위원의 임기) 심의회 위촉위원은 법 제12조의2제1항 각 호 사항의 심의·의결이 필요한 경우에 위촉하고, 그 심의·의결절차 종료 시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14조(심의회 위촉위원의 해촉) 군수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해 위촉된 위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을 경우 그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2. 위원이 질병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한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 또는 이득을 취한 경우
5.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의 품위 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

제15조(심의회의 운영 등) ① 법 제12조2제2항에 따라 부군수가 심의회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심의회의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의장이 소집한다.

④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심의회는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인의 의견진술 또는 증언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심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달성군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구광역시 달성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참석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⑦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16조(심의회 간사) ① 심의회에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주민투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제17조(종전의 제13조)제1항 중 "청구인대표자 증명서 교부신청 또는 서명요청권 위임신고를 받은 날부터"를 "청구인대표자 증명서 교부를 신청받은 날부터"로 하고, "청구인대표자 증명서 또는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을"을 "청구인대표자 증명서를"로 한다.

제20조(종전의 제16조) 중 "법 제13조제2항"을 "법 제13조제2항, 법 제26조제1항,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7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신청서

청구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 이유				
주민투표실시 구역 변경	[]신청 []필요없음			
	<변경 사유>			

주민투표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대표자 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대구광역시 달성군수 귀하

※ 작성요령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2.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3. 청구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의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요지만 기재하고 별지로 작성
4.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
5. 주민투표실시구역변경란에는 관할구역 중 특정지역 일부에서만 주민투표를 실시하고자 하는 예외적인 경우 신청하며, 특정한 지역 또는 주민에게 이해관계가 있는 사유를 작성

210mm × 297mm (일반용지 60g/m^2)

【별지 제2호 서식】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주민투표 청구요지		
서명요청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제외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제외지역 :	

위 사람은 주민투표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대표자로서 위와 같이 주민투표청구권자의 서명을 요청할 권한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 달성군수 (인)

※ 작성요령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2.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3.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210mm × 297mm (일반용지 60g/m^2)

【별지 제3호 서식】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

주민투표 청구요지			
청구인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수임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주민투표법 제10조제3항과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구인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을 위임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대구광역시 달성군수 귀하

※ 작성요령

1.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3.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4. 수임자가 다수인 경우, 별지로 작성

210mm × 297mm (일반용지 60g/m^2)

【별지 제4호 서식】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

주민투표 청구요지			
청구인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수임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주민투표법 제10조제3항과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구인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의 위임사실을 신고하였으며, 수임인은 서명요청권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 달성군수 (인)

※ 작성요령

1.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3.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4. 수임자가 다수인 경우, 별지로 작성

210mm × 297mm (일반용지 60g/m^2)

【별지 제5호 서식】

(청구인서명부의 표지)

(　　) 주민투표의 청구

청 구 인 서 명 부

서 명 기 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서명주민수 :　　명

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책중 ○권)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수 임 자　　(서명 또는 날인)

※ 작성요령

1. (　)에는 주민투표청구의 주요내용을 요약한 주민투표청구대상을 기재하며, 서명주민수가 많은 경우에는 책과 권으로 분철하고, 수임자는 책과 권별로 서명을 요청한 수임자를 기재한다.
2. 서명을 요청한 수임자가 다수인 경우, 각 수임자를 모두 기재한다.
3. 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책중 ○권) 란에는 리·반 단위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주민투표가 실시되는 리·반으로 작성한다.

청 구 인 서 명 부

번호	성 명	생년월일 성별	주 소	서 명 또는 날 인	서명일자 비고

※ 작성요령

1. 번호란에는 서명순서에 의하여 일련번호를 기재.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3. 주소란에는 도로명과 건물번호까지 기재하고, 상세주소(동번호, 호수 또는 층수)가 있는 경우에는 상세주소를 기재. 다만,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4. 서명 또는 날인란에는 본인임을 식별할 수 있도록 자필로 성명을 기재하거나 날인
5. 서명자가 서명을 철회하거나, 무효인 서명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붉은선으로 두줄을 그어 삭제하고, 비고란에 그 삭제일자를 기재

【별지 제6호 서식】

주민투표청구서

청구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 이유			

주민투표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주민투표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대구광역시 달성군수 귀하

※ 첨부서류 : 관련자료

※ 작성요령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2.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3. 청구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의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요지만 기재하고 별지로 작성

210mm × 297mm (일반용지 60g/m^2)

【별지 제7호 서식】

이 의 신 청 서

신 청 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대 상				
신 청 취 지				
신 청 사 유				

주민투표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대구광역시 달성군수 귀하

※ 첨부서류 : 증빙자료

※ 작성요령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2.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 기재
3. 대상란에는 주민투표청구취지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210mm × 297mm (일반용지 60g/m^2)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정에 주민참여를 촉진하고 주민의 의견을 적극반영하기 위하여 「주민투표법」(이하“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주민투표법」에서 ---------- ----------
제2조(군의 책무) ①~③ (생 략)	제2조(군수의 책무) ①~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군수는 「주민투표법」(이하“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투표권을 부여받은 외국인이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국어와 한국어를 함께 표기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조(외국인의 주민투표권)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9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투표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고, 출입국관리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자는 주민투표권이 있다.	제3조(외국인의 주민투표권) 투표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고, 출입국관리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은 주민투표권이 있다.

제4조(주민투표의 대상)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읍·면의 명칭 및 구역변경, 폐치분합, 사무소변경에 관한 사항 2. 리의 명칭 및 구역변경, 폐치·분합에 관한 사항 3. 다수 주민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주요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각종 기금의 설치, 지방채 발행, 민간투자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 5. 법 제7조제2항제5호에서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 기타 다른 법률에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한 사항 6. 기타 주민의 복리·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결정사항	<삭 제>
제8조(서명 및 청구인서명부 작성) ① 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하고자 하는 주민은 청구인서명부에 성명·생년월일·주소 및 서명일자를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제8조(서명 및 청구인서명부 작성) ① 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하고자 하는 주민은 청구인서명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주민이 전자적 방식으로 생성된 청구인서명부(이하“전자청구인서명부”라 한다)에 전자서명을 하

	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것으로 본다. 1. 성명 2. 생년월일 3. 주소 또는 체류지 4. 서명 연월일
② 청구인서명부는 행정리별 구분하여 읍·면별로 작성하여야 한다.<주단 신설>	② ---------- ---------- --. 다만,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리·반 단위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제9조(청구인서명부의 제출)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청구서에는 청구인대표자의 성명·주소·생년월일,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제9조(주민투표청구서의 제출) -- ----------주민투표청구서에는 청구인대표자의 성명·생년월일·주소 또는 체류지---------- ---------- ----------.
제10조(청구인서명부의 열람) ① 군수는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읍·면별로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장소를 정하여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서명부 또는 그 사본을 주민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제10조(청구인서명부의 열람) ① ---------- ---------- ---------- ---------- 청구인서명부(전자청구인서명부의 경우에는 그 출력물을 말한다) - ----------

②~④ (생 략)	②~④ (현행과 같음)
제12조(주민투표청구심의회) ① 군수는 다음 각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12조(주민투표청구심의회) 법 제12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청구인서명부에 기재된 유효서명의 확인	1. 군 소속 5급 이상 관계공무원
2. 이의신청의 심사·결정	2.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3. 주민투표청구요건의 심사·결정	3. 변호사, 교수 등 주민투표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기타 의장이 부의하는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위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심의회의 의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의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삭 제>
③ 심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포함하여 7인이상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과반수는 공무원이 아닌 자로 하여야 한다.	<삭 제>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하되, 주민투표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국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삭 제>
1. 군 소속 4급이상 공무원	
2. 군의회가 추천하는 군의원	
3. 변호사, 대학교수, 공인회계사	

시민단체대표 또는 이에상당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4. 기타 주민투표 등 관련분야에 있어서 전문성과 식견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4항의1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임명당시의 직위에 재직중인 기간으로 하고, 제4항2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그 의원의 임기내로 한다.	제13조(심의회 위촉위원의 임기) 심의회 위촉위원은 법 제12조의2 제1항 각 호 사항의 심의·의결이 필요한 경우에 위촉하고, 그 심의·의결 절차 종료 시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⑥ 군수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해 위촉되는 위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위임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기타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 2.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제14조(심의회 위촉위원의 해촉) 군수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해 위촉된 위원에 대해서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을 경우 그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중 사망하였을 경우 2. 위원이 질병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한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 또는 이득을 취한 경우 5.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의 품위 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
<신 설>	제15조(심의회의 운영 등) ① 법 제12조2제2항에 따라 부군수가 심의회의 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이 된다.
<신 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수 없는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심의회의 회의는 의장 또는 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한 경우 의장이 소집한다.	③ 심의회의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의장이 소집한다.
⑧, ⑫ (생략)	④, ⑦ (현행과 같음)
⑨ 심의회는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인의 의견진술 또는 증인을 요구할 수있다.	⑤ -----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과 ----------. ----------
⑩ 심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대구광역시 달성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군소속 공무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그러하	⑥ ---------- ---------- 「대구광역시 달성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따라 회의참석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지 아니하다. ⑪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주민투표업무 담당과장이 서기는 주민투표업무 담당6급이 된다.	제16조(심의회 간사) ① 심의회에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주민투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제13조(처리기간) ① 군수는 청구인대표자로부터 청구인대표자 증명서 교부신청 또는 서명요청권위임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서명요청권위임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③ (생략)	제17조(처리기간) ① 군수는 청구인대표자로부터 청구인대표자 증명서 교부를 신청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구인대표자 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③ (현행과 같음)
제14조~제15조 (생 략)	제18조~제19조(현행 제14조부터 제15조까지와 같음)
제16조(공표방법 등) 법 제8조제2항, 법 제9조제4항, 법 제10조제2항, 법 제12조제3항, 법 제12조제8항 및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표와 제10조제4항 및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관보·공보·게시판·일간신문중 하나 이상과 인터넷에의 게시 또는 게재로써 한다.	제20조(공표방법 등) ---------- ---------- ---------- ---------- ---------- 법 제13조제2항, 법 제26조제1항,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의 ---------- ----------.

【별지 제1호 서식】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신청서				
청구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 이유				

주민투표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대표자 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대구광역시 달성군수 귀하

※ 작성요령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2. 주소란에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거주지,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 기재
3. 청구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의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요지만 기재하고 별지로 작성

〈신 설〉

【별지 제2호 서식】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		
주민투표 청구요지			
서명요청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제외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제외지역 :		

위 사람은 주민투표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대표자로서 위와 같이 주민투표청구권자의 서명을 요청할 권한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 달성군수 (인)

※ 작성요령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2. 주소란에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거주지,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 기재
3. 주민투표청구 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별지 제1호 서식】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신청서			
청구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 이유			
주민투표실시구역 변경	[]신청 []필요없음		
	〈변경 사유〉		

주민투표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대표자 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대구광역시 달성군수 귀하

※ 작성요령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2.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3. 청구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의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요지만 기재하고 별지로 작성
4.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
5. 주민투표실시구역변경란에는 관할구역 중 특정지역 일부에서만 주민투표를 실시하고자 하는 예외적인 경우 신청하며, 특정한 지역 또는 주민에게 이해관계가 있는 사유를 작성

【별지 제2호 서식】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주민투표 청구요지			
서명요청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제외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제외지역 :		

위 사람은 주민투표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대표자로서 위와 같이 주민투표청구권자의 서명을 요청할 권한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 달성군수 (인)

※ 작성요령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2.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3.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별지 제3호 서식】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			
주민투표 청구요지			
청구인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수임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주민투표법 제10조 제3항과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구인대표자의 서명 요청권을 위임 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대구광역시 달성군수 귀하

※ 작성요령

1. 주민투표청구 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3. 주소란에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거주지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 기재
4. 수임자가 다수인 경우, 별지로 작성

【별지 제4호 서식】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				
주민투표 청구요지				
청구인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수임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주민투표법 제10조 제3항과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구인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의 위임사실을 신고하였으며, 수임인은 서명요청권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 달성군수 (인)

※ 작성요령

1. 주민투표청구 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3. 주소란에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거주지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 기재
4. 수임자가 다수인 경우, 별지로 작성

【별지 제3호 서식】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			
주민투표 청구요지			
청구인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수임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주민투표법 제10조제3항과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구인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을 위임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대구광역시 달성군수 귀하

※ 작성요령

1.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3.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4. 수임자가 다수인 경우, 별지로 작성

【별지 제4호 서식】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				
주민투표 청구요지				
청구인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수임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주민투표법 제10조제3항과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구인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의 위임사실을 신고하였으며, 수임인은 서명요청권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 달성군수 (인)

※ 작성요령

1.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3.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4. 수임자가 다수인 경우, 별지로 작성

【별지 제5호 서식】

(청구인서명부의 표지)

(　　) 주민투표의 청구

청 구 인 서 명 부

서명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서명주민수 : 명

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책중 ○권)
※ 주민투표법 제16조의 단서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읍면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수 임 자 (서명 또는 날인)

※ 작성요령

1. (　)에는 주민투표청구의 주요내용을 요약한 주민투표청구내용을 기재하며, 서명주민수가 많은 경우에는 책과 권으로 분철하고, 수임자는 책과 권별로 서명을 요청한 수임자를 기재한다.
2. 서명을 요청한 수임자가 다수인 경우, 각 수임자를 모두 기재한다.

<신 설>

청 구 인 서 명 부

번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서명 또는 날인	서명일자	비고

※ 작성요령

1. 번호란에는 서명순서에 의하여 일련번호를 기재.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3. 주소란에는 도로명과 건물번호까지 기재하고, 상세주소(동번호, 호수 또는 층수)가 있는 경우에는 상세주소를 기재. 다만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거주지,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 기재
4. 서명 또는 날인란에는 본인임을 식별할 수 있도록 자필로 성명을 기재하거나 날인
5. 서명자가 서명을 철회하거나, 무효인 서명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붉은 선으로 두 줄을 그어 삭제하고, 비고란에 그 삭제일자를 기재

【별지 제5호 서식】

(청구인서명부의 표지)

(　　) 주민투표의 청구

청 구 인 서 명 부

서명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서명주민수 : 명

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책중 ○권)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수 임 자 (서명 또는 날인)

※ 작성요령

1. (　)에는 주민투표청구의 주요내용을 요약한 주민투표청구내용을 기재하며, 서명주민수가 많은 경우에는 책과 권으로 분철하고, 수임자는 책과 권별로 서명을 요청한 수임자를 기재한다.
2. 서명을 요청한 수임자가 다수인 경우, 각 수임자를 모두 기재한다.
3. 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책중 ○권) 란에는 리·반 단위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주민투표가 실시되는 리·반으로 작성한다.

청 구 인 서 명 부

번호	성 명	생년월일	성별	주 소	서명 또는 날인	서명일자	비고

※ 작성요령

1. 번호란에는 서명순서에 의하여 일련번호를 기재.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3. 주소란에는 도로명과 건물번호까지 기재하고, 상세주소(동번호, 호수 또는 층수)가 있는 경우에는 상세주소를 기재. 다만,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4. 서명 또는 날인란에는 본인임을 식별할 수 있도록 자필로 성명을 기재하거나 날인
5. 서명자가 서명을 철회하거나, 무효인 서명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붉은선으로 두줄을 그어 삭제하고, 비고란에 그 삭제일자를 기재

【별지 제6호 서식】

주민투표청구서			
청구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			

주민투표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주민투표를 청구
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대구광역시 달성군수 귀하

※ 첨부서류 : 관련자료

※ 작성요령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2. 주소란에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거주지,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 기재
3. 청구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의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요지만 기재하고 별지로 작성

【별지 제6호 서식】

주민투표청구서			
청구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			

주민투표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주민투표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대구광역시 달성군수 귀하

※ 첨부서류 : 관련자료

※ 작성요령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2.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3. 청구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의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요지만 기재하고 별지로 작성

【별지 제7호 서식】

이 의 신 청 서			
신 청 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대 상			
신 청 취 지			
신 청 사 유			

주민투표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대구광역시 달성군수 귀하

※ 첨부서류 : 증빙자료

※ 작성요령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이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2. 주소란에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거주지,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 기재
3. 대상란에는 주민투표청구취지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별지 제7호 서식】

이 의 신 청 서			
신 청 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대 상			
신 청 취 지			
신 청 사 유			

주민투표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대구광역시 달성군수 귀하

※ 첨부서류 : 증빙자료

※ 작성요령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2.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 기재
3. 대상란에는 주민투표청구취지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참고 **상위 및 관계 법령**

□ 주민투표법

제2조(주민투표권행사의 보장)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민투표권자가 주민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5조제1항에 따라 투표권을 부여받은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국어와 한국어를 함께 표기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공무원·학생 또는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자가 투표인명부를 열람하거나 투표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은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5조(주민투표권) ① 18세 이상의 주민 중 제6조제1항에 따른 투표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주민투표권이 있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라 선거권이 없는 사람에게는 주민투표권이 없다.

1. 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출입국관리 관계 법령에 따라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수 있는 자격(체류자격변경허가 또는 체류기간연장허가를 통하여 계속 거주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람

② 주민투표권자의 연령은 투표일 현재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제7조(주민투표의 대상) ①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다.

1. 법령에 위반되거나 재판중인 사항
2.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또는 사무에 속하는 사항
3.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
 가. 예산 편성·의결 및 집행
 나. 회계·계약 및 재산관리

3의2. 지방세·사용료·수수료·분담금 등 각종 공과금의 부과 또는 감면에 관한 사항

4. 행정기구의 설치·변경에 관한 사항과 공무원의 인사·정원 등 신분과 보수에 관한 사항
5. 다른 법률에 의하여 주민대표가 직접 의사결정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는 공공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다만,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가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동일한 사항(그 사항과 취지가 동일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주민투표가 실시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항

제10조(청구인대표자의 선정과 서명의 요청 등) ① 주민투표청구권자가 제9조제2항에 따라 주민투표청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주민투표청구인대표자(이하 "청구인대표자"라 한다)를 선정하여야 하며, 선정된 청구인대표자는 인적사항과 주민투표청구의 취지 및 이유 등을 기재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인대표자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청구인대표자는 청구인대표자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할 때 제4항에 따른 전자서명의 요청을 위하여 같은 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이용을 함께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청구인대표자증명서의 교부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청구인대표자가 주민투표청구권자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청구인대표자증명서를 교부하고 그 사실을 공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후단에 따라 정보시스템의 이용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5항 각 호의 사항을 함께 공표하여야 한다.

③ 청구인대표자와 서면에 의하여 청구인대표자로부터 서명요청권을 위임받은 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서명요청기간 동안 주민에게 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명이 제한되는 기간은 서명요청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청구인대표자와 서면에 의하여 청구인대표자로부터 서명요청권을 위임받은 자는 제3항에 따른 서명을 갈음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같은 항에 따른 서명요청기간 동안 주민에게 전자적 방식으로 생성된 청구인서명부(이하 "전자청구인서명부"라 한다)에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청구인서명부의 심사·확인 등) ①청구인대표자는 제10조제3항에 따른 서명요청기간이 만료되는 날부터 시·도의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시·군·구의 경우에는 5일 이내에 주민투표청구서와 청구인서명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전자청구인서명부의 경우에는 청구인대표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자청구인서명부를 직접 활용하도록 요청하는 것을 말한다)하여야 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명은 이를 무효로 한다.

1. 주민투표청구권자가 아닌 자의 서명
2. 누구의 서명인지 확인하기 어려운 서명
3. 서명요청권이 없는 자의 요청에 의하여 행하여진 서명
4. 동일인이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2 이상의 유효한 서명을 한 경우에는 그 중 하나의 서명을 제외한 나머지 서명
5.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서명요청기간외의 기간에 행하여졌거나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명요청이 제한되는 기간에 행하여진 서명

6. 강요 · 속임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행하여진 서명

7. 이 법의 위임에 의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방식과 절차에 위배되는 서명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주민투표청구서와 청구인서명부가 제출된 때에는 지체없이 주민투표청구사실을 공표하고, 청구인서명부(전자청구인서명부의 경우에는 그 출력물을 말한다) 또는 그 사본을 7일간 공개된 장소에 비치하여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청구인서명부의 서명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람기간내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⑤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있은 때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람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고 그 결과를 지체없이 이의신청인과 청구인대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인의 의견진술 또는 증언을 요구할 수 있다.

⑦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청구인서명부의 서명이 무효인 서명으로 판정되어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청구인대표자로 하여금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기간 이내에 이를 보정하게 할 수 있다.

⑧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청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청구인대표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1. 유효한 서명의 총수(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정을 요구한 때에는 그 보정된 서명을 포함한다)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에 미달되는 경우

2. 주민투표청구서와 청구인서명부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을 경과하여 제출된 경우

3. 제7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기간 이내에 보정하지 아니한 경우

⑨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청구인서명부의 제출 방법 및 서명에 대한 심사 · 확인 등 주민에 의한 주민투표청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2조(청구인서명부의 심사 · 확인 등) ① 청구인대표자는 제10조제3항에 따른 서명요청기간이 만료되는 날부터 시 · 도의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시 · 군 · 구의 경우에는 5일 이내에 주민투표청구서와 청구인서명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전자청구인서명부의 경우에는 청구인대표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자청구인서명부를 직접 활용하도록 요청하는 것을 말한다)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명은 이를 무효로 한다.
1. 주민투표청구권자가 아닌 자의 서명
2. 누구의 서명인지 확인하기 어려운 서명
3. 서명요청권이 없는 자의 요청에 의하여 행하여진 서명
4. 동일인이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2 이상의 유효한 서명을 한 경우에는 그 중 하나의 서명을 제외한 나머지 서명
5.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서명요청기간외의 기간에 행하여졌거나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명요청이 제한되는 기간에 행하여진 서명
6. 강요 · 속임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행하여진 서명
7. 이 법의 위임에 의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방식과 절차에 위배되는 서명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주민투표청구서와 청구인서명부가 제출된 때에는 지체없이 주민투표청구사실을 공표하고, 청구인서명부(전자청구인서명부의 경우에는 그 출력물을 말한다) 또는 그 사본을 7일간 공개된 장소에 비치하여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청구인서명부의 서명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람기간내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있은 때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람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고 그 결과를 지체없이 이의신청인과 청구인대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인의 의견진술 또는 증언을 요구할 수 있다.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청구인서명부의 서명이 무효인 서명으로 판정되어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청구인대표자로 하여금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기간 이내에 이를 보정하게 할 수 있다.
⑧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청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청구인대표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1. 유효한 서명의 총수(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정을 요구한 때에는 그 보정된 서명을 포함한다)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에 미달되는 경우
2. 주민투표청구서와 청구인서명부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을 경과하여 제출된 경우
3. 제7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기간 이내에 보정하지 아니한 경우
⑨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청구인대표자증명서의 교부, 서명요청, 청구인서명부의 작성 · 제출방법, 서명에 대한 심사 · 확인 등 주민에 의한 주민투표청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2조의2(주민투표청구심의회) ① 제9조에 따른 주민투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심의회와 성격·기능이 유사한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심의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1. 제12조제4항에 따른 청구인서명부의 서명에 대한 이의신청의 심사
2. 제12조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청구인서명부에 기재된 유효서명의 확인
3.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전자투표·전자개표의 실시
4. 그 밖에 심의회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 심의회의 의장은 시·도의 부시장·부지사, 시·군·구의 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이하 "부단체장"이라 한다)이 된다. 이 경우 부단체장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 심의회는 의장 및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6조(주민투표실시구역) ① 주민투표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다만, 특정한 지역 또는 주민에게만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인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중 일부를 대상으로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청구인대표자는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인대표자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할 때 제1항 단서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중 일부를 주민투표실시구역으로 정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제10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대표자증명서를 교부하기 전에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 주민투표실시구역을 정하여야 한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리·반의 설치와 명칭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 출 일: 2023년 4월 5일

2. 제 출 자: 달성군수

3. 제안사유

○ 행정리 신설(공동주택 입주)

읍·면	행정리	공동주택명(세대수)	지 번	입주예정
화원읍	설화4리	설화명곡역우방아이유쉘(320)	설화리 778-1	'22. 04.
다사읍	매곡22리	다사역금호어울림센트럴(945)	매곡리 521-2	'22. 03.

○ 행정리 분리

하빈면 하산2리는 마을 간 국도 횡단으로 지리적으로 단절되어 있고, 각각의 마을회관(경로당)을 별도 운영 등 두 마을로 분리되어 있어 과거부터 존재하던 자연마을(너울터, 수무지)별로 행정리를 분리하여 주민화합 및 효율적인 업무 도모

4. 주요내용

○ 리·반 조정 : 3리 증(328리 ⇨ 331리), 2반 증(2,822반 ⇨ 2,844반)

구분	읍·면	기존			개정			증감		이장 정수	비고
		행정리	반	세대수 (인구수)	행정 리	반	세대수 (인구수)	리	반		
신설	화원읍	-			**설화4리** (설화명곡역 우방아이유쉘)	6	320	**1**	**6**	**1**	'23.4. 입주
	다사읍	-			**매곡22리** (다사역 금호어울림센트럴)	16	945	**1**	**16**	**1**	'23.3. 입주
분리	하빈면	하산2리	**3**	**126 (245)**	하산2리	2	70 (128)	-	△1	-	너울터
					하산3리	1	56 (117)	**1**	**1**	**1**	수무지

5.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6.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화원읍·다사읍 신설 아파트 준공 및 입주에 따른 행정리·반을 신설하여 이장 정수 및 반 수를 조정하고, 하빈면 하산2리 행정구역이 주민의 실제 생활권과 일치하지 않아 불편을 초래하여 행정리 분리로 주민생활의 편리성과 행정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붙임 1. 조례안 1부.

2. 관계법령 1부. 끝.

대구광역시 달성군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리·반의 설치와 명칭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리·반의 설치와 명칭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2 중 화원읍 설화리란 및 화원읍 소계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읍 면	법정리명	이장 정수	행정리명
화원읍	설화리	**4**	설화1리 설화2리 설화3리 **설화4리**
화원읍 소계	6	**50**	**50**

별표2 중 다사읍 매곡리란 및 다사읍 소계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읍 면	법정리명	이장 정수	행정리명
다사읍	매곡리	22	매곡1리
			매곡2리
			매곡3리
			매곡4리
			매곡5리
			매곡6리
			매곡7리
			매곡8리
			매곡9리
			매곡10리
			매곡11리
			매곡12리
			매곡13리
			매곡14리
			매곡15리
			매곡16리
			매곡17리
			매곡18리
			매곡19리
			매곡20리
			매곡21리
			매곡22리
다사읍 소계	11	**66**	**66**

별표2 중 하빈면 하산리란 및 하빈면 소계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읍 면	법정리명	이장 정수	행정리명
하빈면	하산리	**3**	하산1리
			하산2리
			하산3리
하빈면 소계	9	**21**	**21**

별표3 중 화원읍 설화3리란 다음에 설화4리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읍 면	리	반	구 역
화원읍	설화4리	제 1 반	778-1(설화명곡역우방아이유쉘) 101동 101~601, 602~2402
		2	778-1(설화명곡역우방아이유쉘) 102동 601~2701, 602~2702
		3	778-1(설화명곡역우방아이유쉘) 103동 201~2901, 202~2902
		4	778-1(설화명곡역우방아이유쉘) 103동 203~2903, 204~2604)
		5	778-1(설화명곡역우방아이유쉘) 104동 101~2801, 202~2802
		6	778-1(설화명곡역우방아이유쉘) 105동 201~2901, 202~2902

별표3 중 다사읍 매곡21리란 다음에 매곡22리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읍 면	리	반	구 역
다사읍	매곡22리	제 1 반	521-2(다사역 금호어울림 센트럼) 101동 201~2801, 202~2802
		2	521-2(다사역 금호어울림 센트럼) 101동 203~3503, 204~3504
		3	521-2(다사역 금호어울림 센트럼) 102동 201~3601, 202~3602
		4	521-2(다사역 금호어울림 센트럼) 102동 203~3603, 204~3604)
		5	521-2(다사역 금호어울림 센트럼) 103동 201~2701, 202~2702
		6	521-2(다사역 금호어울림 센트럼) 104동 201~1501, 202~1502, 203~1503)
		7	521-2(다사역 금호어울림 센트럼) 104동 1601~2901, 1602~2902, 1603~2903)
		8	521-2(다사역 금호어울림 센트럼) 104동 204~3604, 205~3605
		9	521-2(다사역 금호어울림 센트럼) 105동 201~3501, 202~3502
		10	521-2(다사역 금호어울림 센트럼) 105동 203~3503, 204~3504
		11	521-2(다사역 금호어울림 센트럼) 106동 301~2901, 102~2902
		12	521-2(다사역 금호어울림 센트럼) 106동 303~1803, 104~1804, 105~1805)
		13	521-2(다사역 금호어울림 센트럴) 106동 1903~3503, 1904~3504, 1905~3505)
		14	521-2(다사역 금호어울림 센트럴) 107동 201~2701, 202~2702
		15	521-2(다사역 금호어울림 센트럴) 107동 203~2703, 204~2704
		16	521-2(다사역 금호어울림 센트럴 오피스텔) 108동 101~2601, 202~2602, 203~2603)

별표3 중 하빈면 하산2리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읍 면	리	반	구 역
하빈면	하산2리	제 1 반	571-1, 574~634, 652-1~654, 660-1~669, 671~674-2, 695-2, 700-1, 704-4, 749~829
		2	19~30, 32, 38~41, 81~88, 412~436, 439, 502-1~570, 572~573, 635~648-4, 655-1~659, 696-4~699-14

별표3 중 하빈면 하산2리란 다음에 하산3리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읍 면	리	반	구 역
하빈면	하산3리	제 1 반	1~15, 31, 33~37, 42~80, 89~411, 437~438, 411~498, 650, 670, 676~694, 701~704, 864~877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별표2】

이 장 정 수

현 행				개 정 안			
읍 면	법정리명	이장 정수	행정리명	읍 면	법정리명	이장 정수	행정리명
화원읍	천내리	18	천내1리	화원읍	천내리	18	천내1리
			천내2리				천내2리
			천내3리				천내3리
			천내4리				천내4리
			천내5리				천내5리
			천내6리				천내6리
			천내7리				천내7리
			천내8리				천내8리
			천내9리				천내9리
			천내10리				천내10리
			천내11리				천내11리
			천내12리				천내12리
			천내13리				천내13리
			천내14리				천내14리
			천내15리				천내15리
			천내16리				천내16리
			천내17리				천내17리
			천내18리				천내18리
	구라리	9	구라1리		구라리	9	구라1리
			구라2리				구라2리
			구라3리				구라3리
			구라4리				구라4리
			구라5리				구라5리
			구라6리				구라6리
			구라7리				구라7리
			구라8리				구라8리
			구라9리				구라9리
	성산리	6	성산1리		성산리	6	성산1리
			성산2리				성산2리

			성산3리				성산3리
			성산4리				성산4리
			성산5리				성산5리
			성산6리				성산6리
	설화리	3	설화1리		설화리	4	설화1리
			선화2리				선화2리
			설화3리				설화3리
							설화4리
	명곡리	7	명곡1리		명곡리	7	명곡1리
			명곡2리				명곡2리
			명곡3리				명곡3리
			명곡4리				명곡4리
			명곡5리				명곡5리
			명곡6리				명곡6리
			명곡7리				명곡7리
	본리리	6	본리1리		본리리	6	본리1리
			본리2리				본리2리
			본리3리				본리3리
			본리4리				본리4리
			본리5리				본리5리
			본리6리				본리6리
화원읍 소계	6	49	49	화원읍 소계	**6**	**50**	**50**

현 행				개 정 안			
읍 면	법정리명	이장 정수	행정리명	읍 면	법정리명	이장 정수	행정리명
다사읍	이천리	1	이천리	다사읍	이천리	1	이천리
	달천리	1	달천리		달천리	1	달천리
	박곡리	1	박곡리		박곡리	1	박곡리
	방천리	1	방천리		방천리	1	방천리
	서재리	14	서재1리		서재리	14	서재1리
			서재2리				서재2리
			서재3리				서재3리
			서재4리				서재4리
			서재5리				서재5리
			서재6리				서재6리
			서재7리				서재7리
			서재8리				서재8리
			서재9리				서재9리
			서재10리				서재10리
			서재11리				서재11리
			서재12리				서재12리
			서재13리				서재13리
			서재14리				서재14리
	세천리	9	세천1리		세천리	9	세천1리
			세천2리				세천2리
			세천3리				세천3리
			세천4리				세천4리
			세천5리				세천5리
			세천6리				세천6리
			세천7리				세천7리
			세천8리				세천8리
			세천9리				세천9리
	죽곡리	13	죽곡1리		죽곡리	13	죽곡1리
			죽곡2리				죽곡2리
			죽곡3리				죽곡3리
			죽곡4리				죽곡4리
			죽곡5리				죽곡5리
			죽곡6리				죽곡6리
			죽곡7리				죽곡7리

			죽곡8리				죽곡8리
			죽곡9리				죽곡9리
			죽곡10리				죽곡10리
			죽곡11리				죽곡11리
			죽곡12리				죽곡12리
			죽곡13리				죽곡13리
	매곡리	21	매곡1리		매곡리	**22**	매곡1리
			매곡2리				매곡2리
			매곡3리				매곡3리
			매곡4리				매곡4리
			매곡5리				매곡5리
			매곡6리				매곡6리
			매곡7리				매곡7리
			매곡8리				매곡8리
			매곡9리				매곡9리
			매곡10리				매곡10리
			매곡11리				매곡11리
			매곡12리				매곡12리
			매곡13리				매곡13리
			매곡14리				매곡14리
			매곡15리				매곡15리
			매곡16리				매곡16리
			매곡17리				매곡17리
			매곡18리				매곡18리
			매곡19리				매곡19리
			매곡20리				매곡20리
			매곡21리				매곡21리
							매곡22리
	부곡리	1	부곡리		부곡리	1	부곡리
	문양리	2	문양1리		문양리	2	문양1리
			문양2리				문양2리
	분산리	1	분산리		분산리	1	분산리
다사읍 소계	11	65	65	다사읍 소계	11	**66**	**66**

현 행				개 정 안			
읍 면	법정리명	이장 정수	행정리명	읍 면	법정리명	이장 정수	행정리명
하빈면	하산리	2	하산1리 하산2리	하빈면	하산리	**3**	하산1리 하산2리 **하산3리**
	묘리	2	묘1리 묘2리		묘리	2	묘1리 묘2리
	기곡리	2	기곡1리 기곡2리		기곡리	2	기곡1리 기곡2리
	대평리	3	대평1리 대평2리 대평3리		대평리	3	대평1리 대평2리 대평3리
	무등리	2	무등1리 무등2리		무등리	2	무등1리 무등2리
	현내리	3	현내1리 현내2리 현내3리		현내리	3	현내1리 현내2리 현내3리
	감문리	2	감문1리 감문2리		감문리	2	감문1리 감문2리
	동곡리	2	동곡1리 동곡2리		동곡리	2	동곡1리 동곡2리
	봉촌리	2	봉촌1리 봉촌2리		봉촌리	2	봉촌1리 봉촌2리
하빈면 소계	9	20	20	하빈면 소계	**9**	**21**	**21**

【별표3】

리·반의 명칭 및 관할 구역

현 행				개 정 안		
읍 면	리	반	구 역	읍 면	리 반	구 역
화원읍	<신선>			화원읍	선화4리 제1반	778-1(선화명곡역우방아이유쉘)101동 101~601, 602~2402
					2	778-1(선화명곡역우방아이유쉘)102동 601~2701, 601~2702
					3	778-1(설화명곡역우방아이유쉘)103동 201~2901, 202~2902
					4	778-1(설화명곡역우방아이유쉘)103동 101~2801, 202~2802
					5	778-1(설화명곡역우방아이유쉘)104동 101~2801, 202~2802
					6	778-1(설화명곡역우방아이유쉘)105동 201~2901, 202~29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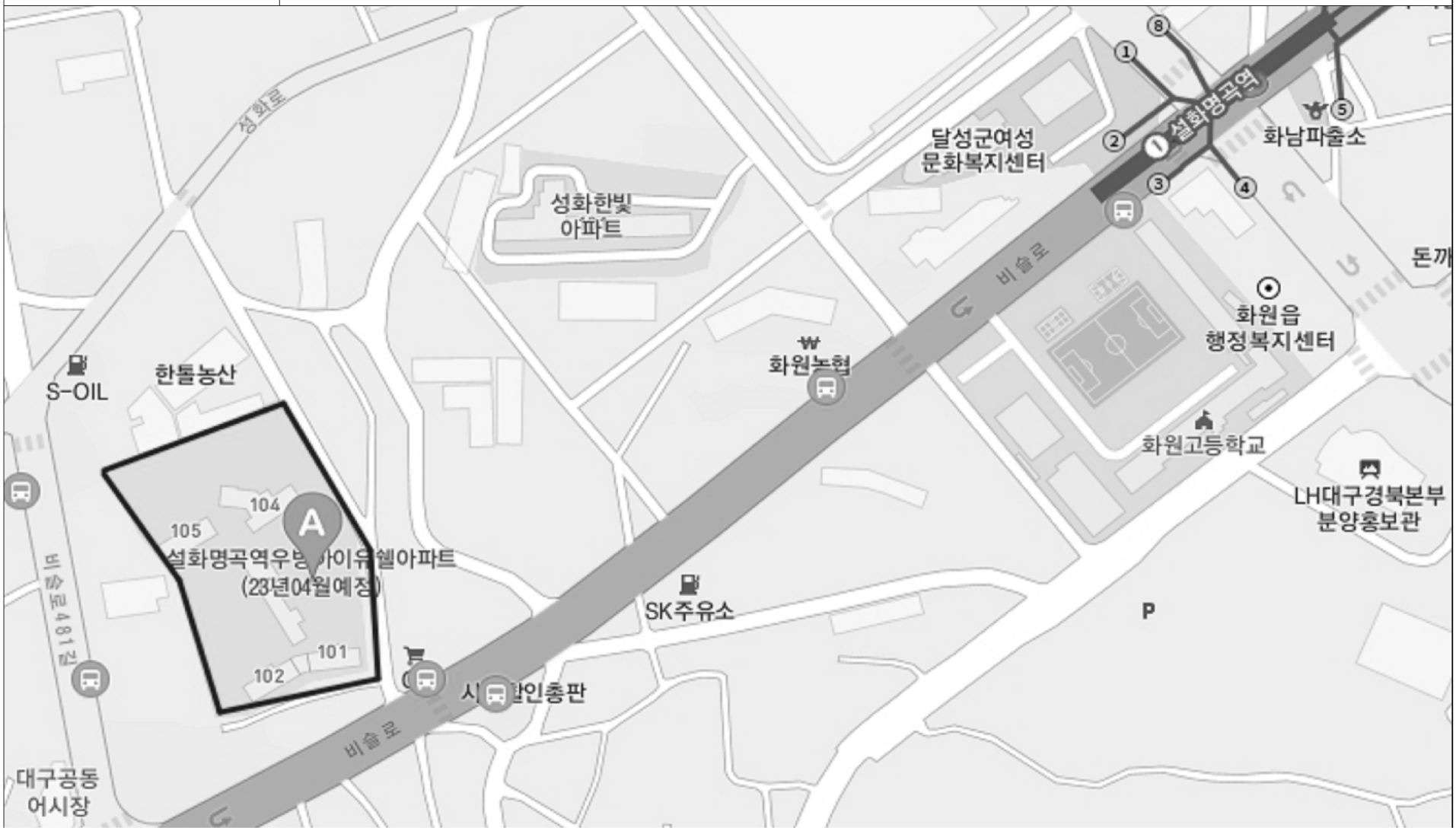
현 행				개 정 안		
읍 면	리	반	구 역	읍 면	리 반	구 역
다사읍	<신설>			다사읍	매곡22리 제1반	512-2(다사역 금호어울림 센트럴) 101동 201~2801, 202~2802
					2	512-2(다사역 금호어울림 센트럴) 101동 203~3503, 204~3504
					3	512-2(다사역 금호어울림 센트럴) 102동 201~3601, 202~3602
					4	512-2(다사역 금호어울림 센트럴) 102동 203~3603, 204~3604
					5	512-2(다사역 금호어울림 센트럴) 103동 201~2701, 202~2702
					6	512-2(다사역 금호어울림 센트럴) 104동 201~1501, 202~1502, 203~1503
					7	512-2(다사역 금호어울림 센트럴) 104동 1601~2901, 1602~2902, 1603~2903
					8	512-2(다사역 금호어울림 센트럴) 104동 204~3604, 205~3605
					9	512-2(다사역 금호어울림 센트럴) 105동 201~3501, 202~3502
					10	512-2(다사역 금호어울림 센트럴) 105동 203~3503, 204~3504
					11	512-2(다사역 금호어울림 센트럴) 106동 301~2901, 102~2902
					12	512-2(다사역 금호어울림 센트럴) 106동 303~1803, 104~1804, 105~1805
					13	512-2(다사역 금호어울림 센트럴) 106동 1903~3503, 1904~3504, 1905~3505
					14	512-2(다사역 금호어울림 센트럴) 107동 201~2701, 202~2702

					15	512-2(다사역 금호어울림 센트럴) 107동 203~2703, 204~2704
					16	512-2(다사역 금호어울림 센트럴 오피스텔) 108동 101~2601, 202~2602, 203~2603

현 행				개 정 안		
읍 면	리	반	구 역	읍 면	리 반	구 역
하빈면	하신2리	제1반	575~624	하빈면	하신2리 제1반	571-1, 574~634, 652-1~654, 660-1~669, 671~674-2, 695-2, 700-1, 704-4~710-4, 749~829
		2	400~573		2	16~30, 32, 38~41, 81~88, 412~436, 439, 502-1~570, 572~573, 635~648-4, 655-1~659, 696-4~699-14
		3	79~279			
	<신설>				하신3리 제1반	1~15, 31, 33~37, 42~80, 89~411, 437~438, 441~498, 650, 670, 676~694, 701~704, 735~748, 864~877

참고	행정구역 조정 지역 위치도

행정리 분리	설화4리



행정리 분리	매곡22리


매곡22리
(예정)
다사역로
다사로
대구2호선
CU
GS25
대구다사주공
2단지아파트
다사주공
1단지아파트
스피드메이트
다사근린공원
파리바게뜨
달성문화센터
105
108
107
106
103
104
102
101
202
201
205

분 할 및 신설	하산2리, 하산3리



참고 **상위 및 관계 법령**

□ 지방자치법

제7조(자치구가 아닌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 ② 리의 구역은 자연 촌락을 기준으로 하되, 그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명칭과 구역을 변경하거나 리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④ 동·리에서는 행정 능률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나의 동·리를 2개 이상의 동·리로 운영하거나 2개 이상의 동·리를 하나의 동·리로 운영하는 등 행정 운영상 동·리(이하 "행정동·리"라 한다)를 따로 둘 수 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 출 일: 2023년 4월 5일

2. 제 출 자: 달성군수

3. 제안사유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법률」 제16조의 2(지원금의 관리 등)가 개정(2022.11.15.)되어 지원사업 시행자의 특별회계 의무 설치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이에 관한 내용을 반영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용어 정의(안 제1조 ~ 제2조)

○ 특별회계의 설치, 세입 및 세출에 관한 규정(안 제3조~제4조)

○ 사업비의 이월 및 전용의 금지 사항을 규정(안 제5조 ~ 제7조)

5. 관계법령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지방재정법」

6.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의 개정으로 지원사업 시행자의 특별회계 의무 설치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조례안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붙임 1. 조례안 1부.
2. 관계법령 1부. 끝.

대구광역시 달성군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달성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변지역“이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2. “지원사업” 이란 법 제10조에 따라 시행하는 기본지원사업과 특별지원사업을 말한다.
3. “전력산업기반기금” 이란 「전기사업법」 제48조에 따라 정부가 전력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전력산업의 기반조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치한 기금을 말한다.
4. “지원금” 이란 법 제13조에 따라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원사업을 위하여 지원되는 금액을 말한다.

제3조(특별회계의 설치)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 제16조의2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 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용한다.

제4조(세입 및 세출) 특별회계의 세입은 법 제13조에 따른 지원금 및 그 밖의 수입으로 하고, 세출은 법 제14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 및 부대경비 등으로 한다.

제5조(이월사용) 제4조에 따른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해당 회계연도에 사용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원금은 법 제16조에 따라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6조(전용의 금지) 특별회계의 예산은 다른 용도로의 사용을 목적으로 다른 회계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없다.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참고 **상위 및 관계법령**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주변지역"이란 「전기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발전사업자(이하 "발전사업자"라 한다)가 가동·건설 중이거나 건설할 예정인 발전소{「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목적댐 발전소와 발전원(發電源)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용량 이하의 발전소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발전기가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될 지점으로부터 반지름 5킬로미터 이내의 육지 및 섬 지역이 속하는 읍·면·동의 지역을 말한다.

제10조(지원사업의 종류 등) ① 지원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지원사업: 주변지역의 개발과 주민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지원사업
2. 특별지원사업: 발전소가 건설 중이거나 건설이 예정된 주변지역과 그 특별자치도·시·군 및 자치구(이하 "지방자치단체"라 한다)지역에 대하여 시행하는 지원사업
3. 홍보사업 : 전력사업(電力事業)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
4. 그 밖에 주변지역의 발전, 환경·안전관리와 전원 개발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조사·연구 활동을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종류별 지원내용, 대상 지역, 시행 기간, 지원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지원사업의 시행자) 지원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한다.

1.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2. 발전사업자
3. 원자력에 관한 홍보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

제13조(재원과 지원금의 결정) ① 지원사업에 드는 비용은 「전기사업법」 제48조에 따른 전력산업기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 부담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기금에서 지원사업을 위하여 지원되는 금액(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의 결정기준은 발전소의 종류·규모·발전량과 주변지역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5년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지원금의 사용) ① 지원금은 제10조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변지역에 사용한다. 다만,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이나 지역의 균형 있는 발전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주변지역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주변지역 외의 지역에 대하여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되는 사업의 종류와 지원금의 한도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둘 이상이면 그 지역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면적비율, 인구비율, 발전소로부터의 거리, 소재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금을 사용한다. 다만, 그 지역의 특수성에 비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

제16조(지원금의 조기 사용 등) 지원사업의 시행자는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금을 앞당겨 사용하거나 이월(移越)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제15조제2항에 따라 지원사업을 우선 시행하는 경우
2.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해당 지역의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과 협의하여 지원금을 앞당겨 사용하거나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6조의2(지원금의 관리 등) ① 제11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시행자는 지원금을 받으면 다른 예산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1조제1호에 따른 지원사업의 시행자는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지원금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관리로 발생한 이자는 매 회계연도 결산 후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한다.

□ 지방재정법

제9조(회계의 구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이나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 · 세출로서 일반세입 · 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법률이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목적세에 따른 세입 · 세출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회계를 설치 · 운용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 · 운용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회계를 신설하거나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해당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 · 운용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 출 일: 2023년 4월 5일

2. 제 출 자: 달성군수

3. 제안사유

○ 노인복지관 이용료 및 사용료 금액을 조례로 명시하지 않고 변경이 필요할 경우 내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군수에게 건의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변경하여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이용료 및 사용료를 내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군수에게 변경을 건의할 수 있도록 신설(안 제11조 제2항)

○ 시설이용료, 강당사용료 삭제[별표 1, 2]

5. 관계법령

○ 「사회복지사업법」

6.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노인복지관 이용료 및 사용료 금액을 변경이 필요할 경우 내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군수에게 건의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변경하여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안 개정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붙임 1. 조례안 1부.
2. 관계법령 1부. 끝.

대구광역시 달성군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달성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자는 별표1에 의한 이용료를” 을 “사람은 군수가 정하는 이용료를” 로 한다.

제6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자는 별표2의 사용료를” 을 “사람은 군수가 정하는 사용료를” 로 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자체운영규정 등) ① 수탁자는 이 조례가 정하는 사항의 범위에서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자체운영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제6조제1항에 따른 이용료 및 제6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사용료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에 따른 복지관 내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군수에게 그 금액의 변경을 건의할 수 있다.

별표1 및 별표2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이용료 및 사용료)①제5조제1항에 따라 복지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에 의한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이용료 및 사용료)① ----------**사람은 군수가 정하는 이용료**를----------.
② ~ ③ (생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④제5조제3항에 따라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2의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다.	④ ----------**사람은 군수가 정하는 사용료**를----------.
1.~ 3. (생략)	1.~ 3. (현행과 같음)
제11조**(자체운영규정)수탁기관은 조례의 범위 내에서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운영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여야 한다.	제 11조**(자체운영규정 등)① 수탁자는 이 조례가 정하는 사항의 범위에서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자체운영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
<신설>	**② 수탁자는 제6조제1항에 따른 이용료 및 제6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사용료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에 따른 복지관 내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군수에게 그 금액의 변경을 건의할 수 있다.**

[별표 1] 시설이용료(제6조제1항 관련) <삭제>

시설이용료(제6조제1항 관련)

구 분	운영기준	이용료(원)		비 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일 반	
1 회 당	1회	무료	1,300	

[별표 2] 강당사용료(제6조제4항 관련)

강당사용료(제6조제4항 관련)

구 분	기 준	이용료(원)	비 고
대강당	•주간 1회/2시간 이내 (주간 : 09:00~18:00)	30,000원	•야간 및 토·일요일, 공휴일은 주간사용료의 20% 가산 •2시간 초과시는 시간당 10,000원 가산

참고 상위 및 관계법령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1. 8. 4.>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시설의 설치·운영 신고를 할 수 없다. <개정 2011. 8. 4., 2012. 1. 26., 2016. 2. 3., 2017. 10. 24.>

1. 제40조에 따라 폐쇄명령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부터 제1호의8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그 개인이 임원인 법인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 15.>

④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무·회계에 관한 기준에 따라 시설을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1. 8. 4., 2019. 1. 15.>

⑤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 8. 4., 2012. 1. 26., 2019. 1. 15.>

⑥ 제5항에 따른 위탁운영의 기준·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8. 4., 2012. 1. 26., 2019. 1. 15.>

제36조(운영위원회) ① 시설의 장은 시설의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설에 운영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복수의 시설에 공동으로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2. 1. 26.>

1. 시설운영계획의 수립·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개발·평가에 관한 사항
3. 시설 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4. 시설 거주자의 생활환경 개선 및 고충 처리 등에 관한 사항
5. 시설 종사자와 거주자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에 관한 사항
6. 시설과 지역사회의 협력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설의 장이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신설 2012. 1. 26.>

1. 시설의 장
2. 시설 거주자 대표

3. 시설 거주자의 보호자 대표
4. 시설 종사자의 대표
5. 해당 시·군·구 소속의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6. 후원자 대표 또는 지역주민
7.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8. 그 밖에 시설의 운영 또는 사회복지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시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1항에 따른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2. 1. 26.>

1. 시설의 회계 및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2. 후원금 조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설운영과 관련된 사건·사고에 관한 사항

④ 그 밖에 운영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 1. 26.>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출연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1. 제 출 일: 2023년 4월 5일

2. 제 출 자: 달성군수

3. 제안사유

○ 코로나19의 여파와 시중은행의 대출금리 인상으로 인하여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원활한 자금 융통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구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 기본재원 조성에 필요한 출연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4. 주요내용

○ 사업개요

- 사 업 명 :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 출연대상 : 대구신용보증재단
- 사업기간 : 2023. 5. ~ 자금 소진 시
- 출연금액 : 10억 원(출연 시 보증 규모 100억 원)
- 내 용
 -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경기침체와 대출금리 인상에 따라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경영난 극복을 위하여 대구신용보증재단에 특례보증을 위한 보증재원 출연

○ **추진경과**

- 「대구광역시 달성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 2022. 10.

○ **향후 추진계획**

-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계획 수립 : 2023. 4.
- 신용보증재단, 금융기관과 3자협약 체결 및 사업시행 : 2023. 5.

5.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지역신용보증재단법」
「대구광역시 달성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6.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경기침체와 대출금리 급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들에게 원활한 자금융통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구신용보증재단에 출연금을 지급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군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한 사안으로

○ 출연금의 주요내용은 대구신용보증재단, 금융기관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대구신용보증재단에 10억 원을 출연하게 되면 최대 100억 원에 대해 대구신용보증재단에서 소상공인에게 특례보증서를 발급해 줌으로 소상공인들이 금융기관으로부터 경영자금 대출을 원활하게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출연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붙임 1. 출연 심의요구서 1부.
2. 출연기관 현황 1부.
3. 관계법령 1부. 끝.

출연 심의요구서

<table>
<tr><td>출연
대상</td><td>○ 기 관 명 : 대구신용보증재단
○ 대 표 : 황 병 욱
○ 일반현황 :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1568, 4층</td></tr>
<tr><td>출연
사업비</td><td>○ 출연 예정금액 : 1,000백만 원(균비)
○ 예산편성 요구 예정사항
(단위:백만원)
<table>
<tr><th>구 분</th><th>사업기간</th><th>예산액</th><th>2023
요구액</th><th>2022
요구액</th></tr>
<tr><td>합 계</td><td>-</td><td>1,000</td><td>1,000</td><td>-</td></tr>
<tr><td>기본재산</td><td>-</td><td>1,000</td><td>1,000</td><td>-</td></tr>
</table>
※ 출연금은 대구신용보증재단의 기본재원으로 조성</td></tr>
<tr><td>출연
필요성</td><td>○ 지속적인 경기침체와 고금리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들의 경영난 극복을 위하여 대구신용보증재단의 특례보증을 통한 자금융통 지원 필요</td></tr>
<tr><td>근거
법령</td><td>○「지방재정법」 제18조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td></tr>
<tr><td>사업
부서
의견
(총평)</td><td>○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특례보증 지원을 통해 경영안정자금 대출을 원활하게 받을 수 있도록 대구신용보증재단에 1,000백만원의 출연이 필요할 것이라 사료됨</td></tr>
</table>

출연기관 현황

<table>
<tr><td>기관명</td><td colspan="5">대구신용보증재단</td><td colspan="4">전화번호 : 053-360-6300
홈페이지 : www.ttg.co.kr</td></tr>
<tr><td>소재지</td><td colspan="9">대구광역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1568, 4층</td></tr>
<tr><td>설립근거

설립일자</td><td colspan="9">○ 법　　률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 시 행 령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 조　　례 : 대구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설립일자 : 1996.11.7.</td></tr>
<tr><td>조직인력</td><td colspan="9">○ 2본부 3부 7영업점 2신 1센터 / 101명</td></tr>
<tr><td>주요기능</td><td colspan="9">○ 신용보증
○ 신용조사 및 신용정보관리
○ 소기업·소상공인 교육 및 컨설팅
○ 구상권의 행사
○ 기본재산 관리
○ 국가, 공공기관 등이 위탁하는 사업 중 소기업 등 지원 또는 그에 부수되는 사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대구광역시장의 승인을 받은 사업</td></tr>
<tr><td rowspan="3">보증현황
(건, 백만원)</td><td colspan="2">총보증공급(누적, '22.12.31.)</td><td colspan="2">보증잔액('22.12.31.)</td><td colspan="2">2022년 보증공급('22.12.31.)</td></tr>
<tr><td>건수</td><td>금액</td><td>건수</td><td>금액</td><td>건수</td><td>금액</td></tr>
<tr><td>523,954</td><td>13,266,976</td><td>128,846</td><td>2,373691</td><td>69,852</td><td>1,534,952</td></tr>
<tr><td rowspan="3">기본재산
(백만원)</td><td rowspan="2">총
기본재산
('22.12.31)</td><td colspan="4">설립당시 기본재산</td><td colspan="4">증감 기본재산</td><td rowspan="2">자치단체출연
기본재산
(기초포함)</td></tr>
<tr><td>소계</td><td>시</td><td>정부</td><td>기타</td><td>소계</td><td>시</td><td>구군청</td><td>정부</td><td>기타</td></tr>
<tr><td>398,002</td><td>51,427</td><td>25,000</td><td>10,500</td><td>15,927</td><td>346,575</td><td>129,543</td><td>2,880</td><td>69,397</td><td>144,755</td><td>157,424
(39.5%)</td></tr>
<tr><td rowspan="3">재무현황
('22.12.31.)</td><td colspan="3">자산</td><td colspan="3">부채</td><td colspan="3">자본</td></tr>
<tr><td>계</td><td>유동자산</td><td>비유동자산</td><td>계</td><td>유동부채</td><td>비유동부채</td><td colspan="3"></td></tr>
<tr><td>325,810</td><td>223,063</td><td>102,747</td><td>73,902</td><td>35,499</td><td>38,403</td><td colspan="3">251,908</td></tr>
</table>

참고 **상위 및 관계 법령**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 5. 28.>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신설 2014. 5. 28.>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4. 5. 28.>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기본재산)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2. 금융회사등의 출연금
3. 기업의 출연금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의 자의 출연금[전문개정 2011. 4. 14.]

□ 대구광역시 달성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특례보증 지원) ① 군수는 소상공인이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경영안정자금에 대한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특례보증 한도는 소상공인별 5천만원 이내로 한다.

③ 군수는 특례보증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보증재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신용보증기관은 협약을 성실히 이행 하여야 한다.

⑤ 특례보증에 대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2023년도 (재)달성문화재단 출연금 출연 변경 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1. 제 출 일: 2023년 4월 5일

2. 제 출 자: 달성군수

3. 제안이유

○ 2023년도 대구광역시 달성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미리 대구광역시 달성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4. 주요내용

○ (재)달성문화재단 운영비 출연 변경 : **225백만 원 증**

- (당초) 금3,643백만 원 → (변경) 금3,868백만 원

○ 기관운영비(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출연 : **변동 없음**

- (당초) 금1,178백만 원

○ 자체사업비 출연 변경 : **225백만 원 증**

- (당초) 금2,465백만 원 → (변경) 금2,690백만 원

 · 달성 100대 피아노(100백만 원 증) : 대구시 '2023년 우수지역 축제 발굴 지원사업' 선정에 따른 시비 매칭

 · 달성 대구현대미술제(300백만 원 증) : 사업확장 및 콘텐츠 다양화에 따른 사업비 증액 출연

 · 참꽃갤러리 운영(25백만 원 증) : 운영주체 변경에 따른(군 → 달성문화재단) 운영비 증액 출연

 · 문화도시사업(200백만 원 감) : 제4차 법정문화도시 지정에 따라 신규예산 편성 후 기편성 출연금 감액

5.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 문화예술진흥법

○ 대구광역시 달성군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6. 검토의견

○ 본 건은 2023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달성군의회의 의결을 구하는 사안으로 출연금 변경내용은 달성문화재단 운영비 당초 36억4천3백만 원에서 자체사업비 2억2천5백만 원을 증액 출연하여 38억6천8백만으로 변경하고자 함입니다.

세부내용은 달성 100대 피아노 사업이 대구시 2023년 우수지역 축제 발굴 지원사업 선정됨에 따라 시보조금 1억 원을 증액 출연하고, 대구현대미술제의 사업 확장 및 콘텐츠 다양화 추진을 위한 사업비 3억 원을 증액 출연하며, 참꽃갤러리 운영주체를 달성문화재단으로 변경함에 따른 운영비 2천5백만 원을 증액 출연하는 내용과 제4차 법정문화도시 지정에 따라 기편성 한 출연금 2억 원을 감액하는 내용입니다.

'예술의 향기가 흐르는 문화관광도시' 군정 핵심 목표를 위해 달성의 대표적인 문화예술 사업의 질적·양적 다양화와 군민을 위한 문화 향유 기회 확대는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라도 생각되며,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달성문화재단의 출연금 변경 계획안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붙임 1. 출연 심의요구서 1부.

2. 사업부서 검토의견서 1부.

3. 출연기관 현황 1부. 끝.

출연 심의요구서

출연 대상

○ 기 관 명 : (재)달성문화재단
○ 대 표 : 최 재 훈
○ 일반현황 : 대구 달성군 화원읍 성천로 5, 7~8층
○ 추가 출연 금액 : 225백만 원(군 125, 시 100)
○ 예산편성 요구 예정사항

(단위 : 백만원)

출연 사업비

구 분	사업 기간	2023 당초 예산액	2023 1회 추경 요구액	재원별				
				계	국비	시비	군비	기타
합 계		3,643	225	3,868	-	100	3,768	-
인력운영비	1~12월	794	-	794	-	-	794	-
기본경비	1~12월	384	-	384	-	-	384	-
달성 100대 피아노	9월	450	100	550	-	100	450	-
달성 대구현대미술제	9월	430	300	730	-	-	730	-
달천예술창작공간 운영	1~12월	200	-	200	-	-	200	-
하빈행복생활문화 센터 운영	1~12월	125	-	125	-	-	125	-
예술자치구역	1~12월	150	-	150	-	-	150	-
달성군립합창단 운영	1~12월	120	-	120	-	-	120	-
달성 스토리텔링	1~12월	120	-	120	-	-	120	-
YES! 키즈존	5월, 10월	290	-	290	-	-	290	-
문화기획지원	1~12월	180	-	180	-	-	180	-
문화도시사업	1~12월	200	-200	-	-	-	-	-
달성문화교차로	1~12월	200	-	200	-	-	200	-
참꽃갤러리 운영	7~12월	-	25	25	-	-	25	-

출 연

○ 지역의 문화예술진흥과 문화복지 증진, 문화기반시설의 전문적

필요성	운영을 위해 달성문화재단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 지원 ○ 타지역과 차별화된 문화예술 사업추진으로 달성의 문화위상을 제고
근거법령	○ 대구광역시 달성군 달성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11조(운영재원 등)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군의 출연금과 보조금, 재단사업 수입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시책과 권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국민의 문화예술활동을 권장, 보호, 육성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사업부서의견(총평)	○ 지역의 주요 문화자원 발굴을 통한 자산가치 증대 ○ 문화예술 중심도시 브랜드 가치 창출 ○ 각종 신규사업 발굴 및 계속사업의 창조적 발전에 기여

사업부서 검토의견서

1. 경영평가 및 외부기관 지적사항

○ 경영평가(한국산업관계연구원, '22. 3.. ~ '22. 6.)

- 2022년(2021년 실적) 경영실적 평가결과 : A등급(90.61점)

평가분야	평가배점(%)	평가점수	비고
지속가능경영	30	27.32	• 리더십 지표 • 전략 지표 • 운영 적절성 지표 • 인사·조직 지표 • 재무관리 지표 • 예산관리 지표
경영성과	40	36.43	• 사업지표 • 사업성과 적절성 지표 • 고객만족 지표
사회적가치	30	26.86	• 일자리 확대 지표 • 사회적 책임 지표
총 점	100	90.61	

2. 출연금 예산요구액 부서 의견

○ 2023년 자체사업비 출연금 225백만 원 추가 출연으로 재단 운영 및 목적사업 수행

- 425백만 원 증액(달성 100대 피아노 100, 달성 대구현대미술제 300, 참꽃갤러리 운영 25)
- 200백만 원 감액(문화도시사업 200)

3. 출연금 검토 상세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3년 예산액 <당초> (A)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재단 요구액	부서 검토액 (B)	증감액 (B-A)
총 계	3,643	3,868	3,868	225
기관운영비	1,178	1,178	1,178	-
인력운영비	794	794	794	-
기본경비	384	384	384	-
자체사업비	2,465	2,690	2,690	225
달성 100대 피아노	450	550	550	100
달성 대구현대미술제	430	730	730	300
달천예술창작공간운영	200	200	200	-
하빈행복생활문화센터 운영	125	125	125	-
예술자치구역	150	150	150	-
달성군립합창단 운영	120	120	120	-
달성 스토리텔링	120	120	120	-
YES! 키즈존	290	290	290	-
문화기획지원	180	180	180	-
문화도시사업	200	-	-	△200
달성문화교차로	200	200	200	-
참꽃갤러리 운영	-	25	25	25

출연기관 현황

기 관 명	(재)달성문화재단	전화번호	053-668-4230
		홈페이지	www.dsart.or.kr
설립근거	민법제32조,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달성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달성군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주요연혁	2011. 5. 17. 등기		

임원 (23.3.1. 현재)	직책	성명	주요경력	임기
	이사장	최재훈	달성군수	재임기간
	대표이사	박병구	대구미술협회장	2022.8.23.~2024.8.22
	비상임이사	김철식	달성군청 참꽃갤러리 관장	2022.8.23.~2024.8.22
	비상임이사	도원길	농업경영인 달성군 연합회 군감사	2022.8.23.~2024.8.22
	비상임이사	방성백	대구음악협회장	2022.8.23.~2024.8.22
	비상임이사	정대용	경산시립예술단무장	2022.8.23.~2024.8.22
	비상임이사	허수정	CM코리아 공연기획 대표	2022.8.23.~2024.8.22
	비상임이사	방호현	달성군 정책관광국장	재임기간
	감사	도창곤	한경회계법인 전무이사	2022.8.23.~2024.8.22
	감사	윤태영	달성군 문화체육과장	재임기간

주요기능	○ 문화예술의 창작, 보급 및 예술활동 지원 ○ 문화예술 행사의 개발과 개최 ○ 도서관 운영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 문화행사 및 평생교육 관련 행사의 기획 및 운영

최근3년간 예산현황 (백만원)	연 도	2020년	2021년	2022년	재무현황 2022.12.31 기준	자산	8,706백만원
	예산액	6,692	7,020	7,070		부채	1,412백만원
	지자체 지원액	5,508	4,849	4,553		자본	7,294백만원

1. 예산액은 해당 기관의 매 회계연도별 확정된 예산액
2. 지자체 지원액은 해당 기관 예산액중 지자체가 보조한 금액(출연금, 민간위탁금 등)

참고 **관계 법령(발췌)**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시책과 권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국민의 문화예술활동을 권장, 보호, 육성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5조(기본재산 및 재정지원)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달성군(이하 "군" 이라 한다.)의 출연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② 군은 재단의 설립과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재원 등)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군의 출연금과 보조금, 재단사업 수입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일**: 2023년 4월 5일

2. **제출자**: 달성군수

3. **제안사유**

○ 국가 정책기조에 맞추어 당면한 민생·경제 어려움 극복지원과 함께 공약사업 및 시급한 현안사업의 적기 추진을 위한 부족사업비를 계상하여 침체된 지역경제 활력 제고하자 함.

4. **추가경정예산 개요**

1) 회계별 예산규모

(단위: 백만 원)

회 계 별		추경예산액	기정예산액	증 감
총 계		933,270	880,000	53,270
일 반 회 계		932,000	878,600	53,400
특 별 회 계		1,270	1,400	130
	의료급여기금	712	841	129
	치 수 사 업	558	559	1

2) 회계별 세입총괄

(단위: 백만 원)

구분	장관별	추경 예산액	기정 예산액	증감	증감율 (%)
총계		933,270	880,000	53,270	6.05
일반회계	계	932,000	878,600	53,400	6.08
	지방세수입	218,549	218,321	228	0.10
	세외수입	40,384	38,867	1,517	3.90
	경상적세외수입	25,125	25,105	19	0.08
	임시적세외수입	8,880	7,392	1,487	20.12
	지방행정제재·부과금	6,379	6,369	10	0.16
	지방교부세	189,497	168,575	20,923	12.41
	조정교부금등	43,179	31,014	12,165	39.23
	보조금	419,547	417,309	2,238	0.54
	국고보조금등	278,765	273,321	5,444	1.99
	시도비보조금등	140,781	143,988	△3,206	△2.23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20,844	4,515	16,329	361.67
특별회계	계	1,270	1,400	△130	△9.29
	세외수입	34	190	△157	△82.23
	경상적 세외수입	4	2	2	73.93
	임시적 세외수입	30	188	△158	△84.00
	보조금	634	598	36	6.00
	국고보조금등	507	478	29	6.00
	시도비보조금등	127	120	7	6.00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602	612	△9	△3.64

3) 회계별 세출총괄

• 기능별

(단위: 백만 원)

구분	분 야 별	추 경 예산액	기 정 예산액	증 감	증감율 (%)
총 계		933,270	880,000	53,270	6.05
일반회계	계	932,000	878,600	53,400	6.08
	일반공공행정	54,992	52,711	2,282	4.33
	공공질서및안전	6,780	6,131	649	10.59
	교육	16,785	12,973	3,812	29.39
	문화및관광	58,854	43,463	15,390	35.41
	환경	28,527	28,267	260	0.92
	사회복지	391,027	388,430	2,596	0.67
	보건	26,517	26,035	482	1.85
	농림해양수산	67,261	57,835	9,426	16.30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5,278	2,901	2,377	81.95
	교통및물류	84,135	67,672	16,464	24.33
	국토 및 지역개발	67,925	68,382	△456	△0.67
	예비비	11,506	20,128	△8,622	△42.84
	기타	112,413	103,674	8,740	8.43
특별회계	계	1,270	1,400	△130	△9.29
	사회복지	633	598	35	6.00
	국토 및 지역개발	265	265	-	0.19
	기타	370	536	△165	△30.85

• 조직별

(단위: 백만 원)

구분	분야별	추경 예산액	기정 예산액	증감	증감율 (%)
총계		933,270	880,000	53,270	6.05
일반회계	계	932,000	878,600	53,400	6.08
	본청	848,709	797,036	51,673	6.48
	기획예산실	31,932	39,643	△7,711	△19.45
	법무감사실	384	375	10	2.63
	정책추진단	9,568	1,033	8,536	826.69
	자치행정국	89,515	88,612	903	1.02
	자치행정과	65,567	65,137	430	0.66
	세무과	564	509	56	10.92
	징수과	627	564	63	11.23
	회계과	13,351	13,074	277	2.12
	종합민원과	802	791	11	1.44
	정보통신과	8,604	8,538	66	0.77
	경제환경국	89,661	81,394	8,267	10.16
	일자리경제과	10,486	7,788	2,699	34.65
	교통과	20,669	19,826	843	4.25
	환경과	3,960	3,748	213	5.67
	농업정책과	27,656	23,883	3,773	15.80
	청소위생과	26,889	26,149	740	2.83
	교육복지국	410,822	397,901	12,921	3.25
	교육정책과	123,832	121,268	2,564	2.11
	복지정책과	143,831	140,602	3,230	2.30
	생활보장과	58,051	56,447	1,604	2.84
	희망지원과	85,107	79,584	5,523	6.94

구분	분야별	추경 예산액	기정 예산액	증감	증감율 (%)
일반회계	건설도시국	134,769	113,823	20,946	18.40
	건설과	64,406	48,609	15,797	32.50
	안전총괄과	29,807	30,937	△1,130	△3.65
	도시계획과	14,677	13,147	1,530	11.64
	도시정비과	22,901	18,190	4,712	25.90
	건축과	1,221	1,219	2	0.14
	토지정보과	1,759	1,722	36	2.11
	문화관광국	82,056	74,255	7,801	10.51
	문화예술과	13,832	11,356	2,476	21.80
	체육진흥과	17,988	14,394	3,594	24.97
	관광과	17,741	16,725	1,016	6.07
	공원녹지과	32,496	31,781	715	2.25
	직속기관	40,775	40,158	617	1.54
	보건소	32,657	32,135	522	1.63
	보건과	16,084	15,816	268	1.69
	건강증진과	16,573	16,319	254	1.56
	농업기술센터(농촌지도과)	8,118	8,022	95	1.18
	의회	3,223	2,719	504	18.53
	의회사무국	3,223	2,719	504	18.53
	읍면동	39,293	38,688	605	1.56
	화원읍	6,284	6,255	29	0.46
	논공읍	4,552	4,517	35	0.77
	다사읍	6,533	6,440	92	1.43
	유가읍	4,263	4,244	18	0.43
	옥포읍	4,340	4,314	26	0.60
	현풍읍	3,872	3,863	9	0.24
	가창면	3,097	2,974	122	4.12
	하빈면	2,743	2,684	59	2.21
	구지면	3,610	3,395	214	6.31

구분	분야별	추경 예산액	기정 예산액	증감	증감율 (%)
특별회계	계	1,270	1,400	△130	△9.29
	본청	1,270	1,400	△130	△9.29
	교육복지국	711	841	△129.5	△15.40
	생활보장과	711	841	△129.5	△15.40
	건설도시국	558	558	△0.5	△0.09
	안전총괄과	558	558	△0.5	△0.09

● 성질별

(단위: 백만 원)

구분	분야별	추경 예산액	기정 예산액	증감	증감율 (%)
총계		933,270	880,000	53,270	6.05
일반회계	계	932,000	878,600	53,400	6.08
	인건비	95,300	93,357	1,944	2.08
	물건비	45,843	42,983	2,860	6.65
	경상이전	534,626	522,888	11,738	2.24
	자본지출	235,466	197,263	38,203	19.37
	시설비및부대비	208,391	172,446	35,945	20.84
	민간자본이전	11,100	11,453	△353	△3.08
	지치단체등자본이전	3,970	3,867	102	2.64
	공사공단자본전출금	1,849	1,635	214	13.09
	자산취득비	10,156	7,862	2,294	29.18
	내부거래	1,976	1,976	0	0.00
	기타회계등전출금	30	30	0	0.00
	기금전출금	1,946	1,946	0	0.00
	예비비및기타	18,788	20,133	△1,345	△6.68
	예비비	11,506	20,128	△8,622	△42.84
	반환금기타	7,282	5	7,277	153693.18
특별회계	계	1,270	1,400	△130	△9.29
	인건비	292	292	0	0.00
	물건비	40	40	0	0.00
	경상이전	613	578	35	6.21
	자본지출	90	90	0	0.00
	시설비및부대비	90	90	0	0.00
	예비비및기타	232	398	△165	△41.65
	예비비	154	155	△0.4	△0.32
	반환금기타	78	243	△165	△68.01

3)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주요사업목록

(단위: 백만 원)

부 서 명	사 업 명	기 정 예산액	추 경 예산액	증감액	비고
기획예산실	정책개발 집중관리	200	350	150	
	시설관리공단 경상전출금 (경영지원팀)	15,917	16,115	198	
	시설관리공단 자본전출금 (경영지원팀)	386	557	170	
	군정홍보 언론광고료	140	250	110	
	택시부착 군정홍보 광고료	93	160	67	
	전광판, 멀티비전 군정홍보	66	152	86	
정책추진단	전략과제사업 연구용역비	50	100	50	
	S자형 관광벨트 활성화사업 연구용역비	0	100	100	
	화원공공복합청사 리뉴얼사업 공사비	0	6,000	6,000	
	화원공공복합청사 리뉴얼사업 감리비	0	900	900	
	비슬도서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0	1,420	1,420	
자치행정과	다사 복합커뮤니티센터 지방행정연구원 타당성조사 수수료	0	150	150	
	체력단련실 운동기구 구입	0	56	56	
	공무원 역량강화 국외연수	90	178	88	
	공무국외출장 지원	80	145	65	
	직원 건강검진비(40세 이상)	62	124	62	
징수과	우편요금(일반)	112	170	58	
회계과	공용차량 보험료	0	180	180	
정보통신과	행정전화 교환기 보드 구매	0	51	51	

부 서 명	사 업 명	기 정 예산액	추 경 예산액	증감액	비고
일자리경제과	대구신용보증재단 출연금	0	1,000	1,000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지원)	0	134	134	
	스마트 팩토리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전문인력 양성사업	0	114	114	보조
	사회적경제 청년인턴 사업	131	66	-65	보조
	사회적경제 청년스타트업 지원사업 (예산성립 전 사용)	0	62	62	보조
교통과	도시가스배관 설치비용 지원	0	1,000	1,000	
	대구 제2국가산업단지 유치 기념행사	0	280	280	
	화원 본리리 마을공동주차장 확대정비	0	600	600	
	우편요금(등기)	134	200	67	
환경과	현풍 교통문화파크 조성 전산장비	0	55	55	
	용흥지 데크로드 설치	0	150	150	
	중소 대기배출사업장 연료전환 지원	102	0	-102	보조
농업정책과	가스열펌프 저감장치 설치지원사업	0	195	195	보조
	생산비 절감용 농기계 공급	548	490	-58	보조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 (예산성립 전 사용)	0	4,092	4,092	보조
	농업분야 에너지절감시설 지원	227	0	-227	보조
	ICT융복합 확산 지원	0	166	166	보조
청소위생과	장기성필름 지원	332	220	-112	보조
	환경공무직 퇴직금	360	1,080	720	

부 서 명	사 업 명	기 정 예산액	추 경 예산액	증감액	비고
교육정책과	교육문화복지센터 청사 전기요금	0	120	120	
	교육문화복지센터 청사시설물 위탁관리(기계, 청소등)	0	288	288	
	교육문화복지센터 공기제균기 구입	0	99	99	
	교육문화복지센터 카페 가구 및 집기 구입	0	50	50	
	교육문화복지센터 종합관리사무실 가구 및 집기 구입	0	95	95	
	영유아 보육료 지원	32,836	33,082	245	보조
	만3~5세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7,602	6,527	-1,076	보조
	부모급여(영아수당) 지원	19,705	17,369	-2,336	보조
	만3~5세 누리과정 담임수당 등 지원	2,238	2,003	-234	보조
	담임교사지원비	2,990	3,045	56	보조
	2023 달성군 어린이 대축제	0	150	150	
	2023 육아 토크 콘서트	0	50	50	
	달성군립도서관 운영(다사)	1,560	1,670	109	
	공공도서관 인테리어 설계 및 제작 설치	0	2,000	2,000	
	공공도서관 CCTV 설치	0	83	83	
	공공도서관 ICT 시스템 구축 (도서 바코드 전산화)	226	365	139	
	서민자녀 교육비 지원 (예산성립전 사용)	0	535	535	보조
	(재)달성교육재단 출연	0	2,062	2,062	

부 서 명	사 업 명	기 정 예산액	추 경 예산액	증감액	비고
복지정책과	국가유공자 보훈예우수당	542	1,032	489	
	참전유공자 특별위로금	0	252	252	
	노인맞춤돌봄서비스	2,607	2,887	279	보조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공익활동)	3,124	3,487	362	보조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공익활동)	5,872	4,820	-1,052	보조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사회서비스형)	2,966	3,609	642	보조
	노인일자리사업(시장형)	179	497	318	보조
	노인일자리사업(전담인력)	485	548	63	보조
	군 특화 노인일자리사업(동네방방)	0	269	269	
	경로당 운영비 지원	1,325	1,524	199	
	경로당 생활(건강)기구 지원	200	300	100	
	경로당 개보수 지원	200	400	200	
	양로시설 운영비	728	901	173	보조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운영비	1,665	1,180	-485	보조
	경증치매노인 기억학교 운영비	1,122	1,183	60	보조
	장기요양기관 환기시설 설치 지원	0	54	54	보조
	가족센터 인테리어 공사	20	166	146	
생활보장과	한파 취약계층 특별난방비 지원 (예산성립 전 사용)	0	494	494	보조
	청년내일저축계좌 차상위 이하	226	120	-106	보조
	청년내일저축계좌 차상위 초과	689	748	59	보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13,530	14,602	1,073	보조

부 서 명	사 업 명	기 정 예산액	추 경 예산액	증감액	비고
희망지원과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운영비	538	404	-133	보조
	장애인거주시설 운영비	2,844	3,079	235	보조
	장애인거주시설 휴일수당	79	0	-79	보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시비지원)	1,909	1,978	69	보조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	81	0	-81	보조
	장애인 활동지원급여지원	15,674	16,058	384	보조
	장애인 활동지원 추가지원사업	1,136	1,315	179	보조
	활동보조 가산수당	168	223	54	보조
	발달장애인 방과후 활동서비스지원	561	618	57	보조
	아동수당지원	23,630	23,490	-140	보조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	586	665	78	보조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수당 지원	0	64	64	
	아동급식(조석식)지원	1,273	1,454	182	보조
	아동급식(방학중 중식)지원	730	834	104	보조
	가정위탁보호아동 지원	231	308	77	보조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	83	144	61	보조
	학대피해아동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0	69	69	보조
	학대피해아동쉼터운영	0	69	69	

부 서 명	사 업 명	기 정 예산액	추 경 예산액	증감액	비고
건설과	화원 구라리(891번지선) 도시계획도로 개설	850	1,000	150	
	화원 천내리(이진캐스빌 앞) 도시계획도로 개설	0	400	400	
	논공 하2리 정골 도시계획도로 개설	0	299	299	
	달성군청 뒤 도시계획도로 개설	0	1,000	1,000	
	논공 상리 770번지선 도시계획도로 개설	0	1,000	1,000	
	다사 매곡리~부곡리 우회도로 확포장	1,100	2,100	1,000	
	다사 이천리 마을안길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0	100	100	
	다사 매곡리 다사초등학교 주변 도시계획도로개설	1,000	2,900	1,900	
	옥포 본리1리 2196번지선 도시계획도로 개설	50	100	50	
	옥포 강림1리 금봉지 동편 도시계획도로 개설	0	150	150	
	옥포 김흥리 마을회관 앞 도시계획도로 개설	0	100	100	
	옥포 본리1리 2188-4번지선 도시계획도로 개설	0	100	100	
	옥포 송촌리 316-1번지선 도시계획도로 개설	0	500	500	
	옥포 기세리 666번지선 도시계획도로 개설	300	800	500	
	옥포 본리2리 2452번지선 도시계획도로 개설	0	199	199	
	옥포 간경리 757번지선 도시계획도로 개설	0	499	499	
	가창 우록리(본동마을) 도시계획도로 개설 (전환사업)	0	130	130	
	가창 옥분리(파티마 요양병원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0	150	150	
	가창 행정리(793번지선)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0	450	450	
	가창 대일리 676번지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0	50	50	

부 서 명	사 업 명	기 정 예산액	추 경 예산액	증감액	비고
건설과	가창 오1리(마을회관 주변) 도시계획도로개설 공사	0	100	100	
	가창 냉천리(소2-새4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0	300	300	
	가창 상원2리(상원교회 동편)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0	300	300	
	가창 주1리(마을입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0	500	500	
	하빈 군도7호선(감문~대평) 도로확장	2,000	5,000	3,000	
	하빈 대평1리(하빈로179길) 도시계획도로 개설	0	100	100	
	하빈 감문2리(마을회관 앞)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85	935	850	
	현풍 대리 이양서원 진입 도시계획도로 개설	0	150	150	
	현풍 대1리 955번지선 외 1개소 도시계획도로 개설 ('22년특조금392백만원)	950	1,098	148	
	현풍 상리 350-1번지 일원 도시계획도로 개설	0	50	50	
	구지 창리 399-3번지선 도시계획도로 개설	0	200	200	
	도시관리계획 신설 및 변경	100	300	200	
	화원 설화리(803-9번지선 외 1개소) 도시계획도로 개설	0	100	100	
	화원 성산1리(삼주아파트 뒤편) 도시계획도로 개설	0	50	50	
	화원 대구교도소~화원교 지중화사업	0	600	600	
	비슬산 휴양림도로 확포장	0	100	100	
	유가 가태2리(예연서원) 진입도로 확포장	0	750	750	
	현풍 대2리 인도설치	0	100	100	
	현풍 지리 681번지선 도로정비	0	160	160	
	논공 위천리 71-1번지 일원 도로개설	0	250	250	

부 서 명	사 업 명	기 정 예산액	추 경 예산액	증감액	비고
건설과	화원 명곡로 외 2개소 자동염수살포장치 설치	0	500	500	
	노후도로 포장 덧씌우기	500	1,000	500	
	유가 양2리(중뫼마을) 도로확포장	0	560	560	
	옥포 김흥리 736번지선 도로확장	0	150	150	
	하빈 동곡1리 710-1번지선 마을안길 정비	0	60	60	
	논공 금포리 720번지 일원 도로정비	0	300	300	
	구지면 국가산업단지 인도정비공사	0	300	300	
	옥포 본리리 2323-2번지선 도로확장공사	0	200	200	
안전총괄과	주택화재 피해주민 지원금	0	100	100	
	재해상황관리 자동음성통보시스템 및 수신단말기 유지관리	37	87	50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재수립 용역 ('22년 특교세 1억 포함)	0	126	126	
	스마트 그늘막 설치	0	90	90	
	한파 물품 구입 등('22년 시비) (예산성립 전 사용)	0	55	55	
	예비군 지역대 사무실 설치 지원	0	65	65	
	지방하천정비(현풍천 재해예방사업) (전환사업)	4,701	5,184	483	
	지방하천정비(기세곡천 재해예방사업) (전환사업)	13,532	10,038	-3,494	보조
	하천 편입토지 미지급용지 보상	50	150	100	
	구지 징리 688번지선 징리소하천 정비공사(전환사업)	100	250	150	
	논공 하리 524번지선 하리소하천 정비공사	0	570	570	
	현풍천 및 용봉천 가로등 설치공사	250	550	300	
	현풍천 경관개선사업	0	70	70	

부 서 명	사 업 명	기 정 예산액	추 경 예산액	증감액	비고
도시계획과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검토 용역	0	50	50	
	도시재생 프로그램 운영 (눈꽃처럼 밝은 설화마을)	0	50	50	
	도시재생 사업 (눈꽃처럼 밝은 설화마을)	0	1,050	1,050	보조
	달성군 선비체험관 민간위탁 운영	250	311	61	
	구지 국가산단 진입로 상징조형물 설치	100	320	220	
도시정비과	마을하수도 전기 및 통신요금	50	100	50	
	논공 상리 799-15번지 일원 우수관로 정비	30	420	390	
	소규모 수리시설 개보수	300	450	150	
	가창 단산리(206번지선) 농로개설공사	0	150	150	
	옥포 김흥리(1067번지선) 농로개설공사	0	400	400	
	하빈 하산2리(44-3번지선 외 1개소) 농로개설공사	0	300	300	
	구지 평촌리(216-2번지선 외 1개소) 농로개설공사	0	200	200	
	옥포 본리리 (1827번지선) 농로개설공사	0	100	100	
	옥포 본리리(276-1번지선) 농로개설공사	0	110	110	
	옥포 김흥리(585번지선) 농로개설공사	0	250	250	
	가창 냉천리(643번지선) 농로개설공사	0	160	160	
	논공 노이리(492번지선) 농로정비공사	0	65	65	
	가창 주리(108번지선) 농로개설공사	0	450	450	
	구지 고봉리(745-2번지선) 농로개설공사	0	90	90	
	하빈 하산2리(한서실업 뒤) 농로개설공사	0	200	200	

부 서 명	사 업 명	기 정 예산액	추 경 예산액	증감액	비고
도시정비과	유가 가태리(158번지선) 용수로 개체공사	200	380	180	
	유가 유곡리(794번지선) 농로개설공사	80	880	800	
	가창 주리(585번지선) 농로개설공사	0	300	300	
	옥포 김흥리(1520번지선) 배수로 정비공사	0	80	80	
	하빈 무등양수장 용수관로 개체공사	0	200	200	
	농업기반정비 (재해위험저수지 개보수)	300	520	220	
	구지 가천리(620-78번지선) 간이양수장 설치공사	20	260	240	
문화예술과	문화도시 조성 지원	0	3,000	3,000	보조
	2023년 금호 선유문화 축제 지원	0	110	110	보조
	달성100대 피아노	450	550	100	보조
	달성 대구현대미술제	430	730	300	
	달성문화센터 리모델링 공사	10	160	150	
	달성문화센터 수영장 전면 보수 공사	0	70	70	
	달성문화원 엘리베이터 교체	0	55	55	
	운흥사 목조아미타여래 삼존좌상 주변정비 (천불전 개축)	800	378	-422	보조
	유가사 석조여래좌상 주변정비 (시방루 단청보수)	600	0	-600	보조
	남평문씨 본리세거지 문보갑가옥 아래채 보수	57	0	-57	보조
	대구 광덕사 신중도 주변정비	263	0	-263	보조
	남지장사 청련암 보수정비	440	388	-52	보조

부 서 명	사 업 명	기 정 예산액	추 경 예산액	증감액	비고
체육진흥과	기타체육시설 경상전출금	468	540	72	
	달성 테크노 스포츠센터 물품 구입	0	560	560	
	달성종합스포츠파크 다목적체육관 증축사업	0	200	200	
	기타 체육시설 설치 및 보수 공사	200	450	250	
	달성테크노폴리스 생활체육광장 조성	0	500	500	
	다사 방천리 파크골프장 실시설계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등 용역비	0	75	75	보조
	현풍 원오교 주변 체육시설 정비	0	1,500	1,500	
	다사 강창교 파크골프장 조성	0	149	149	
관광과	화석박물관 교육프로그램 연구개발 용역	0	60	60	
	달성 화석박물관 건립	8,330	9,830	1,500	
	화석박물관 유물구입비	0	550	550	
	교도소후적지 개발사업 연구용역비	0	100	100	
	물산업클러스터 명품경관조성	1,468	0	-1,468	보조
공원녹지과	옥연지 송해공원 휴게공간 조성	0	100	100	
	폭염저감시설 설치사업 (예산성립 전 사용)	0	237	237	보조
	2023년 다사근린 정비공사	0	400	400	
	창의놀이터특화사업 실시설계용역	0	100	100	
	시설관리공단 경상 전출금 (비슬산 전기차)	449	499	50	
	화원 명곡숲 산림욕장 보완	0	50	50	
	비슬산 숲속 도서관 조성	0	500	500	보조
	피해우려목 사전제거 (예산성립 전 사용)	441	1,222	781	보조

부 서 명	사 업 명	기 정 예산액	추 경 예산액	증감액	비고
보건과	청사 전기요금(보건소)	60	120	60	
	영상의학실 장비 구입(x-ray)	0	340	340	
	노인운동교실 강사료	58	131	74	
	디바이스 구입 및 인차료	0	52	52	보조
건강증진과	둘째자녀이상 출산축하금	2,464	2,366	-98	보조
	체외 인공수정시술비지원	532	448	-84	보조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	1,488	1,750	263	보조
농촌지도과	노지채소 토양개선 농자재 지원	0	100	100	
의회사무국	청사 리모델링(4층)	0	230	230	

5. 검토의견

○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당초예산 8,800억 원 보다 532억 원(증6.05%)이 증액된 9,332억 원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당초예산 8,786억 원보다 534억 원 증액된 9,320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당초예산에서 2억 원 감액된 12억 원 입니다.

○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수입 2억 원, 자체보조금 반환수입 15억 원, 지방교부세 209억 원, 조정교부금 122억 원, 국·시비 보조금 22억 원, 보전수입 16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국·시비 보조사업의 변경내시 부분과 연내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비 등 187억 원을 감액 편성하고, 당면 현안사업으로 화원공공복합청사 리뉴얼사업 69억 원, 달성비슬도서관 설계용역비 14억 원, 교육문화복지센터 내 들어설 공공도서관 건립에

20억 원, 화원 본리리 마을공동주차장 정비 6억 원, 현풍 원오교 체육시설 정비 15억 원, 화석 박물관 건립 15억 원, 다사 근린공원 정비 4억 원, 도로계획도로 개설 및 정비 등 69건에 157억 원, 하천 및 농로정비사업 등 28건에 4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아동급식 지원 등 복지·교육·보건분야 12억 원, 농식품바우처사업 등 농업 및 도로·소하천 분야 23억 원, 문화도시조성 등 문화관광 분야 18억 원 등 총 5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또한, 전년도 국·시비 보조금 집행 잔액 반환금으로 72억 원을 편성하고 예비비로 당초 201억 원에서 115억 원으로 86억 원을 추경 재원으로 반영하였습니다.

○ 특별회계부분은 의료급여기금 국·시비 보조사업의 변경내시가 반영되었습니다.

○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세입부분에서는 지방소득세, 국시비 보조금과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금 등을 반영하였으며, 세출부분은 화원공공복합청사 리뉴얼사업, 공공도서관 건립 등 역점추진사업과 도로정비와 하천 및 농로정비사업과 같은 주민생활 편리성 증대를 위한 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으며, 연내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비를 과감히 감액 편성하는 등 전반적으로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였다고 판단됩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일**: 2023년 3월 27일

2. **제출자**: 최재규 의원 등 3명

3. **제안사유**

○ 상위법령에 따라 용어를 명확히 규정하고, 진료비 또는 수수료에 관하여 감면받는 대상을 규정함으로써 대구광역시 달성군민의 주민 보건 향상과 사회복지의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규정(안 제2조의2)

○ 진료비 또는 수수료를 감면받거나 납기 연장할 수 있는 사항 규정(안 제14조제1항)

○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면제받는 대상에 관해 규정(안 제14조제2항)

5. **관계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 의료급여법

6.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먼저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응급환자의 이송·진료, 감염병 발생지역 주민의 진료 및 예방접종, 방문진료 및 이동진료,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 중 임상증상이 있는 사람의 검사 및 진료, 국가와 대구광역시 또는 달성군이 개최하는 각종 행사의 의료지원의 경우 진료비 또는 수수료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한부모가족, 13세 이하의 둘째아이와 그 가족구성원, 자원봉사자, 학교장과 읍·면장이 추천하는 사람 등에게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면제받도록 확대하는 내용을 담음으로써 의료 취약계층의 보건비용 부담을 경감하고, 특히 다자녀가정의 범위를 둘째아이로 확대하여 진료비를 면제함으로써 출산장려 정책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조례안의 관계법령 저촉 여부 및 내용과 형식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붙임 1. 조례안 1부.
2. 관계법령 1부. 끝.

대구광역시 달성군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달성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건소”란 대구광역시 달성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건강을 증진하고 질병을 예방·관리하기 위하여 「지역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설치한 지역보건의료기관을 말한다.
2. “보건지소”란 보건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법 제13조에 따라 보건소의 지소로 설치한 지역의료기관을 말한다.
3. “보건진료소”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농어촌의료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보건의료 취약지역의 군민에게 보건의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한 지역보건의료기관을 말한다.
4. “보건소 등”이란 보건소,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를 말한다.
5. “진료비”란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요양급여 중 방문당수가 또는 진료수가외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인 약가를 말한다.

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보건소장은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지휘·

감독을 받아 보건소의 업무를 관장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하며, 관할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의 직원 및 업무에 대하여 지도·감독한다.

제4조제3항 본문 중 "의사면허소지자중에서"를 "의사면허소지자 중에서"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경우에는 「농어촌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규정에 의한 공중보건의사로"를 "경우에는 「농어촌의료법」에 따른 공중보건의사로"로 한다.

제9조 본문 중 "10원미만"을 "10원 미만"으로 한다.

제1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보건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료비 또는 수수료를 감면하거나 납기를 연장할 수 있다.

1. 응급환자의 이송 및 진료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발생지역 주민의 진료 및 예방접종
3. 방문진료 및 이동진료
4.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 중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임상증상이 있는 사람의 검사 및 진료
5. 국가, 대구광역시 또는 대구광역시 달성군이 개최하는 각종 행사의 의료지원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건의료사업

제14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대구광역시 달성군 장기 등 기증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를 "「대구광역시 달성군 장기등 기증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65세 이상인 사람

3.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해당하는 사람

4. 관내 학교장 또는 읍·면장이 본인부담금 면제의 필요성이 있다고 추천하는 19세 이하인 사람

5. 관내 13세 이하의 둘째아이와 그 부모, 형제자매 등 가족구성원

6. 대구광역시자원봉사센터에서 발급한 자원봉사증을 소지한 자원봉사자

별표 3 제2호 골밀도 검사의 1회 금액 5,000 비고란의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65세 이상인 사람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조의2(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건소”란 대구광역시 달성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건강을 증진하고 질병을 예방·관리하기 위하여 「지역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설치한 지역보건의료기관을 말한다. 2. “보건지소”란 보건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법 제13조에 따라 보건소의 지소로 설치한 지역의료기관을 말한다. 3. “보건진료소”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농어촌의료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보건의료 취약지역의 군민에게 보건의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한 지역보건의료기관을 말한다. 4. “보건소 등”이란 보건소,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를 말한다.

	5. “진료비”란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요양급여 중 방문당수가 또는 진료수가외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인 약가를 말한다.
제4조(소장 및 지소장) ①보건소장은 군수의 지휘·감독을 받아 보건소의 업무를 관장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하며, 관할 보건지소와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보건진료소의 직원 및 업무에 대하여 지도·감독한다.	**제4조(소장 및 지소장)** ①보건소장은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지휘·감독을 받아 보건소의 업무를 관장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하며, 관할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의 직원 및 업무에 대하여 지도·감독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지소장은 의사면허소지자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다만, 지소장을 임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농어촌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규정에 의한 공중보건의사로 하여금 지소장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의사면허소지자중에서 ---------- 경우에는 「농어촌의료법」에 따른 공중보건의사로----------
제9조(약가)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은 국민건강보험약가 기준표에 의하여 산정하되 10원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동약가 기준액표에	**제9조(약가)** ---------- ---------- 10원 미만---------- . ---------- ----------

등재되지 아니한 수입의약품 및 원료의약품의 비용은 당해 기관이 실수입가로 산정 하되 수입의약품의 경우 보건복지부 행정지도 가격을 초과할 수 없다.	---------- ---------- ---------- -----.
제14조(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①보건소장은 공익상 필요로 할 때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진료비 및 수수료를 감면하거나 납기를 연장할 수 있다.	**제14조(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①보건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료비 또는 수수료를 감면하거나 납기를 연장할 수 있다. 1. 응급환자의 이송 및 진료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발생 지역 주민의 진료 및 예방접종 3. 방문진료 및 이동진료 4.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 중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임상증상이 있는 사람의 검사 및 진료 5. 국가, 대구광역시 또는 대구광역시 달성군이 개최하는 각종 행사의 의료지원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건의료사업
②보건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내 주민에 대하여 진료비 중 본인 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다.	②----------.
1. 만 65세 이상인 자	1. 65세 이상인 사람
2. 「대구광역시 달성군 장기등 기증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른 장기기증자 및 장기기증희망자로서 장기기증 등록증을 가진 사람	2. 「대구광역시 달성군 장기등 기증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
<신 설>	3.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해당하는 사람
<신 설>	4. 관내 학교장 또는 읍·면장이 본인부담금 면제의 필요성이 있다고 추천하는 19세 이하인 사람
<신 설>	5. 관내 13세 이하의 둘째아이와 그 부모, 형제자매 등 가족구성원
<신 설>	6. 대구광역시자원봉사센터에서 발급한 자원봉사증을 소지한 자원봉사자

대구광역시 달성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보건법」제10조,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구광역시달성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제2조의2(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건소”란 대구광역시 달성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건강을 증진하고 질병을 예방·관리하기 위하여 「지역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설치한 지역보건의료기관을 말한다.
2. “보건지소”란 보건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법 제13조에 따라 보건소의 지소로 설치한 지역의료기관을 말한다.
3. “보건진료소”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농어촌의료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보건의료 취약지역의 군민에게 보건의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한 지역보건의료기관을 말한다.
4. “보건소 등”이란 보건소,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를 말한다.
5. “진료비”란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요양급여 중 방문당수가 또는 진료수가외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인 약가를 말한다.

제3조 삭제

제4조(소장 및 지소장) ①보건소장은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지휘·감독을 받아 보건소의 업무를 관장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하며, 관할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의 직원 및 업무에 대하여 지도·감독한다.

②보건지소장은 보건소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보건지소의 업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며 보건진료소의 직원 및 업무에 대하여 지도·감독한다.

③지소장은 의사면허소지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다만, 지소장을 임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농어촌의료법」에 따른 공중보건의사로 하여금 지소장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삭제

제5조(정원)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6조(진료비 징수 등) 보건소의 시설을 이용하거나 진료를 받은 자로부터 수수료 또는 진료비를 징수할 수 있다.

제7조(진료비) 진료비는 방문당수가 또는 진료수가외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인 약가를 말한다.

제8조(진료비 및 수수료) 진료비 및 수수료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요양급여비용에 따른다. 단, 국민건강보험급여 제외 환자에 대하여는 1회 방문 당 진료비와 수수료의 전액을 본인 부담으로 징수한다.

제9조(약가)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은 국민건강보험약가 기준표에 의하여 산정 하되 1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동약가 기준액표에 등재되지 아니한 수입의약품 및 원료의약품의 비용은 당해 기관이 실수입가로 산정 하되 수입의약품의 경우 보건복지부 행정지도 가격을 초과할 수 없다.

제10조(타 법령에 의한 진료비 및 수수료) 진료비 및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제11조(기타 진료비 및 수수료) ① 기타 진료비 및 수수료는 실비수준으로 별도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진료비 및 수수료는 [별표 3]과 같다.

제12조(증명발급 수수료) ①각종 증명발급 수수료는 [별표 2]에 의거 징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증명 발급을 위하여 진료 및 별도의 검사(엑스선 검진 및 병리검사)등을 요하는 경우에는 제8조에 의한 소정의 진료수가를 계산한다.

③ 삭제

제13조 삭제

제14조(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①보건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료비 또는 수수료를 감면하거나 납기를 연장할 수 있다.

1. 응급환자의 이송 및 진료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발생지역 주민의 진료 및 예방접종
3. 방문진료 및 이동진료
4.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 중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임상증상이 있는 사람의 검사 및 진료
5. 국가, 대구광역시 또는 대구광역시 달성군이 개최하는 각종 행사의 의료지원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건의료사업

②보건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내 주민에 대하여 진료비 중 본인 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다.

1. 65세 이상인 사람

2. 「대구광역시 달성군 장기등 기증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른 장기기증자 및 장기기증희망자로서 장기기증 등록증을 가진 사람

3.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해당하는 사람

4. 관내 학교장 또는 읍·면장이 본인부담금 면제의 필요성이 있다고 추천하는 19세 이하인 사람

5. 관내 13세 이하의 둘째아이와 그 부모, 형제자매 등 가족구성원

6. 대구광역시자원봉사센터에서 발급한 자원봉사증을 소지한 자원봉사자

③ 제2항에 따라 진료비를 면제 받으려는 관내 주민은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서를 해당 보건소 또는 보건지소의 진료비 면제 담당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15조(납부) 진료비 및 수수료 등 비용은 당일에 납부한다.

제16조(추징) 허위사실에 의하여 진료비를 감면받은 자에 대하여는 이를 추징할 수 있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3]

기타 진료비 및 수수료 (제11조 관련)

(단위: 원)

구 분	항 목	단 위	금 액	비 고
1.구강보건사업	치아홈메우기 (치면열구전색)	치아 당	5,000	관내주민 (비보험 적용 치아)
	불소도포	1회	5,000	관내 주민
	광중합을 이용한 충전 (충치)치료	치아 당	10,000	
	치면세마	1회	10,000	
2.골밀도 측정	골밀도 검사	1회	10,000	관내 주민
			5,000	관내 주민 중 1. 65세 이상인 사람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참고 **관계 법령(발췌)**

□ 「국민건강보험법(법률)」

제41조(요양급여) ①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요양급여를 실시한다.

1. 진찰 · 검사
2. 약제(藥劑) · 치료재료의 지급
3. 처치 · 수술 및 그 밖의 치료
4. 예방 · 재활
5. 입원
6. 간호
7. 이송(移送)

② 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이하 "요양급여"라 한다)의 범위(이하 "요양급여대상"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항 각 호의 요양급여(제1항제2호의 약제는 제외한다): 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비급여대상으로 정한 것을 제외한 일체의 것
2. 제1항제2호의 약제: 제41조의3에 따라 요양급여대상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결정하여 고시한 것

③ 요양급여의 방법 · 절차 · 범위 · 상한 등의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기준을 정할 때 업무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질환에 대한 치료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요양급여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이하 "비급여대상"이라 한다)으로 정할 수 있다.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제1호나목 외래진료의 경우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의료장비 · 치료재료를 이용한 진료의 경우에는 다음 표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모든 지역		요양급여비용 총액 × 30/100. 다만,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넘지 않으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본인일부부담금으로 한다.

□ 「의료급여법(법률)」

제3조(수급권자) ① 이 법에 따른 수급권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2. 「재해구호법」에 따른 이재민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3.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
4. 「입양특례법」에 따라 국내에 입양된 18세 미만의 아동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사람과 그 가족으로서 국가보훈처장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추천한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6.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명예보유자를 포함한다)와 그 가족으로서 문화재청장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추천한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7.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사람과 그 가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8.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보상금등을 받은 사람과 그 가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9.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숙인 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10. 그 밖에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② 제1항제2호 및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급권자의 인정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의 내용과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분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의 개시일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일: 2023년 3월 27일

2. 제출자: 양은숙 의원 등 3명

3. 제안사유

○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 운영의 투명성 제고에서 권고한 사항에 따라 달성군이 사무를 민간에 위탁할 때,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확보하여 군의회에 동의·보고를 구하는 절차를 구체화 함으로써 민간위탁의 남용을 사전에 방지하고, 사무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기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민간위탁 대상 사무 규정(안 제4조)

○ 적정성 검토에 관한 의무 신설(안 제4조의2)

○ 군의회 동의 및 보고에 관한 내용 신설(안 제4조의3)

○ 수탁기관 사무처리에 대한 시정요구 내용 신설(안 제12조)

○ 감사결과에 따른 시정·문책요구, 감사결과 공개의무 신설(안 제14조)

○ 민간위탁사업의 성과 측정을 위한 성과평가 규정 신설(안 제15조)

5.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6.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민간위탁 사무의 적정성 검토에 관한 의무 규정과 군의회 동의 및 보고에 관한 내용을 신설 및 강화하여 민간위탁의 사전 적정성을 확보토록 하고, 위탁사무에 대한 감사와 감사에 따른 시정·문책요구, 결과 공개, 성과평가 규정을 신설하여 사후 관리 및 감독 강화를 통한 민간위탁 운영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음으로써, 민간위탁사무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조례안의 관계법령 저촉 여부 및 내용과 형식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붙임 1. 조례안 1부.
2. 관계법령 1부. 끝.

대구광역시 달성군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달성군수”를 “대구광역시 달성군수”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규정된”을 “규정된 대구광역시”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바에 따라 군수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군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제4조의2 및 제4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그 밖에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등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의3(의회동의 및 보고) ① 군수는 제4조의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재위탁을 포함한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민간위탁 계획을 수립한 후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위탁기간 만료 후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의회 보고로 동의를 갈음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동의안 및 보고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의 명칭 및 관련법규

2.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필요성

3. 위탁사무의 범위 및 내용

4. 수탁기관 선정방식

5. 민간위탁 추진일정

6. 소요예산 및 산출 근거

7. 제4조의2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8. 제15조에 따른 민간위탁 성과평가 결과

9. 그 밖에 민간위탁 동의 등 여부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수탁기간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2. 청소, 방호 등 연간 반복적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제5조제2항 본문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제6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6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6조제5항 중 “개의”를 “개의(開議)”로 한다.

제8조제2항 단서 중 “상위 법령”을 “상위법령”으로 한다.

제9조 중 “대한 운영평가”를 “대해 제15조에 따른 성과평가”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지휘 · 감독)”을 “(지도 · 감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군수는 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지도 · 감독하며, 수탁기관에 위탁한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군수는 위탁사무의 사무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문서로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그 기간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시정 요구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수탁기관에 문서로 그 사유를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감사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

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제12조제3항에 따라 시정 요구 등을 해야 하고, 관계 임원과 직원에 대해서는 문책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감사결과를 군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5조 및 제16조를 각각 제16조 및 제17조로 하고,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성과평가) ① 군수는 민간위탁 사업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성과평가를 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별도로 평가를 하는 위탁사무 또는 군수가 실시하는 감사를 받은 경우에는 그 평가결과로 대체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종전의 제15조) 제1항제3호 중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지휘·감독”을 “제12조에 따른 지도·감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제1호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호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달성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를 통한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대구광역시 달성군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민간위탁"이란 각종 법령 및 조례에 규정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사무 중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1. ---------- 규정된 대구광역시 ----------.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바에 따라 군수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군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바에 따라 군수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군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② 군수는 제1항 각호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위임사무는 위임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군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자치사무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는 군의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군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신 설〉	합적으로 판단하여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제4조의2(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그 밖에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 여건 등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 설〉	**제4조의3(의회동의 및 보고)** ① 군수는 제4조의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재위탁을 포함한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민간위탁 계획을 수립한 후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위탁기간 만료 후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의회 보고로 동의를 갈음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동의안 및 보고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의 명칭 및 관련법규 2.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필요성 3. 위탁사무의 범위 및 내용 4. 수탁기관 선정방식 5. 민간위탁 추진일정 6. 소요예산 및 산출 근거 7. 제4조의2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8. 제15조에 따른 민간위탁 성과평가 결과 9. 그 밖에 민간위탁 동의 등 여부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수탁기간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2. 청소, 방호 등 연간 반복적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제5조(수탁기관의 선정) ① (생 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민간위탁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탁기관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생 략)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군수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제5조(수탁기관의 선정)**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 ---------- ----------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에 따라 ---------- 제6조에 따른 ---------- ---.
제6조(민간위탁심의위원회) ① ~ ④ (생 략)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제6조(민간위탁심의위원회)**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개의(開議)----------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⑥·⑦(생 략)	⑥·⑦(현행과 같음)
제8조(협약체결 등) ①(생 략)	**제8조(협약체결 등)** ①(현행과 같음)
②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상위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 상위법령 ---------- ----------.
제9조(재계약) 군수는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위원회에서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운영평가를 실시하여 연장의 적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제9조(재계약)** ---------- ---------- ---------- 대해 제15조에 따른 성과평가---------- ----------.
제12조(지휘·감독) ① 군수는 민간위탁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지휘·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한 사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 또는 시정시킬 수 있다.	**제12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지도·감독하며, 수탁기관에 위탁한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②(생 략)	②(현행과 같음)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무를 취소 또는 정지시키고자 할 때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군수는 위탁사무의 사무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문서로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그 기간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신 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시정 요구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수탁기관에 문서로 그 사유를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4조(처리상황의 감사) ① (생 략)	**제14조(처리상황의 감사)**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결과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감사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제12조제3항에 따라 시정 요구 등을 해야 하고, 관계 임원과 직원에 대해서는 문책을 요구할 수 있다.
<신 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감사결과를 군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신 설>	**제15조(성과평가)** ① 군수는 민간위탁사업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성과평가를 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별도로 평가를 하는 위탁사무 또는 군수가 실시하는 감사를 받은 경우에는 그 평가결과로 대체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협약해지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협약을	**제16조(협약해지 등)** ① ---------- ---------- ----------.

해지할 수 있다. 1. · 2. (생 략) 3.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지휘 · 감독 결과 운영 실적이 부실하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때 4. (생 략) ② 수탁기관이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협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3월 전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을 요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군수는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협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수탁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약이 해지된 때에는 시설의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6조**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3. 제12조에 따른 지도 · 감독---------- 4. (현행과 같음) ② -------- 제1항제1호에 따라 ----------. ----------. ③ ---------- 제3호에 따라 ----------. ④ -------- 제1항에 따라 ----------. **제17조** (현행 제16조와 같음)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를 통한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간위탁”이란 각종 법령 및 조례에 규정된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사무 중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수탁기관”이란 군수의 권한을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3. “재위탁”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기존 수탁자와의 위탁계약기간 만료 후 새로운 수탁자를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4. “재계약”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자와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민간위탁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바에 따라 군수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군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제4조의2(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그 밖에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등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의3(의회동의 및 보고) ① 군수는 제4조의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재위탁을 포함한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민간위탁 계획을 수립한 후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위탁기간 만료 후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의회 보고로 동의를 갈음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동의안 및 보고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의 명칭 및 관련법규

2.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필요성

3. 위탁사무의 범위 및 내용

4. 수탁기관 선정방식

5. 민간위탁 추진일정

6. 소요예산 및 산출 근거

7. 제4조의2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8. 제15조에 따른 민간위탁 성과평가 결과

9. 그 밖에 민간위탁 동의 등 여부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수탁기간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2. 청소, 방호 등 연간 반복적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제5조(수탁기관의 선정) ① 군수는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1. 수탁대상기관의 인력 · 기구 및 재정부담능력

2. 수탁대상기관의 시설 · 장비 및 기술보유의 정도

3. 수탁대상기관의 책임능력과 공신력

4. 지역간 균형분포 등

② 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민간위탁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탁기관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공개모집에 응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군수는 제6조에 따른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제6조(민간위탁심의위원회) ① 군수는 수탁기관 선정 및 운영평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 민간위탁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명이상 9명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 및 위원은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소속 관계공무원과 관계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관계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위원회를 구성할 때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는 사업계획서의 심사 및 현장 확인과 신청인에 대하여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⑦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책임의 소재 및 명의표시) ①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 군수는 그에 대한 감독 책임을 진다.

② 수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수탁기관의 명의로 한다.

제8조(협약체결 등) ① 군수는 사무를 위탁할 경우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위탁의 목적 및 사무의 내용
2. 위탁 수수료 또는 비용
3. 위탁기간
4. 수탁기관의 의무 및 준수 사항
5. 계약 위반 시 책임에 관한 사항

②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상위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재계약) 군수는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위원회에서 민간위탁 사무에 대해 제15조에 따른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연장의 적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제10조(운영지원) 군수는 수탁기관의 수탁사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수탁기관의 의무) ① 수탁기관은 위탁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지연처리하거나 불필요한 서류 등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수탁기관은 위탁시설 · 장비 · 비용 등을 위탁받은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수탁기관은 관계 법령과 이 조례 및 위탁계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군수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④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시설을 증축 · 개축하거나, 추가로 시설을 신축하는 등의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지도 · 감독) ① 군수는 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지도 · 감독하며, 수탁기관에 위탁한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한 사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문서로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그 기간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시정 요구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수탁기관에 문서로 그 사유를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3조(사무편람) ①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 · 처리기간 · 처리과정 · 처리기준 · 구비서류 · 서식과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명시한 사무편람을 작성 · 비치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제1항의 편람을 작성한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4조(처리상황의 감사) ① 군수는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감사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제12조제3항에 따라 시정 요구 등을 해야 하고, 관계 임원과 직원에 대해서는 문책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감사결과를 군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5조(성과평가) ① 군수는 민간위탁 사업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성과평가를 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별도로 평가를 하는 위탁사무 또는 군수가 실시하는 감사를 받은 경우에는 그 평가결과로 대체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협약해지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불가피한 사유로 해지를 원할 때
2. 수탁기관이 제8조의 협약내용을 위반한 때
3. 제12조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 운영 실적이 부실하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때
4. 공익상 위탁운영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② 수탁기관이 제1항제1호에 따라 협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3월 전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을 요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군수는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협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이 해지된 때에는 시설의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참고 관계 법령(발췌)

□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임"이란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 중 일부를 그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맡겨 그의 권한과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위탁"이란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 중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맡겨 그의 권한과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3. "민간위탁"이란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사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로 그의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4. "위임기관"이란 자기의 권한을 위임한 해당 행정기관의 장을 말하고, "수임기관"이란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을 위임받은 하급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말한다.
5. "위탁기관"이란 자기의 권한을 위탁한 해당 행정기관의 장을 말하고, "수탁기관"이란 행정기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다른 행정기관의 장과 사무를 위탁받은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제3조(위임 및 위탁의 기준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허가·인가·등록 등 민원에

관한 사무, 정책의 구체화에 따른 집행사무 및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사무로서 그가 직접 시행하여야 할 사무를 제외한 일부 권한(이하 "행정권한"이라 한다)을 그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의 장, 다른 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 및 위탁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행정권한을 위임 및 위탁할 때에는 위임 및 위탁하기 전에 수임기관의 수임능력 여부를 점검하고, 필요한 인력 및 예산을 이관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행정권한을 위임 및 위탁할 때에는 위임 및 위탁하기 전에 단순한 사무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임 및 수탁기관에 대하여 수임 및 수탁사무 처리에 필요한 교육을 하여야 하며, 수임 및 수탁사무의 처리지침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위임 및 위탁사무의 처리) 수임 및 수탁기관은 수임 및 수탁사무를 처리할 때 법령을 준수하고, 수임 및 수탁사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6조(지휘 · 감독) 위임 및 위탁기관은 수임 및 수탁기관의 수임 및 수탁사무 처리에 대하여 지휘 · 감독하고, 그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제8조(책임의 소재 및 명의 표시) ① 수임 및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임 및 수탁기관에 있으며, 위임 및 위탁기관의 장은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② 수임 및 수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때에는 수임 및 수탁기관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

제9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따른 감사) 위임 및 위탁기관은 위임 및 위탁사무 처리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임 및 수탁기관의 수임 및 수탁사무 처리 상황을 수시로 감사할 수 있다.

제10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민간위탁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1조(민간위탁의 기준) ①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 사무 중 조사 · 검사 · 검정 · 관리 사무 등 국민의 권리 · 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국민 생활과 직결된 단순 행정사무

② 행정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정기적 ·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할 때에는 민간위탁을 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였을 때에는 필요한 사무처리지침을 통보하고, 그 처리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민간위탁 대상기관의 선정기준 등) ① 행정기관은 민간위탁할 대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인력과 기구, 재정 부담 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 보유의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지역 간 균형 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기관을 수탁기관(이하 "민간수탁기관"이라 한다)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은 민간수탁기관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모집을 하여야 한다. 다만, 민간위탁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민간수탁기관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③ 행정기관은 행정사무를 민간위탁하는 경우에는 사무 처리의 지연,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처리기준의 불공정, 수수료의 부당징수 등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를 방지할 보완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13조(계약의 체결 등) ① 행정기관은 민간수탁기관이 선정되면 민간수탁기관과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은 민간수탁기관과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계약 내용에 민간위탁의 목적, 위탁 수수료 또는 비용, 위탁기간, 민간수탁기관의 의무, 계약 위반 시의 책임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6조(처리 상황의 감사) ① 위탁기관의 장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 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

② 위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감사 결과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민간수탁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고, 관계 임원과 직원에 대해서는 문책을 요구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일: 2023년 4월 5일

2. 제출자: 달성군수

3. 제안사유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개정된 사항 중 미반영된 위임사무를 정비하여 행정의 능률향상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고, 도로점용 권리·의무의 승계신고 및 이에 따른 과태료 부과업무 등을 읍·면에 위임하여 효율적인 도로점용 업무를 추진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자치행정과 : 소속직원 복무에 관한 권한 위임

- 병가, 공가, 특별휴가의 근거법령 개정
- 출장승인, 겸직근무, 겸직허가 삭제

○ 건설과 : 도로점용에 관한 권한 위임

- 도로점용허가취소, 원상회복 명령
- 도로점용허가 권리·의무의 승계 신고 및 이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

5.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 도로법

6.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자치행정과 소관의 소속직원 복무에 관한 권한 위임사무 중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개정된 사항에 따라 병가, 공가, 특별휴가의 근거법령을 개정하고, 출장승인, 겸직근무, 겸직허가를 삭제하여 위임사무를 정비하고, 건설과 소관의 도로점용 권리·의무의 승계신고 및 그에 따른 과태료 부과업무 등을 읍·면에 위임하는 내용을 담음으로써 도로점용 관련 업무를 일원화하여 효율적인 업무 추진과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조례안의 관계법령 저촉 여부 및 내용과 형식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붙임 1. 조례안 1부.
2. 관계법령 1부. 끝.

대구광역시 달성군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3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별 표】

읍 · 면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항

소관 부서	현 행			개 정 안		
	일련번호	위임사무명	근거법령	일련번호	위임사무명	근거법령
자치행정과	1	소속직원의 복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연가의 계획 및 허가 나. 당직명령 다. 출장승인 라. 결석근무 마. 병가 바. 공가 사. 특별휴가 아. 결직허가	 •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19조 •같은 조례 제7조 •같은 조례 제8조 •같은 조례 제9조 •같은 조례 제21조 •같은 조례 제22조 •같은 조례 제23조 •같은 조례 제27조	1	소속직원의 복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연가의 계획 및 허가 나. 당직명령 다. (삭제) 라. (삭제) 다. 병가 라. 공가 마. 특별휴가 아. (삭제)	 •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19조 •같은 조례 제7조 (삭제) (삭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5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6 •같은 조례 제23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 (삭제)
건설과	1	도로에 관한 다음의 권한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관리하는 도로는 제외한다) 가. 점용허가 및 점용료 부과징수 (공사, 굴착, 건축 수반 허가 제외) (신설) (신설) (신설)	•도로법 제61조 및 제66조	1	도로점용에 관한 다음의 권한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관리하는 도로는 제외한다) 가. 도로의 점용허가 (공사, 굴착, 건축 수반 허가 제외) 점용허가취소, 원상회복명령 나. 점용료의 부과·징수 등 다. 도로점용허가 권리의무의 승계 신고 라. 도로점용허가 권리의무의 승계신고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도로법 제61조, 제63조, 제73조, 제101조 •도로법 제66조, 제69조, 제70조 •도로법 제106조 •도로법 제117조 제3항 제3호

【별 표】

읍·면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항

소관부서	일련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령
자치행정과	1	소속직원의 복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연가의 계획 및 허가	• 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제19조
		나. 당직명령	• 같은 조례 제7조
		다. 병 가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5
		라. 공 가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6
		마. 특별휴가	• 같은 조례 제23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
	2	군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중 다음의 권한	• 군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 조례 제4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5조, 제17조, 제22조
		가. 대부대상자 추천	
		나. 자금의 회수	
		다. 사업지도 감독	
	3	읍·면개발자문위원 위촉	• 군읍·면 개발자문위원회 조례 제4조
징 수 과	1	지방세징수법중 다음의 권한	
		가. 지방세 납세증명서	• 지방세징수법 제5조 같은법시행령 제6조
		나. 지방세 세목별과세증명서	
	2	지방세법중 다음의 권한	• 지방세법 제20조 지방세법 제30조
		가. 이륜차 등록에 관한 취득세, 등록면허세 신고접수 및 고지서 발급	
회 계 과	1	물품관리조례중 다음사항	
		가. 불용의 결정	• 군물품관리조례 제16조, 같은조례시행규칙 제6조
		나. 불용품 매각처분	• 같은조례 제17조

소관부서	일련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령
교 통 과	1	이륜자동차 관리에 관한 사항 가.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및 폐지신고 나. 기타 이륜자동차 관리에 관한사항	• 자동차관리법 제48조 내지 제52조, 같은법시행규칙 제99조 내지 110조
	2	노상방치 차량에 대한 다음의 사항 가. 노상방치차량 조사	•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조
환 경 과	1	공중화장실의 설치 및 유지관리 가. 공중화장실의 설치 및 유지관리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제7조의2, 제8조
청소위생과	1	폐기물관리에 관한 다음 사항 가. 환경미화원 관리 나. 생활쓰레기 적정배출 지도 다.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처리 라. 생활쓰레기 불법 투방기지도단속 마. 생활쓰레기 불법소각 지도·단속 바. 청소장비 관리 사. 재활용품 분리수거 지도 아. 대형폐기물 처리 자. 생활쓰레기관련 과태료부과·징수 차. 공중용 쓰레기용기 유지 관리	• 폐기물관리법 제14조 및 군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23조
	2	쓰레기 봉투의 공급에 관한 다음 사항 가. 쓰레기봉투 무상공급 나. 쓰레기봉투 판매 다. 쓰레기봉투 판매업소 지정 및 취소	• 폐기물관리법 제14조 및 군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23조
복지정책과	1	기초연금법중 다음에 관한 사항 가. 기초연금 지급의 신청 나. 수급권자의 현황관리 다. 미지급 연금의 청구	• 기초연금법제10조 같은법시행규칙제6조 • 같은법시행규칙제15조 • 같은법제1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
		라. 수급권 자격관리	• 같은법제1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제11조
		마. 이의신청 등	• 같은법제2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제14조
	2	장사 등에 관한 법률중 다음에 관한 사항 가. 매장·화장·개장의 신고	• 장사등에관한법률 제8조, 제9조, 제14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42조

소관부서	일련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령
생활보장과	1	의료급여법중 다음의 사무	
		가. 의료급여 수급권자 책정·상실·변경 요구	•의료급여법 제3조의3, 같은법 시행규칙 제1조의2
		나. 의료급여 증명서 발급	•의료급여법 제8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2조
		다. 의료급여증의 자격확인·정정·증회수등	•같은법시행규칙 제13조, 제15조
		라. 의료급여연장승인신청시 수합 제출	•같은법시행규칙 제8조의3
		마. 의료급여 본인부담 보상금·상한금 신청서 수합제출	•의료급여법시행령 제13조, 같은법시행규칙 제19조의2~3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중 다음의 권한	
		가. 수급자의 관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2조
		나. 급여의 신청	•같은법 제21조
		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서 발급	•같은법시행규칙 제40조
	3	장사 등에 관한 법률중 다음에 관한 사항	
		가. 무연고 시체등의 처리	•장사등에관한법률 제12조
		나. 유류금품의 처분	•장사등에관한법률 제12조의 2
희망지원과	1	장애인복지법중 다음의 권한	
		가. 장애인 등록신청·장애진단	•장애인복지법 제32조 같은법시행규칙 제3조
		나. 장애인 증명서 발급	•같은법시행규칙 제9조
		다. 등록현황의 기록 및 관리	•같은법시행규칙제10조
		라. 장애수당등의 지급 신청	•장애인복지법 제49조, 같은법시행규칙 제38조
		마. 장애인 복지카드의 교부 등	•장애인복지법 제32조 같은법시행규칙 제4조
		바. 장애등급의 조정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
		사. 장애상태의 확인	•같은법시행규칙 제7조
		아. 등록증의 반환명령	•같은법시행규칙 제8조
		자. 장애인 자동차표지의 발급 등	•장애인복지법 제39조 같은법시행규칙 제27조
		차. 보행상의 장애가 있는 자에 대한 배려	•같은법시행규칙제28조
		카. 장애인 보장구 신청서 수합 및 실태조사	•같은법시행규칙제46조

소관부서	일련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령
건 설 과	1	도로점용에 관한 다음의 권한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관리하는 도로는 제외한다) 가. 도로의 점용허가 (공사, 굴착, 건축 수반 허가 제외) 점용허가취소, 원상회복명령 나. 점용료의 부과·징수 등 다. 도로점용허가 권리·의무의 승계 신고 라. 도로점용허가 권리·의무의 승계 신고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도로법 제61조, 제63조, 제73조, 제101조 •도로법 제66조, 제69조, 제70조 •도로법 제106조 •도로법 제117조 제3항 제3호
안전총괄과	1	소하천의 점·사용허가 및 부과 징수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소하천 점용·사용 허가 나. 점용료(사용료) 부과징수 및 감면	• 소하천정비법 제14조, 군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 제7조
도시계획과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중 다음의 권한 가. 불법형질변경 등 위반행위에 대한 현장조사 및 보고	•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3조
토지정보과	1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에 관한 권한 가.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나. 주택 임대차 계약의 변경 및 해제 신고 등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같은 법 제6조의3

소관부서	일련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령
공원녹지과	1	산림보호법 중 다음의 권한	
		가. 입산허가	• 산림보호법 제15조
		나. 불놓기 허가	• 산림보호법 제34조
		다. 산불예방 및 진화	• 산림보호법 제33조 및 같은 법 제37조
	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중 다음의 사무	
		가. 도시공원 점용 및 사용에 관한 무허기 행위 조시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참고 관계 법령(발췌)

□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5(병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 6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7조의2제7항 본문에 따라 연가 일수에서 빼는 병가는 병가 일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1.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감염병에 걸려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공무상 부상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이 필요할 경우에는 연 18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③ 병가 일수가 연 6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해야 한다.

제7조의6(공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직접적으로 필요한 기간 또는 시간을 공가로 허가해야 한다.

1. 「병역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병역판정검사·소집·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2. 공무에 관하여 국회, 법원, 검찰, 경찰, 그 밖의 기관에 소환될 때
3. 법률에 따라 투표에 참가할 때

4. 승진시험 · 전직시험에 응시할 때
5.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결핵예방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결핵검진등을 받을 때
6. 「혈액관리법」에 따른 헌혈에 참가할 때
7.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외국어 능력시험에 응시할 때
8. 천재지변, 교통차단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9. 올림픽 · 전국체전 등 국가 또는 지방 단위의 주요 행사에 참가할 때
10.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교섭위원으로 선임되어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의 체결에 참석하거나 같은 법 제17조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7조에 따른 대의원회(「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무원 노동조합의 대의원회를 말하며, 연 1회로 한정한다)에 참석할 때
11. 「검역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검역관리지역 또는 중점검역관리지역으로 공무국외출장, 파견 또는 교육훈련을 가기 위해 같은 법에 따른 검역감염병의 예방접종을 할 때
12. 원격지(遠隔地)로 전보 발령을 받고 부임할 때
1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1급감염병에 대하여 같은 법 제24조 또는 제25조에 따라 필수예방접종 또는 임시예방접종을 받거나 같은 법 제42조제2항제3호에 따라 감염 여부 검사를 받을 때

제7조의7(특별휴가) ① 공무원의 특별휴가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별표 1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되,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45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출산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산 전 어느 때라도 최장 44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59일)의 범위에서 출산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외의 인공임신중절에 의한 유산은 제외한다. 이하 제3호를 제외하고 같다) · 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2. 임신 중인 공무원이 출산휴가를 신청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3.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 · 사산 또는 조산(早産)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④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 그 공무원이 신청하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1. 임신기간이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2.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3.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4.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남성공무원의 배우자가 유산하거나 사산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신청하면 제4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중 3일의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⑥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 시술을 받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난임치료시술휴가를 받을 수 있다.

1. 여성공무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목에서 정한 기간
 가. 인공수정 등 시술을 받는 경우: 총 2일(시술 당일에 1일과 시술일 전날, 시술일 후 2일 이내이거나 시술 관련 진료일 중에 1일)
 나. 동결 보존된 배아를 이식하는 체외수정 시술을 받는 경우: 총 3일(시술 당일에 1일과 시술일 전날, 시술일 후 2일 이내이거나 시술 관련 진료일 중에 2일)
 다. 난자 채취를 하여 체외수정 시술을 받는 경우: 총 4일(난자 채취일에 1일, 시술 당일에 1일과 시술일 전날, 난자 채취일 전날, 시술일 후 2일 이내, 난자 채취일 후 2일 이내이거나 시술 관련 진료일 중에 2일)
2. 남성공무원: 정자 채취일에 1일

⑦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다.

⑧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24개월의 범위에서 자녀돌봄, 육아 등을 위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⑨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간 10일의 범위에서 가족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다.

1.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이하 이 항에서 "어린이집등"이라 한다)의 휴업·휴원·휴교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자녀 또는 손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2. 자녀 또는 손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등의 공식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
3. 미성년자이거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인 자녀·손자녀의 병원 진료(「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25조에 따

른 예방접종을 포함한다)에 동행하는 경우

4. 질병, 사고, 노령 등의 사유로 조부모, 외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⑩ 제9항에 따른 가족돌봄휴가는 무급으로 하되, 자녀(같은 항 제4호의 경우에는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인 자녀로 한정한다)를 돌보기 위한 가족돌봄휴가는 연간 2일(자녀가 2명 이상이거나 장애인인 경우 또는 해당 공무원이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일)까지 유급으로 한다.

⑪ 여성공무원은 생리기간 중 휴식을 위해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⑫ 여성공무원은 임신기간 중 검진을 위해 10일의 범위에서 임신검진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피해[배우자,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또는 자녀가 입은 피해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입은 공무원과 재난 발생 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려는 공무원은 5일(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대규모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공무원으로서 장기간 피해 수습이 필요하다고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받을 수 있다.

□ 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 허가) ①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도로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기간을 연장하거나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허가받은 사항 외에 도로 구조나 교통안전에 위험이 되는 물건을 새로 설치하는 행위를 포함한다)하려는 때에도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할 수 있는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의 종류와 허가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도로관리청은 같은 도로(토지를 점용하는 경우로 한정하며, 입체적 도로구역을 포함한다)에 제1항에 따른 허가를 신청한 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일반경쟁에 부치는 방식으로 도로의 점용 허가를 받을 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일반경쟁에 부치는 방식으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을 자를 선정할 수 있는 경우의 기준, 도로의 점용 허가를 받을 자의 선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3조(도로점용허가의 취소) ① 도로관리청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도로점용허가가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한 경우
2.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도로점용허가의 목적이 된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의2. 제62조제1항에 따른 안전사고 방지대책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66조에 따른 점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4.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스스로 도로점용허가의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의 취소 절차, 방법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66조(점용료의 징수 등) ① 도로관리청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하는 자로부터 점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도로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도로점용허가 취소 등의 사유로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제63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2. 제96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3. 그 밖에 도로점용허가 기간이 종료하기 전에 도로점용을 종료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도로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 징수를 위하여 필요하면 「부동산등기법」 제109조의2제1항에 따른 등기정보자료 및 「건축법」 제32조에 따른 전자정보처리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④ 점용료의 산정기준, 제2항에 따른 점용료의 반환 방법 등 점용료의 징수 및 반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제23조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도로관리청이 되는 일반국도는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그 밖의 도로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도로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61조제3항에 따라 일반경쟁에 부치는 방식으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해서는 해당 일반경쟁에 부친 때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제시한 금액을 점용료로 부과한다. 다만, 그 점용료는 제4항에 따라 산정된 점용료의 3배를 초과할 수 없다.

제69조(점용료의 강제징수) ① 도로관리청은 점용료를 내야 할 자가 점용료를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간을 정하여 독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점용료의 납부가 연체되는 경우에 도로관리청은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가산금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2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세"는 "점용료"로 본다.

④ 도로관리청은 점용료를 내야 하는 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점용료를 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70조(과오납 점용료의 반환) 도로관리청은 과오납(過誤納)된 점용료가 있으면 과오납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과오납된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73조(원상회복) ①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한 자는 도로점용허가 기간이 끝났거나 제63조 또는 제96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가 취소되면 도로를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다만, 원상회복할 수 없거나 원상회복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도로관리청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도로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도로의 원상회복에 관하여는 제62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원상회복을 하여야 하는 자"로 본다.

④ 도로관리청은 도로를 점용한 자가 제1항 본문 및 제2항에 따른 원상회복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대집행을 통하여 원상회복할 수 있다.

제101조(청문) 도로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36조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게 한 공사시행 허가에 대한 제96조 또는 제97조에 따른 취소
2. 제63조제1항(제4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도로점용허가의 취소

제106조(권리·의무의 승계 등) ①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받은 자의 사망, 그 지위의 양도, 합병이나 분할 등의 사유가 있으면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으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가 승계한다.

1.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으로 발생한 권리나 의무를 가진 사람이 사망한 경우: 상속인
2.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으로 발생한 권리나 의무를 가진 자가 그 지위를 양도한 경우: 양수인
3.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으로 발생한 권리나 의무를 가진 법인이 분할·합병한 경우: 분할·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새로 설립되는 법인

② 제1항에 따라 권리나 의무를 승계한 자는 2개월 내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도로관리청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도로관리청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

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⑤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점용의 목적이 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권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도로점용허가에 따른 권리·의무도 함께 양도한 것으로 본다.

제11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77조제1항에 따른 운행 제한을 위반한 차량의 운전자
2. 제77조제2항에 따른 관리를 하지 아니한 자(임차한 화물적재 차량이 제77조제1항에 따른 운행 제한을 위반하여 운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제77조제3항에 따른 운행 제한 위반의 지시·요구 금지를 위반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에 대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1.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자
2.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자
3. 제62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사고 방지대책을 마련하지 아니한 자
4. 제62조제2항 후단에 따른 준공도면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실제와 다른 도면을 제출한 자
5. 제62조제5항에 따른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참여 없이 굴착공사를 시행한 자
6. 제76조제6항에 따른 긴급 통행제한을 위반한 자
7. 제96조나 제9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의 명령을 위반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62조제2항 전단에 따른 준공확인을 받지 아니한 자
2. 제73조제3항에 따른 도로의 원상회복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3. 제106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④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도로관리청이 부과·징수한다.

⑤ 제77조제1항에 따른 운행 제한을 위반한 차량의 운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차량의 운전자에 대하여는 제1항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차량의 운전자가 차량의 임대차 계약의 임차인이 제77조제2항을 위반한 사실을 신고하여 제1항제2호에 따라 차량의 임차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
2. 차량의 운전자가 화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자 등의 지시나 요구에 따라 제77조제1항을 위반한 사실을 신고하여 제1항제3호에 따라 화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자 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

⑥ 과태료의 납부방법에 관하여는 제6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각각 "과태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로, "점용료"는 각각 "과태료"로 본다.